

정책보고서 97-09, 166쪽, 1,000부

# 地域別 保育需要와 政策方案

鄭京姬  
金柔敬

韓國保健社會研究院

## 머 리 말

현대사회의 산업화·도시화에 따른 女性の 經濟活動參與 增大 및 가족구조의 核家族化로 가정 내에서의 子女養育이 어렵게 되었고 또한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 향상 등 시대적 여건의 변화로 아동에 대한 早期教育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子女養育의 문제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점차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의 해결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따라서 정부는 적절한 환경과 전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政府의 保育政策이 기초해 있는 보육수요추계는 그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한계점으로 인하여 보육수요에 대한 추계자료로 활용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방과후 보육수요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 保育施設의 地域別 適正配置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地域別로 保育需要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本 研究는 全國 및 地域別 保育需要의 規模를 파악함으로써 地域別로 長·短期 保育政策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또한 현재 保育서비스 供給現況과 問題點을 파악하여 보육수요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本 研究報告書는 보건복지부 등 보육정책을 직접담당하고 있는 政策部署뿐만 아니라 보육관련 기관의 실무자들, 혹은 보육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구자들에게도 귀중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本 報告書는 鄭京姬 責任研究員과 金柔敬 主任研究員에 의해 완성

되었다. 研究陣은 본 보고서를 읽고 귀중한 조언을 해준 本院의 李顯松 副研究委員과 韓蕙卿 責任研究員에게 謝意를 표하고자 한다. 그리고 통계자료정리에 많은 도움을 준 인구가족연구실의 선화숙 연구조원, 그리고 편집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인구가족연구실의 손숙자 연구조원에게 감사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은 어디까지나 저자의 個人的인 意見이며 本院의 公式的인 見解가 아님을 밝혀둔다.

1997年 12月  
韓國保健社會研究院  
院長 延河清

# 目次

要約	13
I. 序論	21
1. 研究背景 및 目的	21
2. 研究內容 및 方法	23
II. 保育對象을 把握하는 세가지 觀點	25
1. 普遍的 保育觀點	25
2. 代理保育觀點	26
3. 基本保育觀點	26
III. 保育需要 把握의 基本原則	28
1. 既存의 保育需要把握 方法	28
2. 保育需要 把握方法의 諸特性 比較	33
3. 保育需要把握의 基本原則	36
IV. 觀點別 保育需要	39
1. 普遍的 保育需要	39
2. 代理保育需要	43
3. 基本保育需要	49
4. 觀點別 保育對象 規模의 變化 展望	56

V. 保育施設 利用希望率을 考慮한 保育需要 .....	62
1. 保育施設 利用希望率 .....	62
2. 保育施設 利用希望率을 考慮한 地域別 保育需要 .....	65
VI. 地域別 保育서비스 供給現況 .....	77
1. 地域別 保育施設 現況 .....	77
2. 放課後 保育關聯 施設資源 現況 .....	87
3. 地域別 保育事業費의 規模 .....	89
4. 地域別 保育需要 充足率 .....	91
VII. 未就學 및 初等學生 子女의 保育實態 .....	101
1. 未就學 子女의 保育實態 .....	101
2. 初等學生 子女의 保育實態 .....	110
3. 保育施設 未利用 理由 .....	118
VIII. 保育政策方案 .....	121
1. 要約 .....	121
2. 政策建議 .....	127
參考文獻 .....	144
附    錄 .....	147

## 表 目 次

〈表 II- 1〉	保育需要를 把握하는 세가지 觀點	27
〈表 III- 1〉	韓國行動科學研究所의 保育需要兒童數 推計	29
〈表 III- 2〉	保健福祉部의 保育需要兒童數 推計	29
〈表 III- 3〉	금진호의 保育需要兒童數 推計	31
〈表 III- 4〉	出産力 調査를 이용한 保育需要 推定(1995年)	32
〈表 III- 5〉	保育需要把握 方法의 比較	35
〈表 IV- 1〉	市·道別 未就學 및 初等學校 兒童數(1995年)	41
〈表 IV- 2〉	市·道別 家族의 保護를 받고 있는 兒童數(1995年)	42
〈表 IV- 3〉	市·道別 既婚女性의 年齡別 經濟活動參加率(1996年)	44
〈表 IV- 4〉	市·道別 就業母의 未就學 및 初等學校 兒童數(1996年)	46
〈表 IV- 5〉	市·道別 全體兒童 對比 就業母의 兒童數	47
〈表 IV- 6〉	方法別 就業母의 兒童數 推定 結果의 比較	49
〈表 IV- 7〉	市·道別 既婚就業女性중 低所得層의 比率	51
〈表 IV- 8〉	市·道別 低所得層 就業母의 未就學 및 初等學校 兒童數	52
〈表 IV- 9〉	市·道別 低所得層 就業母의 兒童數	53
〈表 IV-10〉	未就學 및 初等學生 年齡 人口의 變化 推移	57
〈表 IV-11〉	女性의 經濟活動參加率 展望	59
〈表 IV-12〉	未就學 및 初等學校 兒童數 推定	60
〈表 IV-13〉	就業母의 未就學 및 初等學校 兒童數 推定	61
〈表 V- 1〉	母의 就業狀態別 保育施設 利用希望率	64
〈表 V- 2〉	市·道別 保育施設 利用을 希望하는 就業母의 兒童數	67

〈表 V- 3〉	市·道別 全體兒童 對比 保育施設 利用을 希望하는 就業母의 兒童數 .....	68
〈表 V- 4〉	推定方法別 比較(保健福祉部의 保育對象 定義) .....	68
〈表 V- 5〉	市·道別 保育施設 利用을 希望하는 低所得層 就業母의 兒童數 .....	71
〈表 V- 6〉	市·道別 全體兒童 對比 保育施設 利用을 希望하는 低所得層 就業母의 兒童數 .....	72
〈表 V- 7〉	市·道別 既婚女性의 潛在的 就業을 考慮한 保育施設 利用希望 兒童數 .....	75
〈表 V- 8〉	市·道別 全體兒童 對比 既婚女性의 潛在的 就業을 考慮하여 算出된 保育施設 利用希望 兒童數 .....	76
〈表 VI- 1〉	市·道別 保育施設의 種類 .....	77
〈表 VI- 2〉	市·道別 保育施設의 種別 分布(1996年) .....	78
〈表 VI- 3〉	市·道別 保育施設의 種類別 保護兒童의 分布(1996年) ..	79
〈表 VI- 4〉	施設種類別 施設當 平均保育兒童數(1996年) .....	80
〈表 VI- 5〉	市·道別 全擔施設 設置現況(1996年) .....	81
〈表 VI- 6〉	市·道別 保育施設의 種別 變化推移 .....	84
〈表 VI- 7〉	市·道別 職場保育施設 現況(1997年) .....	86
〈表 VI- 8〉	市·道別 各種 公共施設 現況(1997年) .....	88
〈表 VI- 9〉	市·道別 放課後 保育關聯 施設資源 現況 .....	89
〈表 VI-10〉	市·道別 保育事業費의 規模(1997年) .....	90
〈表 VI-11〉	市·道別 年齡別 普遍的 保育需要 充足率 .....	91
〈表 VI-12〉	市·道別 年齡別 代理保育需要 充足率 .....	93
〈表 VI-13〉	市·道別 年齡別 基本保育需要 充足率 .....	95
〈表 VI-14〉	市·道別 年齡別 主觀的 代理保育需要 充足率 .....	97
〈表 VI-15〉	市·道別 年齡別 主觀的 基本保育需要 充足率 .....	98
〈表 VI-16〉	市·道別 年齡別 潛在的 就業을 考慮한 保育需要 充足率 .....	99

〈表 VII- 1〉	兒童의 年齡別 保育類型 및 施設利用率	102
〈表 VII- 2〉	母의 就業有無와 家族形態別 保育類型 및 施設利用率	105
〈表 VII- 3〉	母의 教育水準別 保育類型 및 施設利用率	107
〈表 VII- 4〉	就業母의 從事上의 地位 및 勤勞時間別 保育類型 및 施設利用率	108
〈表 VII- 5〉	就業母의 職業別 保育類型 및 施設利用率	109
〈表 VII- 6〉	兒童의 學齡別 保育類型 및 施設利用率	111
〈表 VII- 7〉	母의 就業有無와 家族形態別 保育類型 및 施設利用率	113
〈表 VII- 8〉	母의 教育水準別 保育類型 및 施設利用率	114
〈表 VII- 9〉	就業母의 從事上의 地位 및 勤勞時間別 保育類型 및 施設利用率	116
〈表 VII-10〉	就業母의 職業別 保育類型 및 施設利用率	117
〈表 VII-11〉	兒童의 年齡別 保育施設 未利用 理由	119
〈表 VII-12〉	現在 保育形態別 保育施設 利用計劃	119
〈表 VIII- 1〉	政策目標別 保育施設需要	122
〈表 VIII- 2〉	市·道別 年齡別 觀點別 保育充足率	124
〈表 VIII- 3〉	市·道別 保育施設擴充 規模	126
〈表 VIII- 4〉	保育事業指針上의 保育施設 規模別 保育施設의 班編成	129
〈表 VIII- 5〉	觀點別 保育對象 兒童의 年齡別 構成比	129
〈表 VIII- 6〉	市·道別 保育兒童의 年齡別 構成比	131



## 圖目次

[圖 IV-1]	觀點別 保育서비스 對象 兒童數	55
[圖 V-1]	保育施設 利用을 希望하는 就業母의 兒童의 規模	69
[圖 V-2]	保育施設 利用을 希望하는 低所得層 就業母의 兒童의 規模	73

## 附表目次

<附表 4-1>	市·道別 未婚女性의 年齡別 經濟活動參加率	149
<附表 4-2- 1>	就業母의 年齡別 兒童數(서울特別市)	149
<附表 4-2- 2>	就業母의 年齡別 兒童數(釜山廣域市)	150
<附表 4-2- 3>	就業母의 年齡別 兒童數(大邱廣域市)	150
<附表 4-2- 4>	就業母의 年齡別 兒童數(仁川廣域市)	151
<附表 4-2- 5>	就業母의 年齡別 兒童數(光州廣域市)	151
<附表 4-2- 6>	就業母의 年齡別 兒童數(大田廣域市)	152
<附表 4-2- 7>	就業母의 年齡別 兒童數(京畿道)	152
<附表 4-2- 8>	就業母의 年齡別 兒童數(江原道)	153
<附表 4-2- 9>	就業母의 年齡別 兒童數(忠清北道)	153
<附表 4-2-10>	就業母의 年齡別 兒童數(忠清南道)	154
<附表 4-2-11>	就業母의 年齡別 兒童數(全羅北道)	154

〈附表 4-2-12〉	就業母의 年齡別 兒童數(全羅南道) .....	155
〈附表 4-2-13〉	就業母의 年齡別 兒童數(慶尙北道) .....	155
〈附表 4-2-14〉	就業母의 年齡別 兒童數(慶尙南道) .....	156
〈附表 4-2-15〉	就業母의 年齡別 兒童數(濟州道) .....	156
〈附表 4-2-16〉	就業母의 年齡別 兒童數(全國) .....	157
〈附表 4-3〉	市·道別 年齡別 就業母數 .....	158
〈附表 4-5-2〉	市·道別 子女養育問題로 就業을 하지 못하고 있는 既婚女性중 保育施設 利用을 希望하는 婦人의 子女數 .....	159
〈附表 4-11〉	既婚女性의 經濟活動參加率 展望 .....	160
〈附表 4-12-1〉	母의 年齡別 兒童數: 2000年 .....	160
〈附表 4-12-2〉	母의 年齡別 兒童數: 2005年 .....	161
〈附表 4-12-3〉	母의 年齡別 兒童數: 2010年 .....	161
〈附表 5-1〉	既婚女性중 子女養育問題로 就業을 하지 못하고 있는 比率 .....	162
〈附表 5-2〉	市·道別 子女養育問題로 就業을 하지 못하고 있는 既婚女性의 未就學 및 初等學生 子女數 .....	162
〈附表 7-1〉	市·道別 既婚就業女性의 教育程度 .....	163
〈附表 7-2〉	市·道別 既婚就業女性의 從事上의 地位 .....	164
〈附表 7-3〉	市·道別 既婚就業女性의 職業別 分布 .....	165
〈附表 7-4〉	市·道別 既婚就業女性의 從事上의 地位別 36時間 未滿 勤勞女性의 比率 .....	166

## 要約

### I. 研究의 目的

- 본 연구는 전국 및 지역별 보육수요의 규모를 파악함으로써 지역별로 장·단기 보육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또한 현재 보육서비스 공급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육수요에 상응하는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음.

### II. 研究方法

- 통계청에서 실시한 1995년도 인구 및 주택총조사결과와 1996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지역별로 보육대상 연령층의 총아동수, 취업모의 아동수, 저소득층 취업모의 아동수를 추정하였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997년도에 조사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의 분석을 통하여 보육시설 이용희망률을 산출함과 더불어, 미취학 및 초등학생 자녀의 보육실태를 파악하였음.
- 기존문헌의 고찰 및 정부통계자료의 검토 등을 통하여 현재 보육서비스 공급현황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그에 기초하여 보육수요에 상응하는 양질의 보육서비스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음.

### Ⅲ. 研究結果

#### 1. 觀點別 保育需要

##### 가. 普遍的 保育需要

- 아동복지를 위해 사회보육이 가정보육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대상 연령층 모두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할 경우, 보육수요는 전국적으로 미취학 아동 3,958,546명 초등학교생 3,598,335명으로 추정되었음. 지역별 보육수요는 <表 1>과 같음.

##### 나. 代理保育需要

- 보육서비스를 취업여성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보아 취업중인 기혼여성의 아동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 보육대상은 미취학아동 1,710,760명 초등학교생 1,941,286명으로 파악되었고, 이는 각각 해당 연령군의 43%와 54%임. 지역별 보육수요는 <表 1>과 같음.

##### 다. 基本保育需要

- 보육서비스를 계층간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중의 하나로 파악하여 보육서비스가 저소득층 취업모 아동의 방치상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공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는 경우, 보육대상은 미취학아동 약 29만명과 초등학교생 약 41만명으로 추정되었고, 이는 각각 해당 연령군의 7.4%와 11.3%임. 지역별 보육수요는 <表 1>과 같음.

〈表 1〉 地域別 保育需要

(단위: 명)

지역	보편적 보육수요	대리 보육수요	기본 보육수요	주관적 대리 보육수요	주관적 기본 보육수요	잠재적 취업을 고려한 주관적 보육수요
미취학아동						
전국	3,958,546	1,710,760	293,939	1,111,006	165,212	2097,881
서울	833,382	376,289	45,297	246,011	25,372	455,435
부산	297,998	120,292	21,593	77,897	12,085	136,523
대구	212,874	97,981	15,964	63,631	8,932	117,902
인천	248,979	101,332	17,836	65,579	9,984	128,958
광주	119,367	54,929	8,082	35,675	4,570	66,122
대전	120,466	45,958	5,706	29,791	3,183	60,207
경기	846,290	346,749	90,250	225,147	51,104	440,024
강원	111,222	48,834	8,427	31,573	4,740	59,465
충북	116,932	50,869	10,281	33,071	5,760	62,927
충남	128,100	60,904	7,378	39,251	4,079	71,516
전북	143,356	69,090	8,883	44,833	4,989	81,135
전남	151,727	67,646	7,907	43,751	4,377	82,345
경북	208,651	96,416	15,110	62,039	8,443	115,180
경남	372,338	150,254	26,745	97,608	15,050	193,215
제주	46,864	23,217	4,480	15,149	2,544	26,926
초등학생						
전국	3,598,335	1,941,286	405,377	630,990	124,998	968,673
서울	750,658	402,762	71,481	130,692	21,979	197,712
부산	297,337	152,413	31,876	49,213	9,823	76,785
대구	195,658	109,539	23,677	35,732	7,304	54,171
인천	208,883	105,564	22,216	34,606	6,874	54,965
광주	106,158	60,248	10,179	19,593	3,137	29,457
대전	110,142	54,142	10,392	17,576	3,188	27,770
경기	697,698	357,535	96,401	117,258	29,884	184,550
강원	112,754	62,315	13,737	20,176	4,222	30,878
충북	111,344	60,327	15,094	19,535	4,650	30,134
충남	132,998	84,640	14,329	27,269	4,399	39,712
전북	146,562	85,545	16,449	27,618	5,034	41,338
전남	156,009	91,288	16,060	29,274	4,916	44,111
경북	201,696	126,874	22,854	41,179	7,047	60,263
경남	331,380	162,729	35,315	53,063	10,899	85,057
제주	39,058	25,365	5,317	8,205	1,639	11,772

資料: 통계청, 『1995년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97.

\_\_\_\_\_, 1996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자료.

## 2. 保育施設 利用希望率에 基礎한 保育需要

### 가. 主觀的 代理保育需要

- 취업여성의 자녀는 미취학 아동 1,111,006명과 초등학생 630,990명으로 추정되었고, 이는 각각 해당 연령군의 28%와 18%임. 지역별 보육수요는 <表 1>과 같음.

### 나. 主觀的 基本保育需要

- 보육시설의 사용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취업여성의 자녀는 미취학 아동 165,212명과 초등학생 14,998명으로 각각 해당 연령군의 4% 규모임. 지역별 보육수요는 <表 1>과 같음.

### 다. 潛在的 就業을 考慮한 主觀的 需要

- 현재 취업중인 기혼여성뿐만 아니라 보육문제가 해결될 경우 취업을 희망할 것으로 파악되는 여성의 자녀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아동은 미취학 아동의 경우 2,097,881명,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는 968,673명으로 각 해당 연령군의 53%와 27%임. 지역별 보육수요는 <表 1>과 같음.

## 3. 地域別 保育施設 規模 및 保育充足率

- 각 정책목표별로 추정된 보육대상 아동규모대비 현재 보육시설에서 보육되고 있는 아동미취학 아동규모는,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기본보육의 충족이 이루어지는 상태, 즉 저소득층 취업모의 아동을 충분히 보육할 수 있는 규모임.

- 보육시설의 공급규모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음.
  - 2세 미만 영아: 서울을 제외하고는 보육서비스가 저소득층 기혼취업여성중 보육시설의 사용을 희망하는 여성의 자녀에게 제공되는 최소한의 규모에 머물고 있음.
  - 2세 영아: 저소득층 취업모의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규모의 보육시설이 있으며, 경북과 경기의 경우는 현재 보육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이 저소득층 취업모 자녀의 94%와 56%에 머물고 있어 생존을 위해 취업을 해야만 하는 저소득층 취업모의 아동조차도 충분히 보육할 수 없는 실정임.
  - 3세 이상의 유아: 보육시설을 통하여 기본보육의 충족이 이루어지고 이에 유치원 취원아동까지 고려하면 주관적인 대리보육, 즉 취업중인 기혼여성중 보육시설의 사용을 희망하는 여성의 자녀에게 보육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음.
  -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 아동보육은 실시 초기단계이며, 따라서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방과후 보육서비스의 공급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음.

#### 4. 保育實態

- 연령에 따른 보육방식의 차이가 두드러짐.
  - 2세 미만 영아의 경우는 어머니의 취업유무와는 상관없이 대부분이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음.
  - 2세 영아의 경우는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 급격히 시설이용률, 특히 보육시설이용률이 높음.
  - 3세 이상 유아의 경우는 어머니의 취업유무와는 상관없이 가정양육의 비율이 매우 낮고 절반 정도가 유치원을 통하여 보육되

고 있음.

- 초등학생의 경우는 사설학원 이용률이 높음.
- 취업모의 경우 미취업모에 비하여 보육시설의 이용도가 높으며 특히 전적으로 보육시설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미취업모는 보육시설을 보완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에 비하여 유치원을 선호하고 있음.
- 취업모의 경우 가족형태에 따른 보육형태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어서, 핵가족에 비하여 확대가족인 경우 미취학아동의 경우 가정양육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초등학생의 경우도 가정양육에 병행하여 사설학원을 이용하는 유형이 많이 나타나고 있음. 따라서 핵가족의 아동에 대한 보육문제에 큰 관심이 두어져야 함.
-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으면 미취학아동과 초등학생 모두 어머니에 의해서 전적으로 양육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초등학생의 경우 양육자 없이 방치되는 비율도 높아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주간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경우 어머니가 전적으로 아동의 양육을 맡고 있는 경우가 높고, 36시간 이상인 경우는 가족 및 가족외 성원에 의하여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또한, 농어촌/단순노무직 종사자의 아동은 어머니에 의해서 양육되는 비율이 높고, 고위관리직 및 전문직, 사무직의 경우는 가족의 도움과 시설양육을 병행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5. 政策方案

### 가. 年齡別 特性을 考慮한 保育政策 樹立

- 嬰兒保育의 全幅的인 擴大: 영아의 保育미충족률이 높아 영아보육의 全폭적인 擴大가 이루어져야 함.
  - 保育지침상 保育정원중 2세 미만 아동의 構成비를 증대시키고, 지침규정의 準수가 이루어지도록 강력한 지도·감독이 需要함.
  - 적어도 모든 시·도에 영아전담시설이 1개소 이상 設치될 수 있도록 영아전담시설을 擴大함.
  - 2세 미만 영아반 담당 敎사에 대한 인건비 支給범위를 擴大함.
- 幼兒保育을 위한 綜合的 對策마련: 保育시설에서 保育되고 있는 아동만을 基準으로 할 경우는 基本보육수요가, 유치원 취원아동까지 포함하면 대리보육수요가 충족되고 있는 상황으로 유아를 위한 보편적 保育의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시점임. 따라서 현재 영아보육에 있어서 상호보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保育시설, 유치원, 사설학원을 통합적으로 연결하는 종합적 대책마련이 요구됨.
  - 취업모의 욕구에 상응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공급
  - 양질의 다양한 敎育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질적 개선
  - 유치원의 종일반 擴大
  - 사설학원의 보호기능 강화와 체계적인 관리

### 나. 關聯部處間의 協助體系 構築

- 3세 이상 유아의 보육에 있어서 保育시설, 유치원, 사설학원 등은 상호보완적으로 保育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따라서 이러한 保育 실태에 상응하고 효율적인 保育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

련부처간의 협조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방과후 보육서비스에 대한 잠재적 수요가 크므로 이에 상응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초등학교에 기초를 둔 방과후 아동지도가 실현되어야 할 것임. 이를 위해서는 교육부와의 협조체계의 구축이 시급함.

다. 地域別 保育狀況에 基礎한 優先 保育政策 設定

- 보육수요의 파악과 보육서비스의 실태에 기초하여 볼 때 지역별로 그 보육서비스 공급상황은 상이하며, 따라서 지역적 상황에 맞는 보육정책의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함.

# I. 序論

## 1. 研究背景 및 目的

1980년대 후반부터 다양한 측면에서 보육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어왔다. 既婚女性の 經濟活動參加率은 1980년대 후반부터 급속히 증가하기 시작하여 1996년 현재 48.4%에 이르고 있다. 또한, 도시는 물론 농촌에서도 핵가족화가 이루어졌고 자녀수도 평균 2명으로 평균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따라서 기혼여성의 자녀를 가정내에서 대리양육해줄 수 있는 가족원이 매우 적어지게 되었다. 더불어 형제가 적거나 전혀 없게 되어 개별가족내에서 공동생활의 경험이 매우 제한되게 되었다(조혜정, 1991). 즉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의 증가, 핵가족화 및 소자녀관의 확대 등으로 인하여 보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된 것이다. 또한 노동력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성노동력의 활용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保育施設 擴大에 대한 당위성도 증대되었다.

이에 정부는 保育施設을 확충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정부는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년간 保育施設 3,150개소를 확충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국고보조가 지원되는 공공보육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1997년까지 정부예산으로 6,822억원을 투자하되, 국가재정 여건의 한계와 부지확보난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 학교, 종교시설 등의 공공시설내 유휴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保育施設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부설설치비 및 보육교사 인건비 등 運營費 일부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보건복지부, 1995).

또한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 확충에 기업, 개인, 단체 등 민간의 참

여와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등 240개소의 공공기관내에 保育施設을 해당기관의 예산으로 설치하여 민간기업으로 확산을 유도하고, 기업이 설치하는 직장보육시설 1,200개소를 확충하기 위하여 國民年金基金에서 확보한 직장 및 민간보육시설의 설치용자사업비 7000억원 중에서 직장보육시설 설치비를 최우선 용자해 주고 운영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보육교사 인건비를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주거지역의 각종 민간보육시설 3,000개소를 확충할 수 있도록 국민연금기금에서 설치비를 최대한 용자해 주고, 보육료의 현실화 등으로 민간보육시설 운영난을 완화시켜 민간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할 예정에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계획이 완료되는 1997년이 되면 62만명의 아동이 13,678개소의 保育施設에서 보육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推算하고 있다.

이같은 保育施設 확충계획은 保育需要가 供給을 훨씬 상회하고 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즉 보육사업지침에 제시된 보육대상 아동 추계에 의하면, 1996년 현재 취업모의 자녀중 보육대상으로 파악되고 있는 아동수는 약 103만 1천명에 이르는데, 1996년 현재 保育施設에서 보육되고 있는 아동은 403,001명에 불과하므로 보육되어야 하는 전체아동수의 약 39.1%만이 보육되고 있다고 추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 보육정책의 기초자료인 한국행동과학연구소의 보육수요추계는 그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한계점으로 인하여 보육수요에 대한 추계자료로 활용되는데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김용하, 1995).

또한, 1996년 1월 1일부터 영유아보육법 제16조에 의거한 중앙보육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육대상을 0세부터 6세 미만의 취학전 아동으로부터 12세까지로 전국 保育施設의 입소대상 아동의 연령을 확대하여 보육사업을 방과후 보육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하였다. 그러나, 현재

의 보육수요추계는 미취학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초등학교 학생의 방과후 보육수요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 保育施設의 지역별 적정배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때 지역별로 보육수요를 파악해야 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따라서 지역별로 정확한 保育需要를 산출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는 보육수요를 파악하는 기본원칙을 정립하고 그에 기초하여 전국 및 지역별 보육수요의 규모를 파악하여 지역별로 장·단기 보육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현재 보육서비스 공급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보육수요에 상응하는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를 모색해보고자 한다.

## 2. 研究內容 및 方法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내용과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第2章에서 보육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첫단계로 보육대상을 파악하는 觀點을 普遍的 保育, 代理保育, 基本保育의 세가지로 정리하여 살펴보고, 第3章에서는 기존연구의 검토를 통하여 보육수요파악의 기본원칙을 제시하고, 그 근거를 밝히고자 한다.

第4章에서는 보육대상을 파악하는 관점에 따른 지역별 보육대상아동의 규모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통계청에서 실시한 1995년도 인구 및 주택총조사결과와 1996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분석한다. 더불어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추계와 여성의 경제활동의 특성과 변화에 관한 기존연구에 기초하여 보육대상이 되는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교 학생 연령군(0~11세)의 아동수의 변화와 취업모의 아동의 규모를 추계해 보고자 한다.

第5章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997년도에 조사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의 분석을 통하여 실제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진 가정의 아동의 범위를 파악한다.

第6章에서는 기존문헌의 고찰, 정부통계자료의 검토 등을 통하여 현재 보육서비스 공급현황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자 한다.

第7章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997년도에 조사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의 분석을 통하여 미취학 및 초등학교 학생 연령군의 자녀는 어떠한 방법으로 보육되고 있으며, 보육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이고, 保育施設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살펴봄으로써 보육정책 수립에 있어서의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第8章에서는 앞의 분석결과를 간단히 설명한 후, 분석된 보육수요에 상응하는 양질의 보육서비스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Ⅱ. 保育對象을 把握하는 세가지 觀點

보육서비스는 가정의 아동양육 기능을 보완하고 지지하는 가족지원 서비스이다. 그러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수립되는 정책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대상인 보육대상 아동을 파악하는 觀點에 의거하여 相異해진다. 즉, 관점에 따라서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는 보육대상의 범위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서 선택되어 질 수 있는 정책이 상이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에서는 보육수요를 서로 상이하게 파악하고 있는 세가지 觀點의 복지이념, 문제의식 및 정책목표, 보육모형과 대상아동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表 Ⅱ-1 참조)<sup>1)</sup>.

### 1. 普遍的 保育觀點

보육의 목적이 궁극적으로는 兒童福祉의 실현에 있다는 아동복지적인 觀點에 의하면 보육은 아동이 신체적 및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해주는 필수적인 서비스이다. 즉, 아동중심의 觀點에서 볼 때 아동보육은 보호자의 요구나 기타 관계자의 요구는 부수적이며, 모든 아동은 그들의 보호자와는 상관없이 자아의 개성을 발달시키고 자아실현을 위해 고르게 보호받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누려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아동은 보육의 기회를 공정하게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각자의 개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보육을 받아야 한다.

1) 보육수요를 파악하는 세가지 관점은 이해경(1991)의 『탁아정책 모델과 재정제도의 선택』과 이석무(1994)의 『아동보육사업 경영경제론』에 기초하여 정리한 것임.

이러한 아동중심의 觀點은 사회양육이 가정양육보다 바람직하다고 하는 주장을 담고 있다. 즉,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핵가족제도는 자녀양육의 환경으로서 적절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동육아를 가능케 하는 보육서비스가 모든 아동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觀點에서 보육수요를 파악하게 되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의 재정적 해결방안이 문제로 제기된다.

## 2. 代理保育觀點

이 觀點에서는 보육수요를 여성의 사회참여로 인해 가정보육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결과로 발생한 것으로 파악한다. 즉 보육수요는 기혼여성의 취업률과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 기혼여성의 취업이 경제적 필요에 의한 것이든, 자아실현을 위한 것이든 그 취업동기와는 상관없이 그러한 취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적인 아동보육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가족성원이 어머니를 대신하여 양육을 보조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대리양육자를 확보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갖춘 일부 여성을 제외하고는 취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취업주부들이나 취업을 원하는 기혼여성들의 욕구는 충족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보육서비스의 제공이 선결조건인 것이다. 따라서 보육서비스는 여성의 선택을 가능케 하는 여성복지의 증진을 위한 도구적인 성격을 갖게 된다. 이에 기혼여성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적극적인 기여가 기대된다.

## 3. 基本保育觀點

이 觀點은 보육서비스를 계층간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안 중의 하나



로 파악한다. 기혼여성의 취업은 주로 경제적인 요구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혼여성의 취업이 아직도 저학력, 저소득계층에 집중되어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보육서비스가 저소득층 아동의 방치상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제공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다. 이 기준에 따르면 보육은 가정보육이 어려울 때 제공되는 대리육아이며 저소득층의 방치된 아동이나 저소득층 취업모의 아동 등에게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며, 재정적인 부담은 국가가 맡게 된다. 이러한 觀點에서 보육수요를 파악하는 경우 보육서비스가 구빈 차원의 선별적 특성을 갖게 되며 중산층 이상의 보육수요는 전적으로 사적인 지원망에 의존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表 II-1〉 保育需要를 把握하는 세가지 觀點

구 분	보편적 보육수요	대리보육수요	기본보육수요
복지이념	복지사회	후기 복지국가	자선과 교정
문제의식	아동의 기본권 문제	여성경제활동의 문제	계층불평등의 문제
정책목표	질적 보편주의	양적 보편주의	양적 선별주의
보육모형	공동 육아	대리육아	대리육아
보육대상 아동의 범위	모든 아동	취업모 아동	저소득층 취업모 아동

이상에서 살펴본 보육수요를 파악하는 세가지 觀點은 서로 강조점이 다르지만 서로 배타적이라기 보다는 보완적인 관계를 갖을 수 있다. 즉 보육서비스는 아동의 기본권 보장이라는 아동복지적인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지만 국가의 재정적인 현실과 우선순위라는 기준에 의해서 단계별로 확대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보육서비스는 저소득층만이 갖고 있는 수요도 아니며, 또한 취업여성만이 욕구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국가가 개입하고 공공재원이 지원되는 경우 정책적 선택을 하여야 하며, 그러한 선택은 우선순위에서 기본보육수요 충족, 대리보육수요 충족, 보편보육수요 충족의 단계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Ⅲ. 保育需要 把握의 基本原則

#### 1. 既存의 保育需要把握 方法

##### 가. 韓國行動科學研究所의 保育需要把握

보건복지부가 보육수요를 추정함에 있어서 그 근거로 사용되고 있는 한국행동과학연구소의 보육수요추계연구는 보육요구조사에 기초하여 전국 탁아수요인구 추정치와 취업모의 절대 탁아수요인구 추정치의 두가지 추계를 제시하고 있다(한국행동과학연구소, 1990).

전국보육수요인구추정에 사용하고 있는 보육요구는 수요조사에 기초하여 취업모중 保育施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 비취업모중 취업을 하지 않더라도 保育施設을 사용하겠다는 응답과 保育施設이 있다면 직업을 갖겠다는 응답의 비율을 합하여 보육수요를 산출한 것이다.

한편, 취업모의 절대보육수요인구의 추정은 취업모의 0~5세 아동수에 요구비율인 56.4%를 곱하여 산출되었다. 이때 취업모의 0~5세 아동수는 여성경제활동참가율에 여성의 0~5세 적생아수를 곱하여 산출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러한 한국행동과학연구소의 연구에 기초하여 보육대상아동수를 추계하여 『보육사업지침』에 수록하고 있다. 보육대상아동수는 취업모의 0~5세 아동수에 한국행동과학연구소에서 취업모의 절대탁아수요인구추정에 사용한 보육요구비율인 56.4%를 곱하여 산출되고 있다. 이때 취업모의 0~5세 아동은 전체 여성경제활동참가율에 모의 적생아수를 곱하여 산출되었다.

〈表 III-1〉 韓國行動科學研究所의 保育需要兒童數 推計

(단위: 명)

구 분	대 상 아 동			
	탁아수요인구 (1990년)	취업모의 절대 보육수요아동수		
		1990년	1995년 <sup>3)</sup>	2000년 <sup>3)</sup>
0~5세 아동	4,539,657	-	-	-
취업모의 0~5세 아동 <sup>1)</sup>	-	1,925,798	2,073,211	2,191,705
보육대상아동 <sup>2)</sup>	3,131,604	1,086,042	1,165,859	1,245,928

- 註: 1) 여성경제활동참가율×여성의 0~5세 적생아수  
 2) 잠정적 탁아수요 = 전국 아동수×전국 보육욕구(69.2)  
 취업모의 절대보육수요: 취업모의 0~5세 아동×보육요구비율(56.4)  
 3) 1980~1988년도의 자료에 기초하여 여성의 연간 경제활동 참가율의 증가율을 0.5%로 계산하였으며, 1995, 2000년도 0~5세 아동인구의 추정치는 보건사회통계연보에 근거하였음.

資料: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전국 탁아수요 및 부모의 요구조사 연구』, 1990.

〈表 III-2〉 保健福祉部의 保育需要兒童數 推計

(단위: 천명)

구 분	대 상 아 동		
	1995년	1996년	1997년
0~5세 아동 <sup>1)</sup>	3,977	3,987	4,002
취업모의 0~5세 아동 <sup>2)</sup>	1,810	1,828	1,846
보육대상아동 <sup>3)</sup>	1,021	1,031	1,041

- 註: 1)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자료임.  
 2) 여성경제활동참가율×모의 적생아수  
 3) 한국행동과학연구소, 보육요구비율 56.4% 적용

資料: 보건복지부, 『1997 보육사업지침』, 1996.

나. 서울市政開發研究院의 保育需要把握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는 1994년에 서울시의 보육수요를 두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추계한 바 있다. 첫 번째 방법은 기혼여성의 취업률에

0~5세 아동수를 곱하여 보육수요를 추계하는 것이며, 두 번째 방법은 기혼여성중 0~5세 자녀를 가지고 있는 어머니의 취업률에 0~5세 아동수를 곱하여 보육수요를 추계하는 방법이다. 두가지 방법에 따라서 각각 계산된 취업모의 0~5세 아동수를 비교하여 보면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한 결과가 첫 번째 방법을 통하여 산출된 규모의 72%로 나타났다.

한편 절대적으로 保育施設을 필요로 하는 경우를 어머니가 취업중인 0~5세 아동으로 가족내에서 돌봐줄 다른 가족원이 없는 상태로 규정하였다. 이때 절대보육 요구비율은 보육시설 이용희망자 비율에 핵가족 비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있다. 이용희망자 비율은 서울시내 0~5세 아동을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산출된 83.5%를 사용하였고 가족내 대리양육이 불가능한 가정을 핵가족 비율로 파악하였다. 추계에 사용한 핵가족비율은 77.5%이다. 이외에도 한국행동과학연구소에서 산출한 전국보육요구비율 56.4%와 도시저소득층 보육요구율 50.5%를 적용하여 보육시설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보육대상 아동수에 대한 장래추계 또한 두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첫째는, 0~5세 자녀를 가진 기혼여성의 취업률을, 두 번째로는 자녀양육기에 있는 여성의 잠재적 취업요구를 고려하기 위해 주요 출산 및 양육기인 25~34세의 다음 단계인 35~44세 기혼여성의 취업률을 이용하였다. 두가지 경우 모두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연평균 0.5%씩 증가하는 것으로 계산하였다.

#### 다. 금진호의 保育需要把握

금진호는 1996년의 연구에서 보육대상 아동수의 추계를 두단계로 실시하고 있다. 첫째, 취업모의 미취학 아동수를 추계하였는데 그 과정은 (1) 연령별 여성유업자중 기혼자의 비율과 여성비유업자중 기혼자의 비율을 산출하고 (2) (1)에서 계산된 비율과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을 이용하여 기혼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계산한 후 (3) 모의 연령별 미취학아동비율을 대신하여 모의 연령별 미취학적생아비율을 사용하고, 이 비율에 통계청이 추계한 아동수를 곱하여 모(母)의 연령별 미취학 아동수를 구하였다. 이때 미취학아동수에는 3월 이후 출생한 6세아동도 포함되었다.

〈表 III-3〉 금진호의 保育需要兒童數 推計

(단위: 천명)

구 분	미취학 아동수 <sup>1)</sup>	취업모의 미취학 아동수 <sup>2)</sup>	보육대상 아동수 추계방법		
			행동과학 연구소의 보육요구율 <sup>3)</sup>	취업형태 고려	유치원 재학여부
1996	4,538	1,962	1,107	925	1,738
1997	4,551	1,985	1,120	936	1,758
1998	4,565	2,010	1,134	948	1,780
1999	4,578	2,034	1,147	959	1,801
2000	4,585	2,056	1,150	970	1,821

註: 1)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자료임.

2) 기혼여성 경제활동참가율×미취학아동수

3) 한국행동과학연구소, 보육요구비율 56.4% 적용

資料: 금진호, 『육아비용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여성인력의 고용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에 관한 세미나, 한국노동연구원, 1996.

두 번째 단계로 위에서 산출된 취업모의 미취학아동수추계에 기초하여 보육대상 아동수를 3가지 방법으로 추계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행동과학연구소의 보육요구비율 56.4%를 적용하는 것이고, 둘째는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는 보육수요가 없다고 보고 제외하는 취업모의 취업형태를 고려하는 것이고, 셋째는 유치원에 취학중인 아동은 보육 대상의 아동이 아니라고 보고 1995년도 현재 미취학아동중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비율을 사용하였다.

#### 라. 出産力 調査를 利用한 保育需要把握

장영식 등은(1995)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994년에 실시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자료를 이용하여 保育需要를 추정하여 발표하였다.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는 만 44세 이하의 유배우 여성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추계대상은 만 44세 이하 유배우 여성이다.

〈表 III-4〉 出産力 調査를 利用한 保育需要 推定(1995年)

구 분	(단위: %)	
	도시	농촌
(1) 만 44세 이하 유배우 여성의 취업률: X1	38.4	53.4
(2) 취업여성중 6세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비율: X2	41.6	37.7
(3) 6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여성중 가족이 자녀를 돌볼 수 없는 비율: X3	68.2	66.5
(4)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취업여성중 가족이외의 다른사람에 의하여 아동보육이 필요한 비율: X4 = (X1×X2×X3)	10.9	20.1
(5) 1995년 만 44세 이하 유배우 여성수(천명): X5	5,727	1,174
(6) 보육수요 추정치(천명): (X4×X5)	624	235

註: 추정치는 만 44세 이하 유배우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임.

資料: 홍문식 외, 『1994년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4.

첫 번째 단계로, 만 44세 이하 유배우 취업여성중 6세 이하 자녀를 두고 있는 비율과 6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여성 중 가족이 자녀를 돌볼 수 없는 비율을 곱하여 도시와 농촌지역 각각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취업여성중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비율을 구하였다. 두 번째 단계로는 이 비율을 1995년의 만 44세 이하 유배우 부인수에 곱하여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을 산출하였다.

## 2. 保育需要 把握方法의 諸特性 比較

### 가. 韓國行動科學研究所의 保育需要把握 方法

복지부의 추계방법의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 한국행동과학연구소의 보육수요추계방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전국보육수요인구추정치와 취업모의 절대보육수요인구추정치의 두가지 추계를 제시하고 있다. 즉 보육요구조사에 기초하여 광의의 보육수요와 협의의 보육수요를 모두 제시하고 있다. 둘째, 여성전체의 경제활동률을 사용하고 있어서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경제활동실태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보육대상아동의 연령을 0~5세까지로 파악하고 있다.

### 나. 保健福祉部의 保育需要把握 方法

복지부는 한국행동과학연구소의 보육요구율에 기초하여 1997년까지의 수요를 추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행동과학연구소가 광의의 보육수요와 협의의 보육수요를 모두 제시하고 있는데 비하여, 복지부는 취업모의 보육요구에만 기초하여 추계를 함으로써 취업모의 아동만을 보육대상으로 보는 대리보육수요의 관점을 채택하고 있다.

### 다. 서울市政開發研究院의 保育需要把握 方法

기존의 보육수요추계방법에 비추어볼 때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추계방법은 몇가지 특징을 갖고 있다. 첫째, 보육정책자의 정책목표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측면에서의 보육수요를 추계하고 있다. 즉 저소득층 취업여성의 아동을 보육서비스 제공의 제1목표로 하는 협의의 개념부터 취업여성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대리보육서

비스의 측면에서의 추계, 잠재취업요구를 고려한 보육수요의 추계 등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대리보육수요를 파악함에 있어서 어머니가 취업중이면서 핵가족인 경우를 가족내 대리양육이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는 어머니가 취업중이라도 대가족인 경우 가족성원이 자녀양육의 책임을 대신하고 있다는 假定이 깔려 있는 것이다. 이는 대가족인 경우 부모가 연로하여 손자녀 양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어서 시설보육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으며, 또한 핵가족이더라도 부모와 근거리에 살면서 양육보조를 받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sup>2)</sup> 정확한 시설보육수요를 파악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진다. 또한 사적인 차원에서 보육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도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 라. 금진호의 保育需要把握 方法

금진호는 보육비용관련 연구의 일부로 보육수요를 추계하였다. 금진호가 실시한 보육수요추계방법은 복지부의 추계와 비교해 볼 때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 기존의 추계와는 달리 여성경제활동인구 대신 유업자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둘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실태를 연령별로 파악하고 있다. 셋째, 보육대상아동의 연령을 0~5세에서 미취학아동으로 확대하였다. 마지막으로 보육대상아동의 범위를 다양하게 파악하고 있다. 즉, 보육요구비율을 적용하는 방법, 취업모의 취업형태를 고려하는 방법, 유치원 재학여부를 고려한 방법으로 추계를 하였다.

2) 이현송 외(1996)의 연구에 의하면 취업여성인 경우 미취업여성에 비하여 부모와 동거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이웃에 거주하는 경우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러한 거주유형이 취업여성이 보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적인 차원에서의 적응 유형이라고 보여진다.



〈表 III-5〉 保育需要把握 方法의 比較

항 목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실태	대상아동	요구파악	추계기간
행동과학연구소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0~5세 아동	- 전국 보육 욕구: 69.2% - 취업모의 탁아요구: 56.4%	1990, 1995, 2000
복지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0~5세 적생아	- 한국행동과학연구소의 취업모 보육요구비율: 56.4%	1995~1997
김용하	연령별 여성경제 활동인구×유업모의 비율	미취학아동	- 잠재 수요의 파악	1997~2000
서울시정개발 연구원	기혼여성의 유업률	0~5세 아동	- 전국 보육욕구인 56.4%와 도시 저소득층의 보육욕구 비율 50.5% 사용 - 핵가족 비율 고려 - 잠재 수요 고려	1996~2011
금진호	기혼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	미취학아동	- 한국행동과학연구소의 취업모보육 요구비율: 56.4% - 취업형태 고려 - 유치원 재학여부 고려	1996~2000
출산력	도시/농촌별 44세 이하 기혼 여성의 취업률	미취학아동	- 가족 이외 사람에 의하여 아동보육이 실시되고 있는 비율	1995

마. 出産力 調査를 利用한 保育需要把握 方法

본 추계는 첫째 도시와 농촌의 여성경제활동의 차이를 반영하였으며, 둘째 실제로 가족외의 다른 사람들에 의한 보육서비스가 필요한 비율을 실제의 행태를 통하여 파악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잠재적인 보육수요를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바. 金龍夏의 保育需要把握 方法

김용하(1996)는 그의 연구에서 구체적으로 보육수요를 추계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 보건복지부의 추계방법에 대한 비판에 기초하여 볼 때 그가 주장하는 보육수요추계방법을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첫

째, 보육대상아동을 만 6세 미만에서 취학아동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한다. 둘째, 적절한 보육이 제공될 경우 취업이 기대되는 잠재적 보육수요를 감안한다. 셋째, 6세 미만 아동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므로 보육수요의 추계기간을 현재의 1997년에서 2020년까지로 연장하여 장기적인 전망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지역적 불균형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시·도·군·구별로 보육수요가 추계되어야 한다.

다섯째, 보육수요 추정에는 여성 경제활동인구 대신에 유업모의 개념을 사용하여야 한다. 여섯째,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연령별로 큰 차이를 보이므로 연령별로 유업모의 수를 사용하여야 한다. 이는 연령별 경제활동참여의 차이를 고려하지 못한다면 보육수요가 과대하게 추계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3. 保育需要把握의 基本原則

제2장에서 살펴본 이론적 검토와 앞에서 살펴본 기존의 보육수요추정방법의 검토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채택하기로한 보육수요파악의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 가. 保育需要의 段階別 把握

보육서비스의 대상으로 설정하여야 하는 보육대상 아동을 파악하는데 있어 보편적 보육수요, 대리보육수요, 기본보육수요인 세차원의 보육수요를 파악한다. 이는 공적인 보육요구가 있는 가정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협의의 개념과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광의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기 위한 것이며, 더불어 제한된 재정하에서 보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중장기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정책적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참고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다.

나. 對象年齡의 擴大 및 年齡別 保育需要 把握

대상아동은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파악해왔지만 초등학생의 방과후 보육이라는 새로운 보육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1996년 1월 1일부터 전국보육시설의 입소대상 연령이 12세까지로 연장되었다. 한편, 1997년 도 보육사업지침은 국민의 복지욕구 증가에 부응하기 위해 방과후 아동보육사업의 실시를 보육사업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육수요를 파악함에 있어 대상아동의 연령을 초등학생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연령별로 상이한 보육행태가 관찰되며 현재 시설보육율에서도 차이가 보이고(이현송 외, 1996; 통계청, 1996) 있다. 또한 산후휴가가 60일로 제한되어 있으며, 육아휴가의 실시율이 매우 낮아(장성자 외, 1993) 산후휴가가 끝나는 생후 3개월부터의 자녀를 보육해주는 영아 보육시설이 매우 부족하다. 따라서 보육수요를 상이한 표준보육료가 제시되어 있는 2세 미만 영아, 2세 영아, 3세 이상의 유아,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으로 구분하여 파악하기로 한다.

다. 保育施設 使用 希望度에 影響을 미치는 諸要因의 考慮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子女養育 實態는 어머니의 취업유무와 취업의 특성, 아동관련 특성, 가족적 특성 등 제요인에 따라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이현송 외, 1996). 이러한 제변인에 따른 보육행태의 차이는 보육시설 이용희망률에 반영될 것이다. 따라서 보육시설 이용희망률을 반영하여 보육수요를 파악하고자 한다. 보육시설 이용희망률을 적용함에 있어, 특히 다음과 같은 측면에 관심을 두고자 한다. 첫째, 자녀양육실태는 어머니의 취업유무에 따라 상이하므로(통계청, 1996) 취업유무에 따른 보육시설 이용희망률을 파악한다.

둘째, 잠재적 보육수요를 고려한다. 부인이 취업하지 않은 경우 주

된 이유중의 하나가 子女 養育者가 없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양승주, 1995; 이현송 외, 1996; 통계청, 1996). 따라서 적절한 보육이 제공될 경우 취업이 기대되는 수요가 존재할 수 있다.

셋째, 아동의 연령별 보육시설 이용도에 차이가 있고, 보육을 둘러싼 환경도 상이하므로 자녀의 연령별로 보육시설 이용희망률을 파악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방법에는 保育施設을 이용하는 것 외에도 유치원 또는 사설학원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이러한 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육실태도 고려하여 보육 수요의 충족도를 파악하도록 한다.

#### 라. 保育需要의 長期的 變化 把握

현재의 보육수요를 파악하는 것과 더불어 일정시기까지의 보육수요를 추계하도록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제한상 인구추계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모두 전망되어 있는 2010년까지 추계하기로 한다. 이는 단기적인 보육수요를 어떻게 충족시키는가 하는 문제외에도 장기적인 정책수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보육수요의 과소 추계 또는 과대추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장기적인 보육서비스의 공급상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보육정책이 어떻게 양적인 확충과 질적인 개선의 균형을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정책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초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 IV. 觀點別 保育需要

보육서비스의 대상의 규모는 기본적으로 보육정책의 기본이념에 따라서 달라진다. 第2章에서 살펴본 대로 보편적 보육관점, 대리보육관점, 기본보육관점중 어떤 것을 보육정책의 이념으로 하는가에 따라서 保育需要의 절대적인 규모가 달라진다. 본 장에서는 보편적 보육, 대리보육, 기본보육의 세관점에서 지역별 보육수요를 파악하고자 한다.

첫째, 普遍的 保育觀點을 취할 경우 모든 아동을 보육대상으로 본다. 따라서 구체적으로는 보육대상연령층의 아동수가 곧 保育需要者가 된다. 둘째, 代理保育觀點을 취하여 현재 어머니가 취업중인 아동을 保育需要로 파악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어머니가 취업중인 0~11세 아동의 수를 파악하여야 한다. 셋째로, 基本保育觀點에서 저소득층 취업여성의 보육문제해결에 정책의 주안점을 둔다면 저소득층 여성의 취업률과 아동수를 고려하여 保育需要를 파악하여야 한다.

### 1. 普遍的 保育需要

사회양육이 가정양육보다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모든 아동에게 시설보육을 제공하는 것을 보육시설의 장기적인 공급목적으로 한다면 모든 미취학아동에 대한 보육과 초등학교 학생에 대한 방과후 보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보육시설이 공급되어야 한다. 이때 보육서비스의 대상은 0~11<sup>3)</sup>세 연령군의 아동이다.

3) 방과후 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1996년 1월 1일부터 중앙보육위원회 의결에 따라 보육대상이 0세부터 5세의 미취학아동에서 12세까지로 연령이 확대되었다. 그러나

이를 위하여 통계청에서 1995년도에 실시한 인구 및 주택 총조사의 지역별 인구수와 모의 연령별 아동수를 고려하였다. 현재 보육대상인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인 0~11세의 각세 인구수에는 아동복지시설에 수용되어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도 포함되어 있다(表 IV-1 참조). 그러나 실제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는 친족관계가 분명한 아동이라는 점에서 모의 연령별 아동수를 보육대상아동수를 추정하는데 기초자료로 사용하였다(表 IV-2 참조)<sup>4)</sup>.

미취학아동의 경우 전체 아동의 21.1%가 서울에, 21.4%가 경기지방에 거주하고 있어 전체 미취학아동의 약 절반이 수도권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초등학생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수도권이 40.3%를 차지하고 있다(表 IV-2 참조).

---

모든 공식통계가 초등학생연령을 6~11세로 잡고 있는데 비하여 보육대상아동은 12세로 되어 있는 것은 만 12세인 아동중에도 초등학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높여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공식통계의 기준에 기초하여 초등학생을 6~11세로 규정하여 아동수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행정적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각세별로 0~12세까지의 지역별 아동수 및 취업모의 아동수를 부록에 제시하고자 한다(附表 4-2-1~附表 4-2-16과 附表 4-3 참조).

- 4) 1996년도의 기혼여성 경제활동실태를 지역별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있으나, 0~11세 아동인구를 지역별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는 없다.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그 변화의 폭이 인구변화에 비하여 크고 지역별 차이 또한 크다. 더불어 전국추계자료에 의하면 1996년도 0~11세 연령군의 추계인구는 8,088,890명으로 1995년의 8,094,299명보다 5,409명이 적은 규모로 1995년에 비하여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5년도의 인구주택총조사에서 제시된 아동수(7,840,928명)를 사용하여 1996년도 보육대상 아동수를 추정하기로 하였다.

〈表 IV-1〉 市·道別 未就學 및 初等學校 兒童數(1995年)

(단위: 명)

지역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전체 (0~5세)	영아			유아 (3~5세)	전체 (6~11세)	저학년 (6~8세)	고학년 (9~11세)
전국	4,066,261	655,707	694,195	702,891	2,013,468	3,774,667	1,832,206	1,942,461
서울	854,887	144,667	148,431	147,883	413,936	781,810	373,002	408,808
부산	305,397	48,158	51,609	52,712	152,918	310,708	145,978	164,730
대구	217,572	35,576	37,122	37,475	107,399	204,588	99,522	105,066
인천	253,793	39,553	42,678	43,986	127,576	216,957	109,836	107,121
광주	193,817	20,401	21,242	21,391	59,686	111,328	52,899	58,429
대전	123,246	20,432	21,018	21,209	60,587	115,093	55,758	59,335
경기	863,771	136,926	146,738	149,065	43,1042	725,037	372,347	352,690
강원	116,018	18,646	19,591	19,882	57,899	120,719	57,069	63,650
충북	120,958	19,346	20,732	21,190	59,690	17,9751	56,178	61,797
충남	133,623	20,875	22,500	22,994	67,254	142,235	66,465	75,770
전북	149,728	23,728	26,013	25,622	74,365	156,664	72,481	84,183
전남	159,116	25,096	26,848	27,346	79,826	168,854	77,162	91,692
경북	215,822	33,800	36,256	37,028	108,738	214,241	103,598	110,643
경남	380,950	60,233	64,693	66,630	189,394	346,844	170,096	176,748
제주	48,660	8,270	8,724	8,478	23,188	41,614	19,815	21,799

資料: 통계청, 1996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表 IV-2〉 市·道別 家族의 保護를 받고 있는 兒童數(1995年)

(단위: 명, %)

지역	미취학 아동					초등학교		
	전체 (0~5세)	영아			유아 (3~5세)	전체 (6~11세)	저학년 (6~8세)	고학년 (9~11세)
전국	3,958,546 (100.0)	642,039 (100.0)	677,266 (100.0)	684,717 (100.0)	1,954,524 (100.0)	3,598,335 (100.0)	1,760,349 (100.0)	1,837,986 (100.0)
서울	833,382 (21.1)	141,434 (22.0)	144,978 (21.4)	144,364 (21.1)	402,606 (20.6)	750,658 (20.9)	360,154 (20.5)	390,504 (21.2)
부산	297,998 (7.5)	47,303 (7.4)	50,482 (7.5)	51,552 (7.5)	148,661 (7.6)	297,337 (8.3)	140,671 (8.0)	156,666 (8.5)
대구	212,874 (5.4)	35,038 (5.5)	36,409 (5.4)	36,689 (5.4)	104,738 (5.4)	195,658 (5.4)	96,055 (5.5)	99,603 (5.4)
인천	248,979 (6.3)	38,998 (6.1)	41,992 (6.2)	43,170 (6.3)	124,819 (6.4)	208,883 (5.8)	106,503 (6.1)	102,380 (5.6)
광주	119,367 (3.0)	19,926 (3.1)	20,639 (3.0)	20,830 (3.0)	57,972 (3.0)	106,158 (3.1)	50,928 (3.1)	55,230 (3.1)
대전	120,466 (3.0)	20,040 (3.1)	20,551 (3.0)	20,748 (3.0)	59,127 (3.0)	110,142 (3.1)	53,808 (3.1)	56,334 (3.1)
경기	846,290 (21.4)	134,638 (21.0)	144,040 (21.3)	146,082 (21.6)	421,530 (21.6)	697,698 (19.4)	360,892 (20.5)	336,806 (18.3)
강원	111,222 (2.8)	18,009 (2.8)	18,779 (2.8)	19,024 (2.8)	55,410 (2.8)	112,754 (3.1)	53,782 (3.1)	58,972 (3.2)
충북	116,932 (3.0)	18,849 (2.9)	20,077 (3.0)	20,492 (3.0)	57,514 (2.9)	111,344 (3.1)	53,411 (3.0)	57,933 (3.2)
충남	128,100 (3.2)	20,159 (3.1)	21,635 (3.2)	22,051 (3.2)	64,255 (3.3)	132,998 (3.7)	62,607 (3.6)	70,391 (3.8)
전북	143,356 (3.6)	22,982 (3.6)	24,968 (3.7)	24,557 (3.6)	70,849 (3.6)	146,562 (4.1)	68,370 (3.9)	78,192 (4.3)
전남	151,727 (3.8)	24,288 (3.8)	25,753 (3.8)	26,057 (3.8)	75,629 (3.9)	156,009 (4.3)	71,961 (4.1)	84,048 (4.6)
경북	208,651 (5.3)	33,059 (5.1)	35,197 (5.2)	35,761 (5.2)	104,634 (5.4)	201,696 (5.6)	98,399 (5.6)	103,297 (5.6)
경남	372,338 (9.4)	59,260 (9.2)	63,337 (9.4)	65,162 (9.5)	184,579 (9.4)	331,380 (9.2)	164,033 (9.3)	167,347 (9.1)
제주	46,864 (1.2)	8,056 (1.3)	8,429 (1.2)	8,178 (1.2)	22,201 (1.1)	39,058 (1.1)	18,775 (1.1)	20,283 (1.1)

資料: 통계청, 『1995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97.



## 2. 代理保育需要

현재 취업중인 기혼여성의 아동을 보육서비스 제공의 대상으로 하여 이들에 대하여 모두 시설보육이 제공되어야 한다는 정책목표를 들 경우는 취업모의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중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를 파악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지역별로 0~11세 아동의 어머니의 연령과 취업상태를 제시하고 있는 자료<sup>5)</sup>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혼여성의 연령군별 취업률에 여성의 연령군별 0~11세 아동의 수를 곱하여 추정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기혼여성의 연령군별 경제활동참가율과 모의 연령군별 아동의 수를 파악해야 한다.

### 가. 地域別 既婚女性の 經濟活動參加率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파악할 수 있는 조사로는 경제활동인구조사, 5년주기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 비정규적으로 실시하는 고용구조조사 등이 있는데 그 중 지역별로 기혼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이 발표된 것은 인구주택총조사 보고서이다. 그러나 이는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안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는 경제활동의 정의인 조사대상 1주간의 경제활동상태와는 다른 개념정의를 사용하고 있다<sup>6)</sup>.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안의 정의를 사용

5) 고용관련한 조사인 『고용구조 특별조사』와 『경제활동인구조사』의 경우는 출산과 관련된 자료가 조사되지 않았다. 한편, 1997년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의 경우 부인을 단위로한 미취학 및 초등학생인 자녀수와 취업상태가 파악되고 있기는 하지만 지역별로 나누어 취업률과 미취학 및 초등학생수를 파악하기에는 자료의 성격상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경제활동인구조사의 원자료 분석을 통하여 파악하고, 이에 연령군별 아동수가 지역별로 발표된 1995년도 인구 및 주택총조사 결과를 이용하여 취업모를 둔 미취학 및 초등학생수를 추정하기로 하였다.

6) 또한 1990년과 1995년도에는 상이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1990년도에는 1년중

하여 가장 최근의 경제활동실태를 조사한 자료인 1996년도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원자료를 분석하여 지역별 기혼여성의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을 계산하였다(表 IV-3 참조).

〈表 IV-3〉 市·道別 既婚女性の 年齡別 經濟活動參加率(1996年)

(단위: 천명, %)

지역	총 여성수	전체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세 이상
전국	13,170	48.4	45.0	36.4	35.0	46.6	59.3	65.5	62.1	57.2	53.3	29.2
서울	2,925	45.6	66.7	42.5	38.4	46.4	58.6	60.5	53.5	48.9	40.2	18.9
부산	1,070	47.0	-	35.0	30.7	44.1	56.0	66.0	59.5	52.8	45.2	21.7
대구	629	47.1	-	42.9	35.9	51.8	59.8	65.2	59.4	54.7	42.3	15.6
인천	638	45.0	-	31.6	32.1	45.6	55.5	64.0	58.9	54.5	39.0	21.3
광주	327	46.4	-	30.0	36.1	53.8	60.4	60.5	60.0	46.2	50.0	22.7
대전	331	41.7	-	22.2	30.6	41.9	53.8	63.4	58.8	50.0	39.1	15.6
경기	2,349	45.5	60.0	37.1	33.4	43.1	58.7	64.5	62.3	53.0	50.3	22.8
강원	445	47.6	-	25.0	35.7	48.9	62.3	64.4	58.8	60.0	53.2	29.6
충북	416	50.7	50.0	33.3	36.4	47.7	58.5	74.0	63.2	62.5	56.8	34.8
충남	584	57.2	-	30.0	35.9	54.7	72.1	78.2	76.7	73.3	68.8	39.8
전북	563	53.3	-	25.0	43.6	52.8	62.1	72.9	66.2	64.2	58.9	37.7
전남	686	58.9	50.0	25.0	37.5	49.2	67.2	74.2	73.0	78.0	77.9	46.9
경북	869	55.6	-	37.0	30.7	56.0	70.5	73.0	79.3	66.7	69.5	38.4
경남	1,186	47.4	-	34.5	33.6	44.5	52.5	63.9	63.8	61.3	59.6	29.5
제주	153	59.5	-	33.3	38.5	52.6	75.0	80.0	71.4	75.0	71.4	45.2

資料: 통계청, 1996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경제활동상의 특성을 보면, 기혼여성 전체는 결혼이나 출산과 함께 노동시장을 이탈한 후 일정시기가 지나 가사나 육아부담이 경감되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유형을 보이고 있다<sup>7)</sup>. 즉, 출산기 연령인 20대에 최저 수준인 36.4%, 35%의 수준을 보이다가 30~34세 연령군에서 다시 상승하여 46.6%의 수준을 나타내고 그후 40~44세 연령군까지

30일 이상 수입이 있는 일을 해 왔으며 앞으로 계속 수입이 있는 일을 하게 될 사람을 유업자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1995년도의 조사에서는 조사대상 1개월간의 경제활동상태를 조사하였다.

7) 기혼여성에 비하여 미혼여성은 연령별 큰 변동이 없는 역U자형이다(附表 4-1 참조).

계속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로 살펴보면 연령별 경제활동참가 곡선에 차이가 보인다. 서울, 부산, 대구, 경기, 경북, 경남은 20~24세 연령군에 비하여 25~29세 연령군에서 낮아 경제활동참가율이 최저수준을 보이다가 30~34세 연령군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급증하는데 비하여 인천, 광주,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제주도는 20~24세 연령군에서 최저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며 연령이 높아질수록 경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출산기의 최저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이 완료된 시기라고 볼 수 있는 35~39세 경제활동참가율을 비교해보면 경남과 서울이 그 차이가 가장 적어 각각 18.9%와 20.2%이다. 반면 전남, 충남, 제주도는 그 차이가 매우 커서 40%를 넘고 있다. 전북과 경북, 강원 또한 그 차이가 매우 크다. 한편 대전과 전남, 전북, 강원은 출산기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낮아 25% 전후이다. 반면 제주, 충남, 경북은 35~39세 연령군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 나. 市·道別 就業母의 兒童數

기혼여성의 연령군별 취업률에 여성의 연령군별 0~11세 아동의 수<sup>8)</sup>를 곱하여 추정한 결과 취업모의 미취학 아동수는 총 171만 760명, 초등학교학생수는 194만 1,286명이다(表 IV-4 참조).

이는 각각 대상 아동군의 43.2%와 53.9%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즉 전체 미취학 아동의 43.2%와 초등학생의 53.9%는 어머니가 취업중이다. 초등학생의 경우 취업모 아동의 비율이 미취학 아동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表 IV-5 참조).

8) 지역별 여성의 연령군별 아동의 수는 통계청에서 1997년도에 발표한 『1995년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의 表 10(pp.506~525)의 자료를 사용하였음.

〈表 IV-4〉 市·道別 就業母의 未就學 및 初等學校 兒童數(1996年)  
(단위: 명)

지역	미취학아동					초등학교		
	전체 (0~5세)	영아			유아 (3~5세)	전체 (6~11세)	저학년 (6~8세)	고학년 (9~11세)
		0세	1세	2세				
전국	1,710,763	253,771	275,994	288,848	892,150	1,941,286	901,338	1,039,948
서울	376,289	60,156	62,832	64,086	189,214	402,762	185,235	217,526
부산	120,292	17,328	19,062	20,214	63,688	152,413	68,150	84,263
대구	97,981	14,711	15,751	16,434	51,085	109,539	51,877	57,662
인천	101,332	14,319	16,022	17,150	53,841	105,564	51,365	54,198
광주	54,929	8,122	8,826	9,336	28,645	60,248	28,058	32,190
대전	45,958	6,752	7,267	7,731	24,208	54,142	24,957	29,186
경기	346,749	51,221	56,083	58,477	180,969	357,535	174,370	183,165
강원	48,834	6,960	7,660	8,150	26,064	62,315	28,300	34,015
충북	50,869	7,514	8,247	8,713	26,395	60,327	27,427	32,899
충남	60,904	8,301	9,409	10,145	33,050	84,640	37,366	47,274
전북	69,090	9,961	11,332	11,639	36,158	85,545	38,220	47,324
전남	67,646	9,636	10,687	11,288	36,036	91,288	39,202	52,087
경북	96,416	13,219	14,700	15,792	52,705	126,874	58,433	68,441
경남	150,254	22,010	24,238	25,722	78,284	162,729	76,912	85,817
제주	23,217	3,561	3,878	3,971	11,808	25,365	11,464	13,901

資料: 통계청, 『1995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97.  
\_\_\_\_\_, 1996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이를 아동의 연령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아이의 나이가 많을수록 취업모의 아동의 비율이 높아진다. 아이가 만 1세 미만의 영아일 경우 취업모를 둔 아동의 비율은 39.5%로 초등학교 고학년의 56.6%보다 훨씬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미취학 아동의 경우 취업모아동의 규모가 서울지역이 가장 커서 37만 6,289명이며 다음이 경기지역으로 34만 6,749명, 경남이 15만 254명, 부산이 12만 292명, 인천이 10만 1,332명의 순서이다. 반면 제주지역은 2만 3,217명으로 가장 적고 대전이 4만 5,968명 강원도가 4만 8,831명이다. 그외 7개 시·도(대구, 경북, 전북, 전남, 충남, 광주, 충북)가 5~10만 사이의 규모를 보이고 있다. 한편, 전체 아동중 취업모 아동의 비율을 살펴보면

제주도가 가장 높아 49.5%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전남, 충남, 경북, 서울의 순서이다. 반면 대전시가 가장 그 비율이 낮아 38.2%로 나타났다. 즉 지역별로 크기는 10% 이상의 차이가 있다.

〈表 IV-5〉 市·道別 全體兒童 對比 就業母의 兒童數

(단위: 명, %)

지역	내용	영 아					초등학교		
		전체 (0~5세)	0세	1세	2세	유아 (3~5세)	전체 (6~11세)	저학년 (6~8세)	고학년 (9~11세)
전국	A	3,958,546	642,039	677,266	684,717	1,954,524	3,598,335	1,760,349	1,837,986
	B	1,710,760	253,771	275,994	288,848	892,150	1,941,286	901,338	1,039,948
	B/A	43.2	39.5	40.8	42.2	45.6	53.9	51.2	56.6
서울	A	833,382	141,434	144,978	144,364	402,606	750,658	360,154	390,504
	B	376,289	60,156	62,832	64,086	189,214	402,762	185,235	217,526
	B/A	45.2	42.5	43.3	44.4	47.0	53.7	51.4	55.7
부산	A	297,998	47,303	50,482	51,552	148,661	297,337	140,671	156,666
	B	120,292	17,328	19,062	20,214	63,688	152,413	68,150	84,263
	B/A	40.4	36.6	37.8	39.2	42.8	51.3	48.4	53.8
대구	A	212,874	35,038	36,409	36,689	104,738	195,658	96,055	99,603
	B	97,981	14,711	15,751	16,434	51,085	109,539	51,877	57,662
	B/A	46.0	42.0	43.3	44.8	48.8	56.0	54.0	57.9
인천	A	248,979	38,998	41,992	43,170	124,819	208,883	106,503	102,380
	B	101,332	14,319	16,022	17,150	53,841	105,564	51,365	54,198
	B/A	40.7	36.7	38.2	39.7	43.1	50.5	48.2	52.9
광주	A	119,367	19,926	20,639	20,830	57,972	106,158	50,928	55,230
	B	54,929	8,122	8,826	9,336	28,645	60,248	28,058	32,190
	B/A	46.0	40.8	42.8	44.8	49.4	56.8	55.1	58.3
대전	A	120,466	20,040	20,551	20,748	59,127	110,142	53,808	56,334
	B	45,958	6,752	7,267	7,731	24,208	54,142	24,957	29,186
	B/A	38.2	33.7	35.4	37.3	40.9	49.2	46.4	51.8
경기	A	846,290	134,638	144,040	146,082	421,530	697,698	360,892	336,806
	B	346,749	51,221	56,083	58,477	180,969	357,535	174,370	183,165
	B/A	41.0	38.0	38.9	40.0	42.9	51.2	48.3	54.4
강원	A	111,222	18,009	18,779	19,024	55,410	112,754	53,782	58,972
	B	48,831	6,960	7,660	8,150	26,064	62,315	28,300	34,015
	B/A	43.9	38.6	40.8	42.8	47.0	55.3	52.6	57.7
충북	A	116,932	18,849	20,077	20,492	57,514	111,344	53,411	57,933
	B	50,869	7,514	8,247	8,713	26,395	60,327	27,427	32,899
	B/A	43.5	39.9	41.1	42.5	45.9	54.2	51.4	56.8

〈表 IV-5〉 계속

지역	내용	영아					초등학교		
		전체 (0~5세)	0세	1세	2세	유아 (3~5세)	전체 (6~11세)	저학년 (6~8세)	고학년 (9~11세)
충남	A	128,100	20,159	21,635	22,051	64,255	132,998	62,607	70,391
	B	60,904	8,301	9,409	10,145	33,050	84,640	37,366	47,274
	B/A	47.5	41.2	43.5	46.0	51.4	63.6	59.7	67.2
전북	A	143,356	22,982	24,968	24,557	70,849	146,562	68,370	78,192
	B	69,090	9,961	11,332	11,639	36,158	85,545	38,220	47,324
	B/A	48.2	43.3	45.4	47.4	51.0	59.4	55.9	60.5
전남	A	151,727	24,288	25,753	26,057	75,629	156,009	71,961	84,048
	B	67,646	9,636	10,687	11,288	36,036	91,288	39,202	52,087
	B/A	44.6	39.7	41.5	43.3	47.6	58.5	54.5	62.0
경북	A	208,651	33,059	35,197	35,761	104,634	201,696	98,399	103,297
	B	96,416	13,219	14,700	15,792	52,705	126,874	58,433	68,441
	B/A	46.2	40.0	41.8	44.2	50.4	62.9	59.4	66.3
경남	A	372,338	59,260	63,337	65,162	184,579	331,380	164,033	167,347
	B	150,254	22,010	24,238	25,722	78,284	162,729	76,912	85,817
	B/A	40.4	37.1	38.3	39.5	42.4	49.1	46.9	51.3
제주	A	46,864	8,056	8,429	8,178	22,201	39,058	18,775	20,283
	B	23,217	3,561	3,878	3,971	11,808	25,365	11,464	13,901
	B/A	49.5	44.2	46.0	48.6	53.2	64.9	61.0	68.5

註: A=총 아동수, B=취업모의 아동수

資料: 통계청, 『1995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97.

\_\_\_\_\_, 1996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초등학생의 경우 역시 서울과 경기도가 취업모 아동의 절대규모가 가장 커 각각 40만 2762명, 35만 7535명이다. 경남, 부산, 경북, 대구, 인천지역이 10~15만 사이의 규모를 보인다. 제주지역이 2만 5365명으로 가장 적고 기타 7개 도시(전남, 충남, 전북, 강원, 충북, 광주, 대전)가 5~10만사이의 규모이다. 취업모 아동의 비율을 지역 특성별로 보면 제주도가 가장 높아 64.9%, 충남이 63.6%, 경북이 62.9%이다. 반면 대전은 미취학 아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비율이 가장 낮아 49.2%이고 가장 높은 지역에 비하여 10%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추정된 취업모의 아동수를 선행연구의 결과와 비교하

면 <表 IV-6>과 같다. 행동과학연구소에서 1990년도 결과를 기초로 하여 1995년도의 취업모의 0~5세 아동의 수를 추계한 결과는 207만 3천명으로 1995년도 0~5세 연령아동의 51%에 이르고 있고, 보건복지부의 결과는 182만 8천명으로 45%에 이르고 있다. 이에 비하여 연령군별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고려하여 계산한 결과는 약 171만 명으로 1996년도 0~5세 연령아동의 43.2%에 달하고 있다. 이는 보육정책의 기초로 사용되고 있는 보건복지부 추계보다 약 11만 7천명이 적은 규모이다.

<表 IV-6> 方法別 就業母의 兒童數 推定 結果의 比較

방 법	취업모 아동수 추정 (명)	0~5세의 총아동 대비 취업모아동(%)
행동과학연구소 연구(0~5세)	2,073,211(1995년)	51.0
보건복지부 추계(0~5세 적생아)	1,828,000(1996년)	45.0
금진호의 연구(미취학 적생아수)	1,962,000(1996년)	48.3
본 연구(0~5세 적생아)	1,710,760(1996년)	43.2

### 3. 基本保育需要

基本保育의 觀點에서 보육대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취업모의 미취학 아동수 및 초등학교 학생수를 파악하여야 한다. 이는 가정의 경제적 요구에 의하여 취업중인 여성의 자녀가 일차적인 보육서비스의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경제활동인구조사중 소득에 관한 자료는 공개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그 대안으로 취업모의 교육수준과 직종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취업여성의 규모를 추정하였다. 이는 교육수준이 사회경제적 지위를 나타내는 대리변수로 사용이 가능하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며(최강식·정진화, 1997) 전직종에 걸쳐서 교

육수준이 낮을수록 임금수준이 낮기 때문이다(통계청, 1996).

또한, 노동부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에 의하면 직종별 임금수준의 차이가 크며, 제 직종중 단순노무직의 임금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95년 현재 단순노무직의 평균임금이 월 784,108원으로 가장 임금수준이 낮고, 이는 사무직원 평균임금의 66.8%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다음으로 임금수준이 낮은 직종은 서비스판매직으로 사무직 평균임금의 78.3%에 해당하는 920,324원이다.

교육수준과 직종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여성<sup>9)</sup>과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는 서비스직 종사자로 고용자가 아닌 경우(즉,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를 저소득층 취업여성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정의에 의하면 총 취업여성의 28.3%가 저소득층인 것으로 추정되었다(表 IV-7 참조).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에 의하면 전국민의 소득 10분위별 소득분포상 하위 10분위에 속하는 가구가 24.3%이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저소득층의 규모는 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sup>10)</sup>. 저소득층의 규모는 경기도에서 가장 높아 34.3%이며, 그 다음은 부산, 강원, 대구, 충북의 순으로 나타났고, 가장 비율이 낮은 곳은 전남이다<sup>11)</sup>.

연령군별로 살펴보면 경기도의 경우 전반적으로 모든 연령층에서

- 
- 9) 단순노무직의 경우, 교육수준에 따른 기술습득과 그에 상응하는 임금수준의 상승이라는 요소가 갖는 의미가 아주 미미한 것으로 판단하여 교육수준은 고려하지 않았다.
- 10) 한편, 통계청에서 1995년도에 실시한 「사회통계조사」결과에 의하면 기능노무직의 79%가, 학력별로는 초등학교 학력 이하의 여성군의 65.1%가 경제적 이유(생계유지, 가계보탬)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한다.
- 11) 극빈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자활보호대상자의 경우 전국적으로 총 가구의 2%가 자활보호대상가구이다. 이 또한 지역별 차이를 보이지만 구체적 양상은 저소득층의 경우와 동일하지는 않다.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저소득층 취업여성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자녀 양육기에 속하는 30~39세 연령층에서는 저소득층 취업여성의 비율이 각각 18.8%와 21.6%로 지역별 차이가 크지 않다 (表 IV-7 참조).

〈表 IV-7〉 市·道別 既婚就業女性중 低所得層의 比率

(단위: 천명, %)

지역	취업여성수 (총여성수)	계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세
			19세	24세	29세	34세	39세	44세	49세	54세	59세	이상
전국	6,381(13,170)	28.3	-	8.6	13.8	18.8	21.6	25.5	33.5	41.2	43.4	37.8
서울	1,334( 2,925)	27.0	-	2.9	7.0	13.0	19.2	22.9	33.7	41.9	60.5	67.5
부산	503( 1,070)	33.0	-	14.3	11.1	21.4	19.1	26.7	35.9	45.6	57.9	70.0
대구	297( 629)	31.4	-	16.7	8.7	18.6	24.1	21.7	31.6	55.2	63.6	76.5
인천	287( 638)	28.2	-	-	14.8	19.2	23.0	18.8	36.4	41.7	56.3	65.0
광주	152( 327)	28.3	-	-	15.4	14.3	17.2	21.7	37.5	41.7	50.0	53.3
대전	139( 331)	30.4	-	-	9.1	11.1	21.4	30.8	40.0	42.9	55.6	60.0
경기	1,069( 2,349)	34.3	-	15.2	25.5	27.4	26.2	27.8	37.4	52.5	56.8	64.0
강원	214( 445)	32.1	-	33.3	10.0	17.4	23.7	31.0	40.0	40.7	40.0	40.5
충북	210( 416)	31.3	-	-	16.7	23.8	22.6	37.8	41.7	45.0	38.1	27.5
충남	334( 584)	23.1	-	-	7.1	13.8	18.2	20.9	26.1	30.3	27.3	26.9
전북	300( 563)	25.7	-	-	11.8	10.7	22.2	32.6	34.9	38.2	24.2	22.2
전남	404( 686)	20.5	-	-	6.7	13.8	17.9	28.3	28.3	28.3	23.3	15.1
경북	482( 869)	20.7	-	10.0	13.0	16.7	17.9	21.5	30.8	32.0	21.1	14.6
경남	564( 1,186)	28.6	-	10.0	14.3	19.5	22.9	25.9	26.9	40.4	50.9	36.0
제주	93( 153)	22.0	-	-	20.0	20.0	20.0	25.0	30.0	22.2	20.0	21.1

資料: 통계청, 1996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반면 40대 이후의 연령군에서는 지역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대구와 경기도는 특히 50대 이후에서 저소득층 취업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 충북, 강원, 대전에서는 40대에서 저소득층 취업여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表 IV-8〉 市·道別 低所得層 就業母의 未就學 및 初等學校 兒童數  
(단위: 명)

지역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전체 (0~5세)	영아			유아 (3~5세)	전체	저학년 (6~8세)	고학년 (9~11세)
	0세	1세	2세					
전국	293,939	38,265	44,086	48,529	163,059	405,377	180,333	225,044
서울	45,297	5,739	6,607	7,399	25,551	71,481	30,199	41,282
부산	21,593	2,700	3,146	3,520	12,227	31,876	14,033	17,843
대구	15,964	2,059	2,310	2,550	9,045	23,677	10,628	13,049
인천	17,836	2,162	2,608	2,964	10,102	22,216	10,485	11,731
광주	8,082	1,100	1,255	1,375	4,352	10,179	4,494	5,685
대전	5,706	696	804	924	3,282	10,392	4,205	6,187
경기	90,250	12,602	14,238	15,185	48,225	96,401	46,962	49,439
강원	8,427	1,155	1,262	1,357	4,653	13,737	5,766	7,971
충북	10,281	1,259	1,504	1,720	5,798	15,094	6,596	8,498
충남	7,378	791	990	1,171	4,427	14,329	5,887	8,442
전북	8,883	1,135	1,354	1,451	4,943	16,449	6,351	10,098
전남	7,907	877	1,079	1,241	4,710	16,060	6,229	9,831
경북	15,110	1,872	2,181	2,435	8,622	22,854	10,176	12,678
경남	26,745	3,482	4,030	4,472	14,761	35,315	15,965	19,350
제주	4,480	636	718	765	2,361	5,317	2,357	2,960

資料: 통계청, 『1995년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97.  
 \_\_\_\_\_, 1996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이러한 정의에 의한 지역 및 연령군별 기혼취업여성중 저소득층 여성의 비율에 연령군별 0~11세 아동의 수를 곱하여 추정한 결과 저소득층 취업모의 미취학 아동수는 총 29만 3,939명으로, 초등학교 학생수는 40만 5,377명이다. 이는 각각 대상 아동군의 7.4%와 8.3%에 해당하는 규모이다. 즉 전체 미취학 아동의 7.4%와 초등학생의 8.3%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으로 어머니가 취업중이다(表 IV-9와 圖 IV-1 참조). 이는 또한 취업모 아동의 17.2%와 20.9%에 해당하는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전체아동중 저소득층 취업여성 아동의 비율이 대전이 가장 낮아서 미취학아동의 경우 4.7%, 초등학생의 경우 9.4%이며, 경기도는 가장 비율이 높아 각각 10.7%와 27%

에 달하고 있다. 한편, 미취학 아동에 비하여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 저소득층 취업모의 아동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미취학 아동의 경우 아동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表 IV-9〉 市·道別 低所得層 就業母의 兒童數

(단위: 명, %)

지역	내용	미취학아동					초등학교		
		전체 (0~5세)	영아			유아 (3~5세)	전체 (6~11세)	저학년 (6~8세)	고학년 (9~11세)
전국	A	3,958,546	642,039	677,266	684,717	1,954,524	3,598,335	1,760,349	1,837,986
	B	1,710,760	253,771	275,994	288,848	892,150	1,941,286	901,338	1,039,948
	C	293,939	38,265	44,086	48,529	163,059	405,377	180,333	225,044
	C/A	(7.4)	(6.0)	(6.5)	(7.1)	(8.3)	(11.3)	(10.2)	(12.2)
	C/B	(17.2)	(15.1)	(16.0)	(16.8)	(18.3)	(20.9)	(20.0)	(21.6)
	서울	A	833,382	141,434	144,978	144,364	402,606	750,658	360,154
B	376,289	60,156	62,832	64,086	189,214	402,762	185,235	217,526	
C	45,297	5,739	6,607	7,399	25,551	71,481	30,199	41,282	
C/A	(5.4)	(4.1)	(4.6)	(5.1)	(6.3)	(9.5)	(8.4)	(10.6)	
C/B	(12.0)	(9.5)	(10.5)	(11.5)	(13.5)	(17.7)	(16.3)	(19.0)	
부산	A	297,998	47,303	50,482	51,552	148,661	297,337	140,671	156,666
	B	120,292	17,328	19,062	20,214	63,688	152,413	68,150	84,263
	C	21,593	2,700	3,146	3,520	12,227	31,876	14,033	17,843
	C/A	(7.2)	(5.7)	(6.2)	(6.8)	(8.2)	(10.7)	(10.0)	(11.4)
	C/B	(18.0)	(15.6)	(16.5)	(17.4)	(19.2)	(20.9)	(20.6)	(21.2)
	대구	A	212,874	35,038	36,409	36,689	104,738	195,658	96,055
B	97,981	14,711	15,751	16,434	51,085	109,539	51,877	57,662	
C	15,964	2,059	2,310	2,550	9,045	23,677	10,628	13,049	
C/A	(7.5)	(5.9)	(6.3)	(7.0)	(8.6)	(12.1)	(11.1)	(13.1)	
C/B	(16.3)	(14.0)	(14.7)	(15.5)	(17.7)	(21.6)	(20.5)	(22.6)	
인천	A	248,979	38,998	41,992	43,170	124,819	208,883	106,503	102,380
	B	101,332	14,319	16,022	17,150	53,841	105,564	51,365	54,198
	C	17,836	2,162	2,608	2,964	10,102	22,216	10,485	11,731
	C/A	(7.2)	(5.5)	(6.2)	(6.9)	(8.1)	(10.6)	(9.8)	(11.5)
	C/B	(17.6)	(15.1)	(16.3)	(17.3)	(18.8)	(21.0)	(20.4)	(21.6)
	광주	A	119,367	19,926	20,639	20,830	57,972	106,158	50,928
B	54,929	8,122	8,826	9,336	28,645	60,248	28,058	32,190	
C	8,082	1,100	1,255	1,375	4,352	10,179	4,494	5,685	
C/A	(6.8)	(5.5)	(6.1)	(6.6)	(7.5)	(9.6)	(8.8)	(10.3)	
C/B	(14.7)	(13.5)	(14.2)	(14.7)	(15.2)	(16.9)	(16.0)	(17.7)	



〈表 IV-9〉 계속

지역	내용	미취학아동					초등학교		
		전체 (0~5세)	0세	1세	2세	유아 (3~5세)	전체 (6~11세)	저학년 (6~8세)	고학년 (9~11세)
경북	A	208,651	33,059	35,197	35,761	104,634	201,696	98,399	103,297
	B	96,416	13,219	14,700	15,792	52,705	126,874	58,433	68,441
	C	15,110	1,872	2,181	2,435	8,622	22,854	10,176	12,678
	C/A	(7.2)	(5.7)	(6.2)	(6.8)	(8.2)	(11.3)	(10.3)	(12.3)
	C/B	(15.7)	(14.2)	(14.8)	(15.4)	(16.4)	(18.0)	(17.4)	(18.5)
경남	A	372,338	59,260	63,337	65,162	184,579	331,380	164,033	167,347
	B	150,254	22,010	24,238	25,722	78,284	162,729	76,912	85,817
	C	26,745	3,482	4,030	4,472	14,761	35,315	15,965	19,350
	C/A	(7.2)	(5.9)	(6.4)	(6.9)	(8.0)	(10.7)	(9.7)	(11.6)
	C/B	(17.8)	(15.8)	(16.6)	(17.4)	(18.9)	(21.7)	(20.8)	(22.5)
제주	A	46,864	8,056	8,429	8,178	22,201	39,058	18,775	20,283
	B	23,217	3,561	3,878	3,971	11,808	25,365	11,464	13,901
	C	4,480	636	718	765	2,361	5,317	2,357	2,960
	C/A	(9.6)	(7.9)	(8.5)	(9.4)	(10.6)	(13.6)	(12.6)	(14.6)
	C/B	(19.3)	(17.9)	(18.5)	(19.3)	(20.0)	(21.0)	(20.6)	(21.3)

註: A=총 아동수, B=취업모의 아동수 C= 저소득층 취업모의 아동수  
 資料: 통계청, 『1995년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97.  
 \_\_\_\_\_, 1996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圖 IV-1] 觀點別 保育서비스 對象 兒童數

1) 0~5歲 兒童數

보편적 보육수요: 3,958,546명	대리보육수요: 1,710,760명(43.2%)
기본보육수요: 293,939명 ( 7.4%)	

2) 6~11歲 兒童數

보편적 보육수요: 3,598,335명	대리보육수요: 1,941,286명(53.9%)
기본보육수요: 405,377명 (11.3%)	

#### 4. 觀點別 保育對象 規模의 變化 展望

장기적으로 바람직한 보육정책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보육 대상의 변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199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추계된 장래인구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의 변화의 전망<sup>12)</sup>에 기초하여 보육시설의 규모의 변화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그러나 199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기초한 지역별 추계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자세한 추정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전국수준에서의 保育需要만을 전망하고자 한다.

##### 가. 基本資料

##### 1) 未就學 및 初等學生 人口規模의 變化

통계청에서 1995년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기초한 신인구추계에 의하면 미취학 아동(0~5세)의 경우 최근의 출산력 증가로 인하여 1999년까지 증가세이다가 2000년부터 계속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통계청, 1996). 추계에 의하면 2000년에는 427만 4천명, 2005년에는 407만 4천명이었다가 2010년에는 385만 6천명, 2020년에는 345만 3천명, 2030년에는 336만 8천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초등학교(6~11세)의 경우 최근의 출산력 증가로 인하여 1997년 이후 증가세로 반전하여 2004년까지 계속 증가한 후 다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

12) 기혼여성 경제활동참가에 미취학 아동의 존재 유무가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김훈, 1995; 양승주, 1995). 또한, 부인의 취업에 대한 남편의 태도 등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되고 있다(최강식·정진화, 1997). 따라서 보육서비스나 유아휴직과 같은 육아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사회정책의 실현 정도가 기혼여성의 취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한편, 산업구조의 차이, 시간제 고용의 과급정도와 같은 요인들이 여성노동력의 수요에 영향을 끼침으로써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여 추정된 자료가 없는 실정이다.

고 있다. 추계에 의하면 2000년에는 408만 1천명, 2005년에는 426만 5천명이었다가 2010년에는 410만명, 2020년에는 364만 1천명, 2030년에는 336만 9천명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表 IV-10 참조).

〈表 IV-10〉 未就學 및 初等學生 年齡 人口의 變化 推移

(단위: 천명, %)

연도	총인구	미취학 아동인구 (0~5세)	초등학생 인구 (6~11세)
1995	45,093 (100.0)	4,193 (9.3)	3,901 (8.7)
2000	47,275 (100.0)	4,274 (9.0)	4,081 (8.6)
2005	49,123 (100.0)	4,074 (8.3)	4,265 (8.7)
2010	50,618 (100.0)	3,856 (7.6)	4,100 (8.1)
2015	51,677 (100.0)	3,615 (7.0)	3,871 (7.5)
2020	52,358 (100.0)	3,454 (6.6)	3,641 (7.0)
2025	52,712 (100.0)	3,386 (6.4)	3,453 (6.6)
2030	52,744 (100.0)	3,368 (6.4)	3,369 (6.4)

資料: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 1996.

최근 출산력 증가의 영향이 미미해지는 시점의 차이로 인하여 2000년까지는 미취학 아동수가 초등학생수보다 많지만 2005년부터는 초등학생수가 많다가 2030년에는 그 인구규모가 비슷해 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 2) 女性經濟活動參加率의 變化 推定

경제활동참가율을 추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sup>13)</sup> 본 연구에서는 국내총생산과 진학률<sup>14)</sup>을 이용하여 성별 경제활동참가율을

13)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추정하려 시도한 방법중에는 경제활동참가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고려하여 예측하는 방법, 가용공급인력을 추정하여 노동력의 수요와 공급구조를 동시에 파악하는 방법, 인구학적 요인인 교육수준, 도시화, 피부양인구비와 더불어 경제성장이라고 하는 비인구적인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방법들이 있다(김태홍, 1997).

전망한 김태홍(1997)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고자 한다.

〈表 IV-11〉에 의하면 여성 전체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6년과 2000년에는 2.2%,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는 2.8%가 증가하고,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0.8%가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를 연평균 증가율로 보면 1996년과 2000년 사이에는 0.55%, 2000년과 2005년 사이에는 0.56%, 2005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0.16%가 증가하는 것으로 2005년 이후에는 여성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출산과 육아문제로 노동시장에서 일시퇴장함으로써 발생하는 연령별 여성경제활동율의 쌍봉구조(M)는 지속될 것이지만 그 정도는 약화되는 것으로 전망된다. 〈表 IV-11〉을 기초로 연령세대별 분석(Cohort Analysis)을 해보면 1990년 현재 20~24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4.5%로, 이들이 25~29세가 되는 1995년에는 47.8%로 동기간중 16.7%「포인트」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저하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1995년 현재 20세~24세 연령층의 경우는 2000년까지의 기간중 경제활동참가율이 11.7%「포인트」로 저하되고 있다. 또한 2000년 현재 20세~24세 연령층의 경우는 2005년까지의 기간중 9.8%「포인트」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저하가 이루어지고 있고, 2005년 현재 20~24세 연령층의 경우는 2010년까지의 기간중 9.0%「포인트」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저하가 이루어져 지속적으로 그 차이가 감소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1990년 현재 25~29세 연령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2.8%로, 이들이 30~34세가 되는 1995년에는 47.5%로 동기간중 4.7%「포인트」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

14) 이들 변수는 경제활동에 큰 설명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비교적 정확한 예측치로 알려져 있다.



〈表 IV-11〉 女性の 經濟活動參加率 展望

(단위: %)

연도	전체	15~19세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세 이상
1990	47.0	18.6	64.5	42.8	49.6	58.0	60.5	63.9	60.0	54.4	26.5
1995	48.3	14.6	66.1	47.8	47.5	59.2	66.1	61.1	58.3	54.3	28.9
1996	48.7	13.6	66.0	51.1	49.1	60.1	65.6	62.2	57.2	53.3	29.2
2000	50.9	10.3	68.7	54.4	51.6	62.5	67.0	64.5	60.8	56.8	30.6
2005	53.7	8.8	71.8	58.9	53.7	64.6	69.2	66.2	62.4	59.0	32.7
2010	54.5	8.0	74.0	62.8	55.3	66.2	71.0	67.4	63.6	60.7	34.6

資料: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김태홍·양승주 『여성인구의 특성과 변화』, 1997, p.131.

그러나, 1995년 현재 25~30세 연령층의 경우는 2000년까지의 기간 중 3.8%「포인트」의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경제활동의 최저점이 25~29세군이었던 것에 비하여 1995년부터는 30~34세군으로 옮겨졌다. 이는 평균결혼연령의 상승에 의하여(통계청, 1996) 육아기간이 이동하여 생긴 현상으로 이해된다.

나. 觀點別 保育對象 兒童數의 推定

1) 普遍的 保育需要의 展望

통계청에서 발표한 인구추계에 의하면 2000년도의 미취학아동은 1996년의 395만 8,546명의 108%에 해당하는 427만 4,378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아동의 연령별로 살펴보면 0세 아동은 109.7%로 증가하지만 1세 아동과 2세 아동은 큰 증가가 없고 유아와 초등학생은 110% 내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0년에는 1996년도의 미취학 아동은 385만 6,424명으로 1996년에 비하여 큰 증가가 없으나, 1, 2세 아동의 수는 약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1996년도 초등학교 학생연령군의 114%에 해당하는 410만 508명이 보편적 保育

需要의 대상으로써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表 IV-12〉 未就學 및 初等學校 兒童數 推定

(단위: 명, %)

연도	미취학아동수					초등학교		
	전체 (0~5세)	영아		유아		전체 (6~11세)	저학년 (6~8세)	고학년 (9~11세)
1996	3,958,546 (100.0)	642,039 (100.0)	677,266 (100.0)	684,717 (100.0)	1,954,524 (100.0)	3,598,335 (100.0)	1,760,349 (100.0)	1,837,986 (100.0)
2000	4,274,378 (108.0)	704,523 (109.1)	709,983 (109.7)	713,822 (104.3)	2,146,050 (109.8)	4,081,120 (113.4)	2,135,555 (121.3)	1,945,565 (105.9)
2005	4,073,691 (102.9)	659,633 (102.7)	666,000 (98.3)	627,668 (98.3)	2,073,693 (106.1)	4,264,755 (118.5)	2,127,764 (120.9)	2,136,991 (116.3)
2010	3,856,424 (97.4)	627,668 (97.8)	636,028 (93.9)	642,225 (93.9)	1,950,503 (99.8)	4,100,508 (114.0)	2,013,610 (114.4)	2,086,898 (113.5)

資料: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 2) 代理保育需要의 展望

기혼여성의 연령군별 경제활동참가율에 여성의 연령군별 0~11세 아동의 수를 곱하여 전국수준의 대리보육수요를 전망해 보았다. 이때 기혼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1996년도 현재 여성전체 경제활동참가율대비 기혼여성의 비율을 대입하여 산출되었다(附表 4-11 참조). 또한 0~11세 사이의 아동수는 추계되어 있지만 그들의母的 연령은 알 수 없으므로 1995년도 현재 아동의 연령별로母的 연령 분포율을 적용하여 여성의 연령군별 0~11세 아동의 수를 추정하였다<sup>15)</sup>.

〈表 IV-13〉에 의하면 취업모의 아동은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등학교 학생 연령군에서는 절대 아동수의 증가에 비하

15) 이러한 추정은 연령군별 유배우율과 출산시기에 있어서 1996년과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또한 결혼연령의 상승으로 인한 육아기간의 이동은 이미 경제활동참가율에 반영되어 있으므로 아동의 연령군별 모(母)의 연령군의 분포에 있어 변화를 고려하지 않았다.

여 취업모의 아동수의 증가가 약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 IV-13〉 就業母의 未就學 및 初等學校 兒童數 推定

(단위: 명, %)

연도	미취학아동					초등학교		
	전체 (0~5세)	영아			유아 (3~5세)	전체 (6~11세)	저학년 (6~8세)	고학년 (9~11세)
		0세	1세	2세				
1996	1,710,760 (100.0)	253,771 (100.0)	275,994 (100.0)	288,848 (100.0)	892,150 (100.0)	1,941,286 (100.0)	901,338 (100.0)	1,039,948 (100.0)
2000	1,946,721 (113.8)	295,293 (116.4)	306,338 (111.0)	317,552 (110.0)	1,027,538 (115.2)	2,265,178 (116.7)	1,137,110 (126.2)	1,128,068 (108.5)
2005	1,953,188 (114.2)	292,782 (115.4)	303,789 (110.0)	316,372 (109.5)	1,040,245 (116.6)	2,460,280 (126.7)	1,177,605 (130.7)	1,282,675 (123.3)
2010	1,923,675 (112.4)	291,752 (115.0)	303,351 (110.0)	314,336 (108.8)	1,014,236 (113.7)	2,433,488 (125.4)	1,147,548 (127.3)	1,285,940 (123.7)

資料: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김태홍·양승주, 『여성인구의 특성과 변화』, 1997.

## V. 保育施設 利用希望率을 考慮한 保育需要

공급자의 측면에서 파악된 대리보육수요와 기본보육수요의 경우 대상으로 파악된 아동의 부모가 모두 保育施設을 사용할 것을 희망하는 것은 아니다. 가족이 놓여있는 상황에 따라서 保育施設이 아니라 가족의 도움, 또는 다른 시설(유치원, 학원 등)을 이용하기를 희망할 수도 있다. 그러한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경우 자칫 필요한 保育施設의 규모를 과대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부모의 입장에서 保育施設을 이용할 것을 희망하는 정도를 고려하여 보육수요를 파악하고자 한다.

### 1. 保育施設 利用希望率<sup>16)</sup>

실제로 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가정의 아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미취학 아동 및 초등학생 자녀를 둔 가정의 保育施設 및 放課後 兒童教室에 대한 利用希望率을 파악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997년에 실시한 『1997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保育施設을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정도를 파악하였다. 이 자료는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센서스 표본조사구 중 섬지역과 시설단위 조사구를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200개의 표본조사구를 시, 군 및 아파트 지역에 대하여 층화추출한 확률표본 자료이다. 조사완료 가구수는 총 10,861가구이며 조사완료 가구내 조

16) 자료의 규모상 지역별로 보육대상 아동의 연령별로 정확한 보육시설 이용률을 계산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전국적인 보육시설 이용희망률만을 산출하였다.

사완료 부인수는 15~49세의 6,450명이다<sup>17)</sup>. 이 자료에는 기혼여성의 취업실태 및 보육실태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본 장에서는 保育施設 및 방과후 아동교실에 대한 기혼부인의 사용 희망여부에 관한 자료를 분석하여 이용희망률을 파악하였다<sup>18)</sup>. 保育施設 이용희망률은 미취학 아동의 경우는 保育施設을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부인의 비율, 초등학교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는 방과후 아동교실의 이용희망자의 비율로 산출되었다.

#### 가. 未就學 兒童의 年齡別 保育施設 利用希望率

전체 기혼여성중 미취학 자녀의 보육을 위해서 保育施設을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62.6%로, 자녀의 연령별로 보면 2세 아동의 경우가 75.2%로 가장 높고 3세 이상의 아동의 경우가 49.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이는 3세 아동의 경우는 유치원과 사설학원이라는 대안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취업모의 경우 保育施設을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비율은 63.6%로 전체평균에 비하여 약간 높게 나타나고, 저소득층 취업모의 경우는 55.7%로 취업모 전체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sup>19)</sup>. 한편, 자녀양육문제로 취업을 못하고 있는 부인<sup>20)</sup>의 경우는 保育施設을 이용하기를 희망

17) 본 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결과는 조남훈 외(1997)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 실태조사』를 참고할 것임.

18) 보육실태에 대한 분석은 제7장에서 다루어질 것임.

19) 이는 1990년도의 『전국택아수요 및 부모의 요구조사연구』에서도 나타난 현상으로, 도시 중류층의 택아수요 요구율인 68.5%에 비하여 도시 저소득층의 택아수요 요구율은 50.5%로 낮게 나타났다.

20) 미취학 아동이 있는 부인으로 자녀양육 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인은 1,387명으로 미취학 아동이 있는 부인 2,447명의 56.7%, 초등학생이 있는 부인으로 자녀양육 때문에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인은 675명으로 초등학교 학생자녀가 있는 부인 2,153명의 31.4%로 나타났다.

하는 비율이 62.7%로 취업모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보육시설 이용희망률의 연령별 차이는 취업모, 저소득층 취업모, 자녀양육문제로 취업을 못하고 있는 부인의 경우에서 모두 관찰된다. 저소득층 취업모의 경우는 특히 2세부터 보육시설 이용희망률이 저하되기 시작한다.

〈表 V-1〉 母의 就業狀態別 保育施設 利用希望率<sup>1)</sup>

자녀의 연령	전체	취업모	저소득층 취업모	자녀양육문제로 취업을 못하고 있는 부인
미취학아동	62.6	63.6	55.7	62.7
0	70.3	77.1	54.1	68.6
1	72.7	74.8	90.7	72.4
2	75.2	80.8	68.6	72.5
3세 이상	49.4	53.3	47.0	45.3
초등학생 <sup>2)</sup>	33.0(45.0)	35.4(43.1)	31.2(41.2)	30.3(47.9)
저학년	35.0(46.2)	39.2(44.4)	33.0(43.0)	30.5(48.8)
고학년	29.6(43.1)	26.7(41.0)	29.1(38.9)	29.6(45.5)

註: 1) 미취학 아동이 1명 이상 또는 초등학생이 1명 이상인 경우는 나이가 어린 자녀를 중심으로 보육시설이용희망률을 산출하였음.

2) 괄호안의 수치는 “지도프로그램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응답률로 소극적인 수요임.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자료

#### 나. 初等學生 子女의 學齡別 放課後 保育施設 利用希望率

초등학생의 경우는 방과후 아동교실이 생기면 꼭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33.0%이다. 저학년이 35.0%로 고학년의 29.6%보다 약간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도프로그램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응답한 소극적인 이용희망률까지 고려하면 저학년의 경우는 81.2%, 고학년의 경우는 72.7%로 나타나고 있다.

취업모의 경우는 꼭 이용하겠다고 응답한 비율이 저학년의 경우는 39.2%로 전체 평균보다 약간 높게 나타난 반면, 고학년의 경우는

26.7%로 약간 낮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지도프로그램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응답한 소극적인 이용희망률까지 고려한 경우도 저학년의 경우는 83.6%인 반면 고학년은 67.7%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보다 고학년의 경우 보호보다는 교육기능에 관심을 두기 때문에 어머니의 취업여부와는 상관없이 양질의 프로그램만 제공된다면 방과후 아동교실을 이용하기를 원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저소득층 취업모의 경우는 미취학 아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업모 전체보다 약간 낮은 31.2%로 나타났다. 또한, 자녀양육문제로 취업을 못하고 있는 부인의 경우는 방과후 아동교실 이용희망률이 30.3%, 소극적인 이용희망률까지 고려하면 78.2%로 나타났다.

## 2. 保育施設 利用希望率을 考慮한 地域別 保育需要

保育施設 利用希望率에 있어서 나타난 제특성을 보육수요를 파악하는데 어느 정도나 어떠한 측면을 반영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보육정책의 구체적인 목표에 따라서 달라진다. 본 절에서는 첫째, 취업여성중 保育施設의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만을 보육서비스의 대상으로 할 경우 보육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아동수, 둘째, 저소득층 취업여성중 保育施設의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만을 보육서비스의 대상으로 할 경우 보육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아동수, 셋째, 현재 취업모의 자녀 뿐만 아니라 대리양육자를 확보할 수 없어서 취업을 포기하는 기혼여성의 취업을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갖고 있을 경우에 의미있는 保育施設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자 한다. 방과후 아동교실의 경우는 절대적으로 방과후 아동교실을 사용하겠다는 경우와 프로그램을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는 소극적인 태도가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어, 적극적인 수요만 고려한 경우와 소극적인 태도까지 고려한 방과후 아동교실 이용희망도를

적용하여 서비스 대상 아동수를 파악한 결과를 모두 제시하였다.

#### 가. 就業母 子女중 保育施設 利用希望 兒童數

전국단위로 조사된 보육시설수요 즉, 保育施設과 방과후 아동교실 이용희망률을 시·도별로 산출된 취업모의 자녀수에 적용하여 산출된 취업모의 자녀중 保育施設의 이용을 희망하는 아동은 미취학 아동 111만 1,006명으로 나타났다(表 V-2 참조).

보육시설의 이용을 원하는 가정의 아동수를 살펴보면,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가장 많아서 20만명을 넘고 있어 전국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다. 가장 규모가 적은 지역은 제주도와 대전광역시이다. 취업모의 자녀중 保育施設의 利用을 희망하는 아동의 규모는 0~5세 연령에 해당되는 전체 아동의 28.1%이며 취업모 자녀의 64.9%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表 V-3과 圖 V-1 참조). 이러한 결과를 선행연구에서 산출된 결과와 비교해 본 <表 V-4>에 의하면 행동과학연구소의 추계보다는 적지만 보건복지부의 추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保育施設 利用希望率이 보건복지부가 사용한 56.4%보다 전반적으로 높고, 본 연구에서는 연령별로 상이한 보육시설 이용희망률을 사용하였다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취업모의 자녀중 保育施設의 利用을 희망하는 아동의 규모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2세 미만 영아의 경우는 30.5%, 2세 영아의 경우는 34.1%, 유아의 경우는 24.3%이다. 3세 아동의 절대수는 영아에 비하여 많지만, 전체아동대비 비율은 낮은 것인데, 이는 3세 아동군의 保育施設 이용희망률이 낮기 때문이다. 즉, 3세 이상 유아의 경우는 아동의 보육을 둘러싸고 保育施設이 유치원 및 사설학원과 비교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역간 차이가 커서 가장 그 비율이 높은 제주가 32.3%이고, 가장 낮은 대전은 24.7%로 약 8%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表 V-2〉 市·道別 保育施設 利用을 希望하는 就業母의 兒童數  
(단위: 명)

지역	미취학아동					초등학교		
	전체 (0~5세)	0세	영아 1세	유아 2세	유아 (3~5세)	전체 (6~11세)	저학년 (6~8세)	고학년 (9~11세)
전국	1,111,006	195,657	206,444	233,389	475,516	630,990 (1,457,562)	353,324 (753,517)	277,666 (704,045)
서울	246,011	46,380	46,998	51,781	100,851	130,692 (302,122)	72,612 (154,856)	58,079 (147,265)
부산	77,897	13,360	14,258	16,333	33,946	49,213 (114,019)	26,715 (56,973)	22,498 (57,046)
대구	63,631	11,342	11,782	13,279	27,228	35,732 (82,406)	20,336 (43,369)	15,396 (39,037)
인천	65,579	11,040	11,984	13,857	28,697	34,606 (79,633)	20,135 (42,941)	14,471 (36,692)
광주	35,675	6,262	6,602	7,543	15,268	19,593 (45,249)	10,999 (23,456)	8,595 (21,793)
대전	29,791	5,206	5,436	6,247	12,903	17,576 (40,623)	9,783 (20,864)	7,793 (19,759)
경기	225,147	39,491	41,950	47,249	96,456	117,258 (269,776)	68,353 (145,773)	48,905 (124,003)
강원	31,573	5,366	5,730	6,585	13,892	20,176 (46,687)	11,094 (23,659)	9,082 (23,028)
충북	33,071	5,793	6,169	7,040	14,069	19,535 (45,202)	10,751 (22,929)	8,784 (22,273)
충남	39,251	6,400	7,038	8,197	17,616	27,269 (63,242)	14,647 (31,238)	12,622 (32,004)
전북	44,833	7,680	8,476	9,404	19,272	27,618 (63,990)	14,982 (31,952)	12,636 (32,038)
전남	43,751	7,429	7,994	9,121	19,207	29,274 (68,036)	15,367 (32,773)	13,907 (35,263)
경북	62,039	10,192	10,996	12,760	28,092	41,179 (95,185)	22,906 (48,850)	18,274 (46,335)
경남	97,608	16,970	18,130	20,783	41,725	53,063 (122,397)	30,150 (64,298)	22,913 (58,098)
제주	15,149	2,746	2,901	3,209	6,294	8,205 (18,995)	4,494 (9,584)	3,712 (9,411)

註: ( )는 취업모의 적극적 요구와 소극적 요구를 합한 요구율을 적용한 보육대상아동수임.

資料: 통계청, 『1995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97.

\_\_\_\_\_, 1996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表 V-3〉 市·道別 全體兒童 對比 保育施設 利用을 希望하는  
就業母의 兒童數

(단위: %)

지역	미취학아동					초등학교		
	전체 (0~5세)	영아			유아 (3~5세)	전체 (6~11세)	저학년 (6~8세)	고학년 (9~11세)
전국	28.1	30.5	30.5	34.1	24.3	17.5(40.5)	20.1(42.8)	15.1(38.3)
서울	29.5	32.8	32.4	35.9	25.0	17.4(40.2)	20.2(43.0)	14.9(37.7)
부산	26.1	28.2	28.2	31.7	22.8	16.6(38.3)	19.0(40.5)	14.4(36.4)
대구	29.9	32.4	32.4	36.2	26.0	18.3(42.1)	21.2(45.2)	15.5(39.2)
인천	30.8	28.3	28.5	32.1	23.0	16.6(38.1)	18.9(40.3)	14.1(35.8)
광주	29.9	31.4	32.0	36.2	26.3	18.5(42.6)	21.6(46.1)	15.6(39.5)
대전	24.7	26.0	26.5	30.1	21.8	16.0(36.9)	18.2(38.8)	13.8(35.1)
경기	26.6	29.3	29.1	32.3	22.9	16.8(38.7)	18.9(40.4)	14.5(36.8)
강원	28.4	29.8	30.5	34.6	25.1	17.9(41.4)	20.6(44.0)	15.4(39.4)
충북	28.3	30.7	30.7	34.4	24.5	17.5(40.6)	20.1(42.9)	15.2(38.4)
충남	30.6	31.7	32.5	37.2	27.4	20.5(47.6)	23.4(50.0)	17.9(45.5)
전북	31.3	33.4	33.9	38.3	27.2	18.8(43.7)	21.9(46.7)	16.2(41.2)
전남	28.8	30.6	31.0	35.0	25.4	18.8(43.6)	21.4(45.5)	16.5(41.5)
경북	29.7	30.8	31.2	35.7	26.8	20.4(47.2)	23.3(49.6)	17.7(44.9)
경남	26.2	28.6	28.6	31.9	22.6	16.0(36.9)	18.4(39.4)	13.7(34.7)
제주	32.3	34.1	34.4	39.2	28.4	21.0(48.6)	23.9(48.5)	18.3(46.4)

註: ( )는 취업모의 적극적 요구와 소극적 요구를 합한 경우임.

資料: 통계청, 『1995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97.

\_\_\_\_\_, 1996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表 V-4〉 推定方法別 比較(保健福祉部의 保育對象 定義)

방 법	취업모 아동중 공적인 보육서비스의 대상 아동수(명)	0~5세 전체아동 대비(%)
행동과학연구소 연구(0~5세)	1,165,859(1995년)	29.5
보건복지부 추계(0~5세 적생아)	1,031,000(1996년)	26.0
금진호의 연구(미취학 적생아수)	1,107,000(1996년)	28.0
본 연구(0~5세 적생아)	1,111,006(1996년)	28.1

[圖 V-1] 保育施設 利用을 希望하는 就業母의 兒童의 規模

1) 0~5歲 兒童數

아동전체수: 3,958,546명	취업모의 아동: 1,710,760명(43.2%)
	보육시설이용희망 1,111,006명(28.1%)

2) 6~11歲 兒童數

전체아동수: 3,598,335명	대리보육수요: 1,941,286명(53.9%)
	방과후 아동시설 이용가능성 있음: 1,457,562명(42.4%)
	방과후아동 교실이용희망 630,990명(17.5%)

초등학교 학생 연령군의 경우 적극적인 수요는 630,990명으로 양질의 프로그램이 제공될 경우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소극적 수요까지 고려하면 1,457,562명이다. 초등학생의 경우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취업모의 자녀로 保育施設 이용희망대상은 130,693명과 117,258명으로 전국의 1/3을 차지하고 있다. 대상아동중 미취학 아동의 경우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아동의 절대수가 많아지지만 초등학생의 경우는 적극적 수요 뿐만 아니라 소극적 수요 모두 저학년이 고학년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적극적 희망자만을 반영할 경우 전체 아동의 17.5%, 소극적 희망자까지 포함할 경우는 40.5%로 추정되었다. 이는 미취학 아동의 保育施設 이용희망자에 비하여 결코 적지 않은 규모로, 적극적 수요만을 파악할 경우도 초등학생의 17.5%가, 소극적 희망자까지 포함하면 40.5%라는 상당한 규모의 아동이 방과후 아동교실의 이용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방과후 아동교실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초등학생의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대전 및 경남으로 16%이며, 가장 비율이 높은 제주도의 21%에 비하여 5% 낮다. 소극적 희망까지 포함할 경우는 그 차이가 커서 12%에 달하고 있다. 소극적인 희망까지 포함한 경우 제주도가 48.6%로 가장 높고 대전이 36.9%로 가장 낮다. 이는 프로그램의 수준에 따라서 방과후 아동교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아동의 규모에 있어서 지역별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지역별로 방과후 아동교실의 프로그램의 개발이 이루어지면 수요자로 흡수할 수 있는 아동의 규모의 차이가 크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것이다.

#### 나. 低所得層 就業母의 子女중 保育施設 利用希望 兒童數

시·도별로 산출된 저소득층 취업모의 자녀수에 저소득층의 保育施設과 방과후 아동교실 이용희망률을 적용하여 산출된 保育施設의 이용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취업모의 아동은 미취학 아동의 경우 65,212명으로 추정되었다(表 V-5 참조). 또한, 초등학교 학생 연령군에서는 적극적인 수요는 124,998명이며, 양질의 프로그램이 제공될 경우 사용하기를 희망하는 소극적 수요까지 고려하면 290,083명이다.

이상과 같이 파악된 미취학 아동수의 분포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도가 가장 많아서 5만명을 넘고 있어 전국의 약 1/3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은 서울특별시로 2만 5천명이다. 즉, 가장 보육시설이용의 우선권이 주어져야 하는 아동의 46%가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 가장 규모가 적은 곳은 제주도로 2천 5백명 수준으로 서울특별시의 1/10 정도이다. 초등학생의 경우도 경기도가 약 3만명, 서울특별시가 2만 2천명으로 전국의 41%를 차지하고 있다.

〈表 V-5〉 市·道別 保育施設 利用을 希望하는 低所得層 就業母의 兒童數

(단위: 명)

지역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전체 (0~5세)	영아			유아 (3~5세)	전체 (6~11세)	저학년 (6~8세)	고학년 (9~11세)
전국	165,213	25,829	28,876	34,359	76,149	124,998 (290,083)	59,510 (137,053)	65,488 (153,030)
서울	25,372	3,874	4,328	5,238	11,932	21,979 (51,023)	9,966 (22,951)	12,013 (28,072)
부산	12,085	1,823	2,061	2,492	5,710	9,823 (22,798)	4,631 (10,665)	5,192 (12,133)
대구	8,932	1,390	1,513	1,805	4,224	7,304 (16,951)	3,507 (8,077)	3,797 (8,873)
인천	9,984	1,459	1,708	2,099	4,718	6,874 (15,946)	3,460 (7,969)	3,414 (7,977)
광주	4,570	743	822	974	2,032	3,137 (7,281)	1,483 (3,415)	1,654 (3,866)
대전	3,183	470	527	654	15,333	3,188 (7,403)	1,388 (3,196)	1,800 (4,207)
경기	51,104	8,506	9,326	10,751	2,252	29,884 (69,310)	15,497 (35,691)	14,387 (33,619)
강원	4,740	780	827	961	2,173	4,222 (9,802)	1,903 (4,382)	2,320 (5,420)
충북	5,760	850	985	1,218	2,708	4,650 (10,792)	2,177 (5,013)	2,473 (5,779)
충남	4,079	534	648	829	2,067	4,399 (10,215)	1,943 (4,474)	2,457 (5,741)
전북	4,989	766	887	1,027	2,308	5,034 (11,693)	2,096 (4,827)	2,939 (6,867)
전남	4,377	592	707	879	2,200	4,916 (11,419)	2,056 (4,734)	2,861 (6,685)
경북	8,443	1,264	1,429	1,724	4,026	7,047 (16,355)	3,358 (7,734)	3,689 (8,621)
경남	15,050	2,350	2,640	3,166	6,893	10,899 (25,291)	5,268 (12,133)	5,631 (13,158)
제주	2,544	429	470	542	1,103	1,639 (3,804)	778 (1,791)	861 (2,013)

註: ( )는 취업모의 적극적 요구와 소극적 요구를 합한 요구율을 적용한 보육대상아 동수임.

資料: 통계청, 『1995년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97.

\_\_\_\_\_, 1996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저소득층 취업모의 아동중 保育施設 利用을 희망하는 아동의 규모는 전체 0~5세 연령 아동의 4.2%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表 V-6참조). 이를 연령군별로 살펴보면 2세 미만 영아의 경우 4%, 2세 영아의 경우는 4.3%, 유아의 경우는 3.9%로 매우 적은 규모이다. 지역별로 보면 충남이 가장 그 비율이 낮아 2.6%이며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도로 6.3%이다. 경기도는 절대아동수 뿐만 아니라 전체아동대비 保育施設의 이용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취업모의 아동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表 V-6〉 市·道別 全體兒童 對比 保育施設 利用을 希望하는 低所得層 就業母의 兒童數

(단위: %)

지역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전체 (0~5세)	0세	영아 1세	2세	유아 (3~5세)	전체 (6~11세)	저학년 (6~8세)	고학년 (9~11세)
전국	4.2	4.0	4.3	5.0	3.9	3.5(8.1)	3.4(7.8)	3.6( 8.3)
서울	3.0	2.7	3.0	3.6	3.0	2.9(6.8)	2.8(6.4)	3.1( 7.2)
부산	4.1	3.9	4.1	4.7	3.8	3.3(7.7)	3.3(7.6)	3.3( 7.7)
대구	4.2	4.0	4.2	4.9	4.0	3.7(8.7)	3.7(8.4)	3.8( 8.9)
인천	4.0	3.7	4.1	4.9	3.8	3.3(7.6)	3.2(7.5)	3.3( 7.8)
광주	3.8	3.7	4.0	4.7	3.5	3.0(6.9)	2.9(6.7)	3.0( 7.0)
대전	2.6	2.3	2.6	3.2	26.0	2.9(6.7)	2.6(5.9)	3.2( 7.5)
경기	6.0	6.3	6.5	7.4	5.3	4.3(9.9)	4.3(9.9)	4.3(10.0)
강원	4.3	4.3	4.4	5.1	3.9	3.7(8.7)	3.5(8.1)	3.9( 9.2)
충북	4.9	4.5	4.9	5.9	4.7	4.2(9.7)	4.1(9.4)	4.3(10.0)
충남	3.2	2.6	3.0	3.8	3.2	3.3(7.7)	3.1(7.1)	3.5( 8.2)
전북	3.5	3.3	3.6	4.2	3.3	3.4(8.0)	3.1(7.1)	3.8( 8.8)
전남	2.9	2.4	2.7	3.4	2.9	3.2(7.3)	2.9(2.9)	3.4( 8.0)
경북	4.0	3.8	4.1	4.8	3.8	3.5(8.1)	3.4(7.9)	3.6( 8.3)
경남	4.0	4.0	4.2	4.9	3.7	3.3(7.6)	3.2(7.4)	3.4( 7.9)
제주	5.4	5.3	5.6	6.6	5.0	4.2(9.7)	4.1(9.5)	4.2( 9.9)

註: ( )는 취업모의 적극적 요구와 소극적 요구를 합한 요구율을 적용한 보육대상아동 비율임.

資料: 통계청, 『1995년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97.

\_\_\_\_\_, 1996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圖 V-2] 保育施設 利用을 希望하는 低所得層 就業母의 兒童의 規模

1) 0~5歲 兒童數

아동전체수: 3,958,546명	
	저소득층 취업모의 아동 293,939명(7.4%)
	보육시설 이용희망 165,212(4.2%)

2) 6~11歲 兒童數

아동전체수: 3,598,335명	
	저소득층 취업모의 아동: 405377명(11.3%)
	방과후 아동시설 이용가능성 있음. 290,083명(8.1%)
	방과후 아동교실 이용희망 165,212명 (4.2%)

초등학생의 경우는 적극적 희망자만을 반영할 경우 전체 아동의 2.9%, 소극적 희망자까지 포함할 경우는 6.8%로 추정되었고, 고학년이 저학년에 비하여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방과후 아동교실의 이용을 적극적으로 희망하는 초등학생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대전으로 4.3%, 가장 낮은 지역은 광주로 2.9%이다.

다. 既婚女性의 潛在的 就業을 반영한 保育施設 利用希望 兒童數

대리양육자를 확보할 수 없어서 취업을 포기하는 기혼여성의 취업을 유도하고자 한다면 기혼여성의 잠재취업요구를 고려하여 보육대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혼취업여성 아동으로 保育施設利用

을 희망한 가정의 아동수(表 V-2 참조)에 자녀양육문제로 취업을 하고 있지 못한 기혼여성중 保育施設의 이용을 희망한 가정의 아동수(附表 V-2 참조)를 합하여 산출되었다(表 V-7 참조). 자녀양육문제로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기혼여성중 保育施設의 利用을 희망하는 아동수는 다음과 같이 산출되었다. 먼저 연령군별 기혼여성중 자녀양육문제로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비율(附表 V-1 참조)을 여성의 연령군별 아동수에 곱하여 자녀양육문제로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기혼여성의 자녀수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는 이에 기혼여성중 자녀양육문제로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기혼여성의 保育施設 利用希望率을 곱하여 산출하였다.

잠재적인 취업까지 고려한 保育施設의 利用을 희망하는 0~5세 아동수는 2,097,881명으로 전체의 53%이며, 이는 현재 취업모의 자녀로 保育施設의 이용을 희망하는 아동 1,111,006명 보다는 986,875명이 많은 것으로 약 2배 정도의 규모이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도가 절대 아동수가 가장 적어 26,926명이지만, 0~5세 연령군의 전체아동대비 비율은 가장 높아 57.5%이다. 0~5세 연령군 전체에 대한 비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부산으로 45.8%로 약 12%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表 V-8 참조). 초등학생 연령군의 경우는 적극적인 방과후 아동교실 사용희망율만을 고려한 경우는 968,673명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취업모의 자녀로 방과후 아동교실의 이용을 희망하는 아동 630,990명보다 337,683명이 많은 것으로 약 1.5배의 규모이다. 소극적 희망율까지 포함하여 파악하면 2,326,202명으로 추정된다. 이는 취업모의 자녀로 방과후 아동교실의 이용을 희망하는 아동 1,457,562명보다 868,640명이 많은 것으로 약 1.6배의 규모이다. 지역별로 보면 적극적 및 소극적 희망율의 경우 모든 연령군에서 해당 연령군 전체아동 대비 비율이 제주도가 가장 높고 대전시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다.



〈表 V-7〉 市·道別 既婚女性の 潜在的 就業을 考慮한 保育施設 利用希望 兒童數

(단위: 명)

지역	미취학아동					초등학교		
	전체 (0~5세)	영아 0세	1세	2세	유아 (3~5세)	전체 (6~11세)	저학년 (6~8세)	고학년 (9~11세)
전국	2097,881	396,003	426,277	435,107	840,494	968,673 (2,326,202)	542,507 (1,245,391)	426,166 (1,080,811)
서울	455,435	90,364	97,319	97,138	174,213	197,712 (474,497)	109,717 (251,328)	87,996 (223,169)
부산	136,523	28,106	30,591	16,333	61,493	76,785 (184,914)	41,697 (95,925)	35,088 (88,989)
대구	117,902	22,343	23,677	25036	46,847	54,171 (129,839)	30,701 (70,317)	23,470 (59,522)
인천	128,958	23,254	25,683	27689	52,332	54,965 (132,026)	31,881 (73,479)	23,085 (58,547)
광주	66,122	12,481	13,307	14205	26,129	29,457 (70,615)	16,449 (37,627)	13,007 (32,988)
대전	60,207	11,445	12,092	12816	23,854	27,770 (66,845)	15,485 (35,688)	12,285 (31,156)
경기	440,024	81,565	88,804	93914	175,741	184,550 (442,979)	107,717 (248,119)	76,833 (194,860)
강원	59,465	10,929	11,765	12594	24,177	30,878 (74,206)	16,915 (38,793)	13,964 (35,413)
충북	62,927	11,675	12,704	13612	24,936	30,134 (72,459)	16,566 (38,047)	13,569 (34,412)
충남	71,516	12,643	14,027	15207	29,639	39,712 (95,236)	21,395 (48,783)	18,317 (46,452)
전북	81,135	14,801	16,547	17233	32,555	41,338 (99,263)	22,364 (51,144)	18,974 (48,119)
전남	82,345	14,971	16,347	17491	33,536	44,111 (106,176)	23,285 (53,361)	20,825 (52,815)
경북	115,180	20,565	22,507	24262	47,846	60,263 (144,273)	33608 (76,676)	26,654 (67,597)
경남	193,215	35,640	38,913	41817	76,844	85,057 (204,708)	48,273 (111,417)	36,784 (93,291)
제주	26,926	5,220	5,594	5760	10,351	11,772 (28,166)	6,456 (14,685)	5,316 (13,481)

註: ( )는 취업모의 적극적 요구와 소극적 요구를 합한 요구율을 적용한 보육대상아 동수임.

資料: 통계청, 『1995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97.

\_\_\_\_\_, 1996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表 V-8〉 市·道別 全體兒童 對比 既婚女性の 潛在的 就業을  
考慮하여 算出된 保育施設 利用希望 兒童數

(단위: %)

구분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전체 (0~5세)	영아			유아 (3~5세)	전체 (6~11세)	저학년 (6~8세)	고학년 (9~11세)
		0세	1세	2세				
전국	53.0	61.7	62.9	63.5	43.0	26.9(64.6)	30.8(70.7)	23.2(58.8)
서울	54.6	63.9	64.6	67.3	43.3	26.3(63.2)	30.5(69.8)	22.5(57.1)
부산	45.8	59.4	60.6	31.7	41.4	25.8(62.2)	29.6(68.2)	22.4(56.8)
대구	55.4	63.8	65.0	68.2	44.7	27.7(66.4)	32.0(73.2)	23.6(59.8)
인천	51.8	59.6	61.2	64.1	41.9	26.3(63.2)	30.0(69.0)	22.5(57.2)
광주	55.4	62.3	64.5	68.2	45.1	27.7(66.5)	32.3(73.9)	23.6(59.7)
대전	50.0	57.1	58.8	61.7	40.3	25.2(60.7)	28.8(66.3)	21.8(55.3)
경기	52.0	60.6	61.7	64.3	41.7	26.5(63.5)	29.8(68.8)	22.8(57.9)
강원	53.4	60.7	62.6	66.2	43.6	27.4(65.8)	31.5(72.1)	23.7(60.1)
충북	53.8	61.9	63.3	66.4	43.4	27.1(65.1)	31.0(71.2)	23.4(59.4)
충남	55.8	62.7	64.8	79.3	46.1	29.9(71.6)	34.2(77.9)	26.0(66.0)
전북	56.6	64.4	66.3	70.2	45.9	28.2(67.7)	32.7(74.8)	24.3(61.5)
전남	54.3	61.6	63.5	67.1	44.3	28.3(68.1)	32.4(74.2)	24.8(62.8)
경북	55.2	62.6	63.9	67.8	45.7	29.9(71.5)	34.2(77.9)	25.8(65.4)
경남	51.9	60.1	61.4	64.2	41.6	25.7(61.8)	29.4(67.9)	22.0(55.7)
제주	57.5	64.8	66.4	70.4	46.6	30.1(72.1)	34.4(78.2)	26.2(66.5)

註: ( )는 취업모의 적극적 이용희망률과 소극적 이용희망률을 합한 이용희망률을 적용한 보육대상아동의 비율임.

資料: 통계청, 『1995년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97.

\_\_\_\_\_, 1996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 VI. 地域別 保育서비스 供給現況

### 1. 地域別 保育施設 現況

#### 가. 地域別 保育施設 類型別 分布

嬰幼兒保育法上 保育施設에는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 (위탁운영 포함)하는 국공립보육시설, (2)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시설로서 직장보육시설 또는 가정보육시설이 아닌 시설인 민간보육시설, (3)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가 사업장의 근로자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직장보육시설, (4) 개인이 가정 또는 그에 준하는 곳에서 설치·운영하는 가정보육시설이 있다.

〈表 VI-1〉 市·道別 保育施設の 種類

종류	국·공립 보육시설	민간 보육시설	직장 보육시설	가정 보육시설
명칭	어린이집	어린이집	어린이집	놀이방
설립 및 운영주체	국가, 지방단체	법인, 단체, 개인	사업주	개인
설립방법	서류결재	시·군·구청장 의 인가	시·군·구청장의 인가	신고
규모	11인 이상	21인 이상	11인 이상	5~20인
배치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육시설이 부족한 취약지역에 우선배치</li> <li>• 지역별 균형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별 보육수요를 감안한 지역별 균형배치</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상시 여성 3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에 조속한 시설 설치가 이루어지도록 시·도지사의 강력한 지도</li> </ul>	-

資料: 보건복지부, 『1997년도 보육사업지침』, 1996.

保育施設の 현황을 살펴보면 <表 VI-2>와 같다. 전국적으로 보육시설이 총 12,098개 있으며, 그 중 民間保育施設이 6,037개소로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정보육시설이 40%에 해당하는 4,865개소, 국·공립 보육시설이 9%인 1,079개이며 직장보육시설은 117개로 1%에 불과하다. 즉 보육시설의 민간의존도가 높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민간보육시설의 경우는 그 비중이 제주지역에서 가장 높아 총 보육시설의 74%가 民間保育施設이며, 충남, 대구, 경남, 부산 지역에서 민간보육시설의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表 VI-2> 市·道別 保育施設の 種別 分布(1996年)

(단위: 개소, %)

지역	계	국·공립	민 간				직장	가정
			소계	개인	단체	법인		
전국	12,098(100.0)	1,079(8.9)	6,037(49.9)	4,688(38.8)	69(0.6)	1,280(10.6)	117(0.9)	4,865(40.2)
서울	2,870(100.0)	427(15.7)	1,069(33.9)	954(29.8)	29(1.0)	86( 3.1)	48(1.8)	1,326(48.6)
부산	920(100.0)	73( 8.4)	518(57.1)	421(46.3)	9(1.0)	88( 9.7)	7(0.9)	322(33.6)
대구	640(100.0)	22( 3.8)	397(61.2)	295(45.2)	4(0.3)	98(15.7)	8(1.2)	213(33.7)
인천	684(100.0)	30( 4.5)	380(54.4)	351(50.7)	5(0.8)	24( 3.0)	7(1.1)	267(40.0)
광주	351(100.0)	19( 5.6)	150(40.2)	78(20.2)	0(0.0)	72(19.9)	4(0.9)	178(53.4)
대전	438(100.0)	17( 3.8)	149(32.6)	114(24.6)	1(0.2)	34( 7.7)	9(2.1)	263(61.5)
경기	2,676(100.0)	141( 5.4)	1,292(47.0)	1,176(42.7)	13(0.5)	103( 3.8)	12(0.5)	1,231(47.1)
강원	373(100.0)	53(14.6)	213(56.6)	104(27.5)	1(0.3)	108(28.9)	1(0.3)	106(28.6)
충북	409(100.0)	34( 8.7)	247(57.8)	161(37.2)	1(2.0)	85(18.6)	3(0.8)	125(32.9)
충남	391(100.0)	29( 7.9)	265(68.5)	148(38.9)	0(0.0)	117(29.6)	3(0.8)	94(22.8)
전북	383(100.0)	30( 8.5)	205(53.5)	76(18.1)	0(0.0)	129(35.4)	2(0.6)	146(37.4)
전남	340(100.0)	38(11.3)	200(57.1)	62(17.0)	0(0.0)	138(40.2)	1(0.0)	101(31.5)
경북	445(100.0)	65(15.9)	229(50.7)	168(36.8)	5(1.0)	56(12.9)	5(1.2)	146(32.2)
경남	989(100.0)	93(10.1)	583(58.4)	501(50.3)	1(0.1)	81( 8.0)	4(0.4)	309(31.0)
제주	189(100.0)	8( 4.4)	140(74.2)	79(41.8)	0(0.0)	61(32.4)	3(1.6)	38(19.8)

資料: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1996. 4.

반면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는 경북과 서울 지역이 가장 비중이 높아 약 16%이며, 강원, 전남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다. 즉 이들 지역에 상대적으로 공공보육의 비중이 높다. 또한

가정보육의 비중은 대전지방이 가장 높아 총보육시설의 61.5%에 달하고 있다.

한편 정부차원의 적극적 개입에 의하여 설치가 확대되어가고 있는 직장보육시설과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 수도권 편중현상이 심각하다. 직장보육시설이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어, 직장보육시설의 51.3%인 60개소가 서울과 경기지방에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시설의 편중현상은 1,079개소의 52.7%에 달하는 568개소가 수도권에 설치되어 있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지역별로 보육시설별 보호중인 아동의 현황을 살펴보면 전국적으로 403,001명의 아동이 보육되고 있으며, 이중 63.5%가 민간보육시설에서, 21%가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다(表 VI-3 참조).

〈表 VI-3〉 市·道別 保育施設の 種類別 保護兒童의 分布(1996年)  
(단위: 개소, %)

지역	계	국·공립	민 간				직장	가정
			소계	개인	단체	법인		
전 국	403,001(100.0)	85,121(21.1)	255,844(63.5)	153,990(38.2)	2,735(0.7)	99,119(24.6)	3,596(0.9)	58,440(14.5)
서울	95,143(100.0)	39,079(43.5)	38,201(36.9)	31,708(30.0)	850(0.9)	5,643(6.0)	1,168(1.3)	16,695(18.4)
부산	30,842(100.0)	6,443(23.3)	20,858(65.8)	13,302(41.0)	549(0.9)	7,007(23.8)	115(0.4)	3,426(10.6)
대구	20,202(100.0)	1,532( 8.3)	16,169(78.9)	7,492(35.2)	173(0.5)	8,504(43.1)	178(0.9)	2,323(11.9)
인천	18,870(100.0)	2,651(14.8)	12,753(66.1)	10,631(55.9)	180(0.9)	1,942(9.3)	266(1.4)	3,200(17.7)
광주	16,154(100.0)	2,026(11.8)	11,672(73.6)	4,806(25.3)	- (0.0)	6,866(48.3)	123(0.7)	2,333(14.0)
대전	9,288(100.0)	831( 9.2)	5,128(56.4)	2,496(27.7)	21(0.1)	2,611(28.6)	381(4.2)	2,948(30.2)
경기	68,755(100.0)	9,608(14.5)	44,100(62.9)	36,751(52.2)	667(1.0)	6,682(9.7)	489(0.7)	14,558(21.9)
강원	14,446(100.0)	3,495(24.1)	9,757(68.3)	2,493(20.6)	77(0.5)	7,187(47.1)	17(0.1)	1,177(7.5)
충북	17,982(100.0)	2,574(14.8)	13,613(74.7)	7,245(37.9)	13(1.9)	6,355(34.8)	209(1.2)	1,586(9.3)
충남	16,340(100.0)	1,857(12.1)	13,197(80.3)	4,603(27.6)	- (0.0)	8,594(52.7)	89(0.6)	1,197(7.0)
전북	17,994(100.0)	2,063(12.2)	14,074(77.7)	4,374(21.8)	- (0.0)	9,700(56.0)	51(0.3)	1,806(9.7)
전남	19,494(100.0)	2,409(12.6)	16,008(81.6)	3,679(18.2)	- (0.0)	12,329(63.4)	36(0.0)	1,041(5.8)
경북	17,321(100.0)	3,842(23.4)	11,365(64.7)	6,213(33.8)	188(1.0)	4,964(29.9)	205(1.2)	1,909(10.7)
경남	30,942(100.0)	6,251(21.3)	20,971(66.8)	15,620(50.6)	17(0.1)	5,334(16.2)	101(0.3)	3,619(11.6)
제주	9,228(100.0)	460( 5.2)	7,978(86.3)	2,577(28.1)	- (0.0)	5,401(58.2)	168(1.9)	622(6.6)

資料: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1996. 4.

특히 保育施設의 9%에 불과한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아동의 21%가 보호되고 있어서 국·공립 보육시설이 다른 종류의 보육시설에 비하여 그 규모가 크을 볼 수 있다. 반면 보육시설의 40%를 차지하는 가정보육시설에서는 14.5%의 아동이 보호되고 있다. 또한 <表 VI-4>는 국·공립 보육시설과 법인보육시설에 시설당 보호아동수가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表 VI-4> 施設種類別 施設當 平均保育兒童數(1996年)

(단위: 명)

	계	국·공립	민 간			직장	가정	
			소계	개인	단체			법인
전 국	33.7	79.5	43.3	32.9	36.8	80.2	30.4	12.0

資料: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1996. 4.

시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시설중 민간보육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보육아동의 비율이 제일 높다. 특히 인천, 경기, 경남의 경우 보육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중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에서 보육되고 있는 아동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특별시는 국·공립 보육시설에서 보육되고 있는 아동의 비율이 43.5%로 전국평균인 21%의 두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대전에서는 가정보육아동의 비율이 높아 30%이며 이는 전국평균인 14.5%의 두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방과후 보육, 장애아·영아 전담보육 등 특수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어 가고 있으나, 아직 그 수준이 낮다(表 VI-5 참조). 즉, 전담 보육시설의 수가 일반보육시설에 비하여 매우 적으며 지역별 편차가 더욱 크다. 장애아 전담시설은 전국적으로 21개소로 그 중 8개소가 서울에 설치되어 있다. 대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제주 등 1개 대도시와 7개 도에는 장애아 전담시설이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은 형편이다. 영아전담시설의 경우도 사정은 마찬가지로 서울에 1개소, 경기도, 경상남도, 제주도에 각각 2개소가 설치되어 전국에 7개소만이 설치되어 있다. 한편 24시간 保育施設은 서울에 4개소가 경기도에 1개소가 설치되어 있어 전국적으로 5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전혀 없다.

〈表 VI-5〉 市·道別 全擔施設 設置現況(1996年)

(단위: 개소, %)

지역	일반 보육시설 <sup>1)</sup>	장애아 전담시설 <sup>2)</sup>	영아 전담시설 <sup>2)</sup>	24시간 보육시설 <sup>2)</sup>	방과후 보육시설 <sup>1)</sup>
전국	12,098(100.0)	21(100.0)	7(100.0)	5(100.0)	48(100.0)
서울	2,870( 23.7)	8( 38.1)	1( 14.3)	4( 80.0)	14( 29.2)
부산	920( 7.6)	2( 9.5)	0( 0.0)	0( 0.0)	4( 8.3)
대구	640( 5.3)	4( 19.0)	0( 0.0)	0( 0.0)	4( 8.3)
인천	684( 5.7)	1( 4.8)	0( 0.0)	0( 0.0)	1( 2.1)
광주	351( 2.9)	1( 4.8)	0( 0.0)	0( 0.0)	1( 2.1)
대전	438( 3.6)	0( 0.0)	0( 0.0)	0( 0.0)	0( 0.0)
경기	2,676( 22.1)	3( 14.3)	2( 28.6)	1( 20.0)	10( 20.8)
강원	373( 3.1)	0( 0.0)	0( 0.0)	0( 0.0)	0( 0.0)
충북	409( 3.4)	0( 0.0)	0( 0.0)	0( 0.0)	0( 0.0)
충남	391( 3.2)	0( 0.0)	0( 0.0)	0( 0.0)	0( 0.0)
전북	383( 3.2)	0( 0.0)	0( 0.0)	0( 0.0)	6( 12.5)
전남	340( 2.8)	0( 0.0)	0( 0.0)	0( 0.0)	0( 0.0)
경북	445( 3.7)	0( 0.0)	0( 0.0)	0( 0.0)	1( 2.1)
경남	989( 8.2)	2( 9.5)	2( 28.6)	0( 0.0)	5( 10.4)
제주	189( 1.6)	0( 0.0)	2( 28.6)	0( 0.0)	2( 4.2)

註: 1) 1996년 12월 현재 자료임.

2) 1997년 4월 현재 자료임.

資料: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1996. 4.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중앙보육정보센터, 내부자료, 1997. 4.

한편, 1996년도 1월부터 保育施設의 입소대상 연령이 12세까지로

연장됨에 따라서 초등학교 저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한 방과후 보육이 실시되고 있다. 현재 방과후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기관은 48개소에 불과하며 전체 기관의 절반이 서울과 경기도에 있다. 전북지역에 6개소, 경남지역에 5개소, 부산에 4개소가 있을 뿐 대부분 1개소가 있거나 아니면 전무한 실정이다.

이상의 保育機關 및 보육아동의 분포를 통해서 나타난 지역별 특성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개인이 운영하는 民間保育施設과 家庭保育施設이 80%를 차지하고 있어 영리추구에 주 목적이 있는 민간부문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둘째, 국·공립 보육시설과 직장 보육시설이 首都圈에 편중되어 있다. 셋째, 지역별로 일반보육시설의 구성이 상이하다. 대전지방의 경우 가정보육의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하여 월등히 높은 반면 제주도의 경우는 민간보육시설의 비중이 높다. 그러나 인천, 경기, 경남지역은 가장 영리적인 목적을 갖고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의 비중이 크다. 넷째, 전담시설의 절대시설수가 적다. 장애아전담시설은 21개소, 영아전담시설은 7개소, 24시간 保育施設은 5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한편 방과후 보육시설의 경우 48개소가 있다. 다섯째, 전담시설의 경우는 일반보육시설에 비하여 지역별 편차가 더욱 크다. 즉 장애아 전담시설의 경우는 서울지역이, 영아전담시설의 경우는 경기도, 경상남도, 제주도에, 24시간 시간제 보육시설은 서울, 경기, 방과후 보육시설은 서울과 경기도 지역에 집중적으로 설치·운영되고 있다.

#### 나. 類型別 保育施設 現況

##### 1) 國·公立保育施設

정부는 국고보조가 되는 공공보육시설을 확대하기 위해 재정적 지원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의 증가율은 전체 保育施



設 증가율에 못미치고 있다. 1993년부터 1996년까지 국·공립보육시설은 837개소에서 1,079개소로 증가하여 1.3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체 保育施設의 증가율인 2.2배에 못미치는 것이다. 제주도, 인천시, 충청남도, 경기도의 국·공립보육시설의 증가율이 전국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반면 부산, 대구, 충청북도의 국·공립 보육시설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民間保育施設

정부의 보육시설 확충계획은 민간보육시설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1993년의 2,419개소에서 1996년 6,037개소로 2.5배 증가하였다. 정부는 민간보육시설의 확대를 위하여 보육료를 현실화하여 민간의 투자와 참여를 유도하며, 중·소규모 시설은 건축법령상 근린생활시설, 종교시설, 교육연구시설 등 타용도 건물에도 시설 및 종사자의 기준만 갖추면 설치를 허용하는 등 민간보육시설의 확충을 유도하고 있다.

전체 保育施設의 증가는 상당부분이 민간보육시설의 증가율에 기인하고 있으며(表 VI-6 참조), 특히 서울, 인천, 경기등 수도권에서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이윤추구의 경향이 강한 개인이 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서울, 인천, 광주, 충남, 전남, 전북, 경남, 제주도에에서의 증가율이 전국평균보다 높은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보육시설의 경우는 중산층이 대중을 이루는 일반지역에 편중되어 있는 경향이 있고(지역사회탁아소협의회, 1993), 대규모로 운영하는 保育施設이 많으며, 정부지원이 없는 민간보육시설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표준보육단가보다 높은 보육료를 받고 운영하거나 보육서비스 수준을 낮추어 영리사업으로 운영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이석무, 1994).

〈表 VI-6〉 市·道別 保育施設の 種別 變化推移

(단위: 개소)

지역	계		국·공립		민 간								직장		가정	
					계		개인		단체		법인					
	'93	'96	'93	'96	'93	'96	'93	'96	'93	'96	'93	'96	'93	'96	'93	'96
전국	5,490	12,098	837	1,079	2,419	6,037	1,776	4,688	19	69	624	1,280	29	117	2,205	4,865
서울	1,510	2,870	360	427	344	1,069	287	954	2	29	55	86	5	48	801	1,326
부산	562	920	72	73	348	518	309	421	4	9	35	88	4	7	138	322
대구	306	640	22	22	171	397	120	295	1	4	50	98	2	8	111	213
인천	246	684	12	30	127	380	108	351	2	5	17	24	3	7	105	267
광주	166	351	12	19	57	150	21	78	3	-	33	72	1	4	96	178
대전	221	438	10	17	93	149	74	114	0	1	19	34	1	9	117	263
경기	929	2,676	76	141	460	1,292	419	1,176	2	13	39	103	4	12	389	1,231
강원	183	373	40	53	112	213	55	104	5	1	52	108	0	1	30	106
충북	182	409	33	34	102	247	61	161	0	1	41	85	0	3	47	125
충남	141	391	14	29	90	265	39	148	0	-	51	117	1	3	36	94
전북	167	383	24	30	89	205	18	76	0	-	71	129	1	2	53	146
전남	153	340	27	38	87	200	15	62	0	-	72	138	0	1	39	101
경북	226	445	55	65	98	229	65	168	0	5	33	56	4	5	69	146
경남	426	989	77	93	196	583	164	501	0	1	32	81	2	4	151	309
제주	72	189	3	8	45	140	21	79	0	-	24	61	1	3	23	38

資料: 보건복지부, 『보건사회백서』, 1993.

\_\_\_\_\_, 내부자료, 1997. 4.

## 3) 家庭保育施設

1996년 12월 현재 4,865개소의 가정보육시설(놀이방)이 있으며 평균 12명의 아동을 보육하고 있다(表 VI-4 참조). 1993년도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가정보육시설은 월 평균 약9만원의 재정수지 흑자를 기록하면서 운영되고 있다고 한다. 가정보육은 대체로 보육교사의 집에서 소규모로 운영하므로 규모의 효율성에 따른 비용절감효과가 크다고 하겠다. 또한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아동을 일반가정의 포근한 분위기에서 보육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가정보육시설은 1993년부터 1996년 사이에 2.2배 증가하였으며, 특히 경기도와 강원도의 증가율이 높다.

#### 4) 職場保育施設

직장보육시설은 1996년 12월 현재 117개로 1993년의 29개에 비하여 4배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으나 순수 사업장에 설치되어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50%에 못미치고 있다(양승주, 1996).

또한 1996년도 상반기 현재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의무사업장 329개사 중 5.4%만이 保育施設을 설치하고 있다. 또한 보육수당을 지불하고 있는 업체는 13개소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대전에서의 증가율이 가장 높아 각각 9.6배, 9배로 1996년도 현재 48개소와 9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조사된 115개의 직장보육시설중 의무적으로 保育施設을 설치한 경우는 23.5%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직장보육시설은 직장의 필요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설치되었음을 볼 수 있다(表 VI-7 참조). 특히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保育施設의 경우 36개소 모두가 자율설치이며 대부분이 초등학교로써 이는 높은 여교사의 비중으로 인한 수요에 응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되며, 그 중 2/3가 서울지역에 설치되어 있다.

또한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서울을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경상남도과 제주도에만 있을 뿐 나머지 10개 시·도에는 전혀없는 실정이다.

또한 병원의 경우도 상당수가 자율설치인데 이 곳 역시 여성고용인의 비율이 높고 保育施設을 설치할 수 있는 여건이 이루어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있는 직장보육시설 역시 대부분이 자율적으로 설치되어 있다.

〈表 VI-7〉 市·道別 職場保育施設 現況(1997年)

(단위: 개소)

지역	직장보육 시설수	설치유형		직장의 종류			
		의무설치	자율설치	병원	학교	공공기관	일반회사
전국	115	27	88 <sup>1)</sup>	11(8)	36(0)	28(5)	37(13)
서울	49	9	40	5(4)	24(0)	10(1)	10( 4)
부산	7	1	6	1(1)	3(0)	1(0)	2( 0)
대구	9	2	7	2(1)	4(0)	2(1)	1( 0)
인천	1	1	0	0(0)	0(0)	1(1)	0( 0)
광주	4	1	3	0(0)	0(0)	2(1)	2( 0)
대전	8	4	4	2(2)	0(0)	4(1)	2( 1)
경기	13	3	10	0(0)	0(0)	3(0)	10( 3)
강원	1	1	0	0(0)	0(0)	0(0)	1( 1)
충북	2	0	2	0(0)	0(0)	1(0)	1( 0)
충남	3	0	3	0(0)	0(0)	1(0)	2( 0)
전북	2	1	1	1(0)	0(0)	1(0)	0( 0)
전남	2	1	1	0(0)	0(0)	0(0)	2( 1)
경북	4	3	1	0(0)	0(0)	0(0)	4( 3)
경남	4	0	4	0(0)	3(0)	1(0)	0( 0)
제주	3	0	3	0(0)	2(0)	1(0)	0( 0)
미상	3	0	3	0(0)	0(0)	3(0)	0( 0)

註: 1) ( )은 의무설치 직장보육시설수임. 그중 지역이 불분명한 직장보육 시설이 3곳(한국다반, 신도실업, 원풍물산) 있음.

資料: 한국보육시설연합회, 중앙보육정보센터, 내부자료, 1997. 4.

반면 일반직장에 설치되어 있는 직장보육시설은 1/3가 의무설치로 일반직장에서는 고용인의 요구에 상응하여 자발적으로 설치되는 직장보육시설이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최근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의하면 11.1%만이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전기운수건설업이 가장 설치율이 높아 18.2%이며, 그 다음은 제조업으로 13.5%이며, 도소매업은 6.3%, 금융 및 서비스업이 5.9%이다.

## 2. 放課後 保育關聯 施設資源 現況

현재 방과후 아동보육은 실시 초기단계이며, 따라서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방과후 보육서비스의 공급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보육사업지침은 우선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방과후 보육사업을 실시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관에서도 다수가<sup>21)</sup> 저소득층 위주의 방과후 아동보육 프로그램을 실시중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방과후 보육의 확대를 위해 활용가능한 시설인 국·공립보육시설, 사회복지관의 수가 충분한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과후 보육사업의 대상 아동을 위한 아동교실로 활용이 가능한 시설로는 영유아보육시설과 복지관 및 학교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이 있다. 보육시설수는 전국 12,098개소로 이중 방과후 아동교실 실시가 가장 손쉬운 국·공립보육시설은 총 보육시설의 8.9%에 해당하는 1,079개소이며 이 비율은 지역별로 차이가 크다(表 VI-2 참조). 전체 6~11세 연령군의 20.7%인 1,941,286명만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데 비하여 볼 때, 방과후 아동교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는 국·공립보육시설의 39.6%, 방과후 보육시설의 29.2%, 사회복지관의 26.4%가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 서울집중 현상이 뚜렷하다(表 VI-8 참조).

또한 초등학생을 방과후 보육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는 공공기관에는 초등학교, 종교시설, 학원 등이 있는데 이들 기관의 지역적 분포를 살펴본 <表 VI-9>에 의하면 초등학교수는 5,721개소이며 학급수는 107,860개이다. 또한, 종교시설이 전국적으로 5만 4천 600여개가 있으며 이중 14%는 경기지역에, 13.9%는 서울에 위치해 있다. 사설학원의 경우는 전국에 58,134개소가 있고 22.8%에 해당하는 13,267개소가 서울에

21) 방과후 아동보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사회복지관수가 공식적으로 발표된 적은 없지만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실무자에 의하면 170~180개의 사회복지관이 방과후 아동보육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한다.

위치해 있고 초등학생 수강자의 14.6%가 서울지역 초등학생이다.

〈表 VI-8〉 市·道別 各種 公共施設 現況(1997年)

(단위: 명, 개소)

지역	초등 학생수	취업모의 초등 학생수	저소득층 취업모의 초등학생수	보육 시설수	국·공립 시설수	방과후 보육시설	사회 복지관수
전국	3,598,335 (100.0)	1,941,286 (100.0)	405,377 (100.0)	12,098 (100.0)	1,079 (100.0)	48 (100.0)	292 (100.0)
서울	750,658 ( 20.9)	402,762 ( 20.7)	71,481 ( 17.6)	2,870 ( 23.7)	427 ( 39.6)	14 ( 29.2)	77 ( 26.4)
부산	297,337 ( 8.3)	152,413 ( 7.9)	31,876 ( 7.9)	920 ( 7.6)	73 ( 6.8)	4 ( 8.3)	41 ( 14.0)
대구	195,658 ( 5.4)	109,539 ( 5.6)	23,677 ( 5.8)	640 ( 5.3)	22 ( 2.0)	4 ( 8.3)	20 ( 6.8)
인천	208,883 ( 5.8)	105,564 ( 5.4)	22,216 ( 5.5)	684 ( 5.7)	30 ( 2.8)	1 ( 2.1)	10 ( 3.4)
광주	106,158 ( 3.1)	60,248 ( 3.1)	10,179 ( 2.5)	351 ( 2.9)	19 ( 1.8)	1 ( 2.1)	16 ( 5.5)
대전	110,142 ( 3.1)	54,142 ( 2.8)	10,392 ( 2.6)	438 ( 3.6)	17 ( 1.6)	0 ( 0.0)	15 ( 5.1)
경기	697,698 ( 19.4)	357,535 ( 18.4)	96,401 ( 23.8)	2,676 ( 22.1)	141 ( 13.1)	10 ( 20.8)	29 ( 9.9)
강원	112,754 ( 3.1)	62,315 ( 3.2)	13,737 ( 3.4)	373 ( 3.1)	53 ( 4.9)	0 ( 0.0)	10 ( 3.4)
충북	111,344 ( 3.1)	60,327 ( 3.1)	15,094 ( 3.7)	409 ( 3.4)	34 ( 3.2)	0 ( 0.0)	8 ( 2.7)
충남	132,998 ( 3.7)	84,640 ( 4.4)	14,329 ( 3.5)	391 ( 3.2)	29 ( 2.7)	0 ( 0.0)	10 ( 3.4)
전북	146,562 ( 4.1)	85,545 ( 4.4)	16,449 ( 4.1)	383 ( 3.2)	30 ( 2.8)	6 ( 12.5)	14 ( 4.8)
전남	156,009 ( 4.3)	91,288 ( 4.7)	16,060 ( 4.0)	340 ( 2.8)	38 ( 3.5)	0 ( 0.0)	11 ( 3.8)
경북	201,696 ( 5.6)	126,874 ( 6.5)	22,854 ( 5.6)	445 ( 3.7)	65 ( 6.0)	1 ( 2.1)	13 ( 4.5)
경남	331,380 ( 9.2)	162,729 ( 8.4)	35,315 ( 8.7)	989 ( 8.2)	93 ( 8.6)	5 ( 10.4)	15 ( 5.1)
제주	39,058 ( 1.1)	25,365 ( 1.3)	5,317 ( 1.3)	189 ( 1.6)	8 ( 0.7)	2 ( 4.2)	3 ( 1.0)

資料: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1997. 4.

한국사회복지관협의회, 내부자료, 1997.12.

〈表 VI-9〉 市·道別 放課後 保育關聯 施設資源 現況

(단위: 명, 개소)

구 분	초등학교수(학급수) <sup>1)</sup>	종교시설수 <sup>2)</sup>	사설학원수 <sup>1)</sup> (초등학생 수강자수)
계	5,721(107,860)	54,642	58,134(1,806,045)
서울	523( 20,294)	7,606	13,267( 263,122)
부산	257( 8,089)	2,010	5,107( 152,986)
대구	167( 5,180)	1,300	2,818( 101,734)
인천	166( 5,324)	2,015	3,114( 137,766)
광주	97( 2,906)	830	1,899( 58,895)
대전	102( 2,955)	1,241	1,766( 54,974)
경기	777( 18,444)	7,638 <sup>3)</sup>	9,939( 412,656)
강원	427( 4,532)	2,409	1,986( 51,154)
충북	274( 3,761)	2,166	1,684( 50,228)
충남	476( 5,111)	3,339	1,982( 63,299)
전북	473( 5,330)	3,068	2,824( 55,588)
전남	599( 6,677)	3,418	2,092( 56,269)
경북	634( 7,498)	3,872	2,621( 79,411)
경남	643( 10,398)	4,430	6,390( 245,689)
제주	106( 1,361)	570 <sup>4)</sup>	645( 33,461)

註: 1) 1997년도 자료임.

2) 1995년도 자료임.

3) 1994년도 자료임.

4) 1993년도 자료임.

資料: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97.

통계청, 『통계연보』, 각시도별, 1996.

### 3. 地域別 保育事業費의 規模

1997년도 保育사업지침에 정리되어 있는 保育사업비<sup>22)</sup>를 지역별로

22) 保育사업 국고보조금 예산에 나타난 保育관련 사업비를 내용별로 살펴보면 (1) 종사자 인건비와 수당을 포함하는 시설지원비, (2) 법정저소득층 아동 및 기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지원, (3) 민간보육시설 교재·교구비와 농어촌 보육시설 차량운영비, (4) 보육시설 신축 및 중·개축, 개·보수비, (5) 보육시설장비비, 사회복지시

살펴보면 총 보육사업비는 약 3,111억 규모로 보육아동 1인당 연간 77만 2천원의 사업비가 지출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表 VI-10 참조). 그러나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역별 편차가 심하여 강원도의 경우 보육아동 1인당 사업비가 151만 5천원으로 가장 많고, 인천은 가장 그 규모가 적어 36만원으로 5배 가량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1인당 지역내 총생산량(GRDP)의 규모와 비교해보면 인천, 경기, 경남지역은 전국순위와 비교해 볼 때 보육아동 1인당 보육사업비의 규모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表 VI-10〉 市·道別 保育事業費의 規模(1997年)

(단위: 천원, 명)

지역	보육 사업비	보육 아동수	1인당 보육사업비	1인당 지역내 총생산
전국	311,121,024	403,001	772.0	-
서울	55,241,230	95,143	580.6	7,867.6
부산	20,818,221	30,842	675.0	6,197.2
대구	17,392,389	20,202	860.9	6,162.8
인천	6,799,144	18,870	360.3	8,026.9
광주	15,868,201	16,154	982.3	6,554.3
대전	5,756,152	9,288	619.7	6,554.3
경기	25,498,799	68,735	371.0	7,718.7
강원	21,882,790	14,446	1514.8	6,572.5
충북	20,363,132	17,982	1132.4	8,257.4
충남	23,375,451	16,340	1430.6	7,827.4
전북	24,386,021	17,994	1355.2	6,842.2
전남	25,631,353	19,494	1314.8	8,355.3
경북	17,835,055	17,321	1029.7	8,632.0
경남	18,668,417	30,942	603.3	11,089.9
제주	11,604,669	9,228	1257.5	6,993.9

資料: 통계청, 『1995년도 지역내 총생산』, 1997.

보건사회부, 『1997년도 보육사업지침』, 1996.

설 학교 및 종교시설 부설의 보육시설 설치비, (6) 보육정보센터 설치비와 운영비로 구성되어 있다.



### 4. 地域別 保育需要 充足率

#### 가. 觀點別 保育需要 充足率

##### 1) 普遍的 保育需要 充足率

지역별 보육대상 아동의 규모에 비추어 충분한 보육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하는 측면을 <表 VI-11>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즉, 보편적 보육수요인 보육대상 아동의 연령별 아동수에 비하여 어느 정도의 아동이 보육되고 있는가를 통하여 지역별로 균등한 보육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表 VI-11> 市·道別 年齡別 普遍的 保育需要 充足率

(단위: 명, %)

지역	전체아동			영아						유아(3세 이상)				
	전체 아동수	보육 아동수	보육 비율	2세 미만			2세			전체 아동수	보육 아동수	유치원 취원 아동수	보육 비율	유치원 포함 보호율
				전체 아동수	보육 아동수	보육 비율	전체 아동수	보육 아동수	보육 비율					
전국	4,066,261	403,001	9.9	1,349,902	25,955	1.9	702,891	61,614	8.8	2,013,468	315,432	551,770	15.7	43.1
서울	854,887	95,143	11.1	293,098	9,563	3.3	147,883	17,447	11.8	413,936	68,133	103,307	16.5	41.4
부산	305,397	30,842	10.1	99,767	2,088	2.1	52,712	4,243	8.1	152,918	24,511	41,051	16.0	42.9
대구	217,572	20,202	9.3	72,698	1,226	1.7	37,475	3,458	9.2	107,399	15,518	27,045	14.4	39.6
인천	253,793	18,870	7.4	82,231	1,578	1.9	43,986	3,151	7.2	127,576	14,141	29,930	11.1	34.5
광주	193,817	16,154	8.3	41,643	794	1.9	21,391	2,344	11.0	59,686	13,016	13,890	21.8	45.1
대전	123,246	9,288	7.5	41,450	443	1.1	21,209	1,620	7.6	60,587	7,225	18,658	11.9	42.7
경기	863,771	68,735	8.0	283,664	3,446	1.2	149,065	8,495	5.7	43,1042	56,794	110,831	13.2	38.9
강원	116,018	14,446	12.5	38,237	735	1.9	19,882	2,313	11.6	57,899	11,398	18,324	19.7	51.3
충북	120,958	17,982	14.9	40,078	791	2.0	21,190	2,790	13.2	59,690	14,401	18,978	24.1	55.9
충남	133,623	16,340	12.2	43,375	919	2.1	22,994	2,518	11.0	67,254	12,903	21,683	19.2	51.4
전북	149,728	17,994	12.0	49,741	895	1.8	25,622	2,471	9.6	74,365	14,628	22,010	19.7	49.3
전남	159,116	19,494	12.3	51,944	590	1.1	27,346	2,154	7.9	79,826	16,750	25,427	21.0	52.8
경북	215,822	17,321	8.0	70,056	726	1.0	37,028	2,291	6.2	108,738	14,304	36,287	13.2	46.5
경남	380,950	30,942	8.1	124,926	1,583	1.3	66,630	4,657	7.0	189,394	24,702	58,138	13.0	43.7
제주	48,660	9,228	19.0	16,994	558	3.3	8,478	1,662	19.6	23,188	7,008	6,211	30.2	57.0

資料: 통계청, 『1995년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97.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1997. 4.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96(1995. 3~1996. 2 기간에 관한 자료임).

0~5세 영유아 전체로 보면 보편적 보육수요의 9.9%의 보육률을 보이지만 연령군별로 보면 보육률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2세 미만인 영아의 경우는 보육률이 1.9%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2세 영아의 경우는 보육률이 2세 미만보다 월등히 높아 8.8%이며, 유아의 경우는 15.7%로 연령군별 보육률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제주도의 보육률이 가장 높아 19%로 전국 평균인 9.9%의 2배에 달하고 있다. 충청북도가 14.9%로 두번째이며, 강원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가 12~13%의 수준이고, 서울이 11.1%, 부산이 10.1%의 수준이다. 즉 전국 평균보다 높은 보육률을 보이는 지역은 2개 대도시와 6개도이며, 4개 대도시(대구, 인천, 광주, 대전)와 3개도(경기, 경북, 경남)가 전국 평균보다 낮은 보육률을 보이고 있다.

2세 미만인 영아의 경우는 제주도와 서울이 가장 보육률이 높아 3.3%이며, 다음이 부산, 충청북도, 충청남도로 2%를 겨우 넘고 있을 뿐이며 4개 대도시(대구, 인천, 광주, 대전)와 6개도(경기, 강원, 전북, 전남, 경북, 경남)가 평균 이하의 보육률을 보이고 있다. 2세의 경우 역시 제주도와 서울, 강원, 충청북도, 충청남도의 보육률이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할 만한 것은 부산의 경우 2세 미만의 경우는 평균을 웃돌고 있으나, 2세아의 경우는 평균보다 보육률이 낮다는 점이다. 3세 이상의 유아인 경우에도 전체 보육률과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 요약하면 전체적으로 보육률이 낮으며 아동의 연령별 보육률에 있어 큰 차이가 있어 아동연령이 높아질수록 보육률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별로는 제주도, 충청북도, 강원도, 전라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서울, 부산이 상대적으로 보육률이 높은 지역이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등의 4개 대도시와 경기, 경북, 경남 등의 3개도가 상대적으로 보육률이 낮아 많은 관심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나타났다.

2) 代理保育需要 充足率<sup>23)</sup>

지역별로 취업모 아동에게 충분한 보육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하는 측면을 살펴본 <表 VI-12>에 의하면, 0~5세 영유아 전체의 대리보육 충족률은 23.6%이지만 연령군별로 보면 2세 미만인 영아의 경우는 4.9%에 불과하며, 2세 영아의 경우는 21.3%, 유아의 경우는 35.4%로 연령군별 보육률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유아의 경우는 유치원을 통해 보육되고 있는 아동까지 고려할 경우 97.2%로 거의 모든 취업모의 아동이 시설보육의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表 VI-12> 市·道別 年齡別 代理保育需要 充足率

(단위: 명, %)

지역	0-5세 아동			2세 미만 아동			2세 아동			유아(3~5세)				
	취업모의 아동수	보육 아동수	보육률	취업모의 아동수	보육 아동수	보육률	취업모의 아동수	보육 아동수	보육률	취업모의 아동수	보육 아동수	유치원 취원 아동수	보육률	유치원 포함 보호율
전국	1,710,760	403,001	23.6	529,765	25,955	4.9	288,848	61,614	21.3	892,150	315,432	551,770	35.4	97.2
서울	376,289	95,143	25.3	122,988	9,563	7.8	64,086	17,447	27.2	189,214	68,133	103,307	36.0	90.6
부산	120,292	30,842	25.6	36,390	2,088	5.7	20,214	4,243	21.0	63,688	24,511	41,051	38.5	102.9
대구	97,981	20,202	20.6	30,462	1,226	4.0	16,434	3,458	21.0	51,085	15,518	27,045	30.4	83.3
인천	101,332	18,870	18.6	30,341	1,578	5.2	17,150	3,151	18.4	53,841	14,141	29,930	26.3	126.3
광주	54,929	16,154	29.4	16,948	794	4.7	9,336	2,344	25.1	28,645	13,016	13,890	45.4	93.9
대전	45,958	9,288	20.2	14,019	443	3.2	7,731	1,620	21.0	24,208	7,225	18,658	29.8	106.9
경기	346,749	68,735	19.8	107,304	3,446	3.2	58,477	8,495	14.5	180,969	56,794	110,831	31.4	92.6
강원	48,834	14,446	29.6	14,620	735	5.0	8,150	2,313	28.4	26,064	11,398	18,324	43.7	114.0
충북	50,869	17,982	35.3	15,761	791	5.0	8,713	2,790	32.0	26,395	14,401	18,978	54.6	126.5
충남	60,904	16,340	26.8	17,710	919	5.2	10,145	2,518	24.8	33,050	12,903	21,683	39.0	104.6
전북	69,090	17,994	26.0	21,293	895	4.2	11,639	2,471	21.2	36,158	14,628	22,010	40.5	101.3
전남	67,646	19,494	28.8	20,323	590	2.9	11,288	2,154	19.1	36,036	16,750	25,427	46.5	117.0
경북	96,416	17,321	18.0	27,919	726	2.6	15,792	2,291	14.5	52,705	14,304	36,287	27.1	96.0
경남	150,254	30,942	20.6	46,248	1,583	3.4	25,722	4,657	18.1	78,284	24,702	58,138	31.6	105.8
제주	23,217	9,228	39.7	7,439	558	7.5	3,971	1,662	41.9	11,808	7,008	6,211	59.3	111.9

資料: 통계청, 『1995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97.  
 \_\_\_\_\_, 1996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23) 현재 보육시설에서 보육되고 있는 아동이 전부 취업모의 아동만은 아니지만 취업모의 아동을 보육서비스의 대상으로 설정할 경우 보육시설이 충분인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보편적 보육수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제주도의 보육률이 가장 높고 다음이 충청북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북이 취업모의 아동 대비 보육률이 가장 낮아서 18%로 나타났는데 이는 제주도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다.

전체적으로 보육율이 낮은 2세 미만인 영아의 경우는 서울이 가장 보육률이 높아 7.8%로 전국 평균 4.9%의 거의 배에 해당하고 있고, 다음이 제주도로 7.5%이며, 경북이 가장 낮아 2.6%에 불과하다. 경북 외에도 전남, 경기, 대전, 광주, 대구 등 6개의 시·도가 평균 이하의 보육률을 보이고 있다.

2세의 경우 제주도가 가장 높아 전국 평균의 2배에 해당하는 41.9%를 보인 반면 경기도와 경북이 14.5%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8개 시·도(경기, 경북, 경남, 전남, 인천, 전북, 부산, 대구)가 평균 이하의 보육률을 보이고 있다. 3세 이상의 유아인 경우 제주도와 충북이 높은 보육률을 보이고 있어, 각각 59.3%와 54.6%이며 유치원 보육률까지 합하면 111.9%와 126.5%로 가장 높다. 가장 보육률이 낮은 곳은 인천으로 26.3%인데,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의 수가 많아서 유치원까지 고려할 경우 126.3%로 충청북도와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로는 평균 이하인 곳이 인천, 경북, 대전의 3개 시·도이다. 그러나 유치원까지 포함하여 보면 대구가 가장 낮아 90.6%이며, 다음이 서울로 90.6%이고 10개 시·도가 100%를 넘고 있어 취업모의 3세 이상 유아의 보육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음을 볼 수 있다.

### 3) 基本保育需要 充足率

지역별로 기본보육관점에서 보육서비스의 대상으로 파악하는 저소득층 취업모의 아동에 대한 충분한 보육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 하

는 측면을 저소득층 취업모의 아동 대비 현재 보육시설에서 보육되고 있는 아동과의 비교를 통하여 살펴본 <表 VI-13>에 의하면, 0~5세인 영유아 전체의 기본보육충족률은 137.1%로 현재 保育施設에서 보호될 수 있는 아동은 저소득층 취업모의 아동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규모인 것으로 보인다.

<表 VI-13> 市·道別 年齡別 基本保育需要 充足率

(단위: 명, %)

지역	0-5세 아동			2세 미만 아동			2세 아동			유아(3-5세)				
	저소득층 취업모의 아동수	보육 아동수	보육률	저소득층 취업모의 아동수	보육 아동수	보육률	저소득층 취업모의 아동수	보육 아동수	보육률	저소득층 취업모의 아동수	보육 아동수	유치원 취원 아동수	보육률	유치원 포함 보호율
전국	293,939	403,001	137.1	82,351	25,955	31.5	48,529	61,614	78.8	163,059	315,432	551,770	193.4	531.8
서울	45,297	95,143	210.0	12,346	9,563	129.1	7,399	17,447	235.8	25,551	68,133	103,307	266.7	671.0
부산	21,593	30,842	142.8	5,846	2,088	35.7	3,520	4,243	120.5	12,227	24,511	41,051	200.5	536.2
대구	15,964	20,202	126.5	4,369	1,226	28.1	2,550	3,458	135.6	9,045	15,518	27,045	171.6	470.6
인천	17,836	18,870	105.8	4,770	1,578	33.1	2,964	3,151	106.3	10,102	14,141	29,930	140.0	436.3
광주	8,082	16,154	199.9	2,355	794	33.7	1,375	2,344	170.5	4,352	13,016	13,890	299.1	618.2
대전	5,706	9,288	162.8	1,500	443	29.5	924	1,620	175.3	3,282	7,225	18,658	220.1	788.6
경기	90,250	68,735	76.2	26,840	3,446	12.8	15,185	8,495	55.9	48,225	56,794	110,831	117.8	347.6
강원	8,427	14,446	171.4	2,417	735	30.4	1,357	2,313	170.4	4,653	11,398	18,324	245.0	638.8
충북	10,281	17,982	174.9	2,763	791	28.6	1,720	2,790	162.2	5,798	14,401	18,978	248.4	575.7
충남	7,378	16,340	221.5	1,781	919	51.6	1,171	2,518	215.0	4,427	12,903	21,683	291.5	781.3
전북	8,883	17,994	202.6	2,489	895	36.0	1,451	2,471	170.3	4,943	14,628	22,010	295.9	741.2
전남	7,907	19,494	246.5	1,956	590	30.2	1,241	2,154	173.6	4,710	16,750	25,427	355.6	895.5
경북	15,110	17,321	114.6	4,053	726	17.9	2,435	2,291	94.1	8,622	14,304	36,287	165.9	586.8
경남	26,745	30,942	115.7	7,512	1,583	21.1	4,472	4,657	104.1	14,761	24,702	58,138	167.3	561.2
제주	4,480	9,228	206.0	1,354	558	41.2	765	1,662	217.3	2,361	7,008	6,211	296.8	559.9

資料: 통계청, 『1995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97.

\_\_\_\_, 1996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그러나 이를 연령군별로 보면 2세 미만인 영아의 경우는 아직도 저소득층 취업모의 아동마저도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이다. 즉, 저소득층 취업모의 아동 대비 현재 保育施設에서 보육되고 있는 아동은 31.5% 정도에 불과하다. 반면, 2세 영아의 경우는 127%, 유아의 경우는 193.5%이다. 유아의 경우는 유치원을 통해 보육되고 있는 아동까지 고려할 경우 531.8%로 현재의 保育施設의 아동보육 가능성은 기본보육의 충족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남이 가장 높아 저소득층 아동규모의 약 2.5 배를 保育施設에서 보육하고 있다. 다음이 충남, 서울의 순이며, 경기도가 가장 낮아 기본보육대상자 규모의 76.2%만이 保育施設에서 보육되고 있다. 이는 전남의 약 1/4 정도의 수준이다. 한편 경기, 인천, 경북, 경남, 대구 등 5개 시·도가 평균수준 이하의 기본보육수요 충족률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보호율이 낮은 2세 미만 영아의 경우는 경기도가 가장 낮아서 12.8%의 수준이며 다음이 경북으로 17.9%이며, 평균보다 낮은 곳은 8개 시·도(경기, 경북, 경남, 충북, 대구, 대전, 전남, 강원)이다. 서울을 제외한 모든 시·도가 저소득층 취업모의 자녀를 보육할 수 있는 규모의 保育施設조차도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세 영아의 경우 또한 경기도가 가장 낮아서 55.9%에 머물고 있고, 경북, 경남이 100%에 미달하고 있다. 3세 이상 유아의 경우는 모든 시·도가 저소득층 기혼여성의 아동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保育施設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나. 主觀的 保育需要에 비추어 본 保育充足率

##### 1) 主觀的 代理保育需要에 비추어 본 保育充足率

保育施設의 利用을 희망하는 취업모의 아동 대비 현재 보육시설 보호아동의 규모를 살펴본 <表 VI-14>에 의하면 0~5세의 영유아로 보육시설 이용을 희망하는 취업모 아동의 36.3%가 현재 보육시설에서 보육되고 있다. 이는 취업모의 0~5세 자녀의 23.6%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모든 취업모의 아동이 시설보육을 희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를 연령별로 보면 2세 미만인 영아의 경우 보육충족률은 6.5%에 불과하고, 2세 영아의 경우는 26.4%로 취업모 자녀의 보육충

족률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반면 유아의 경우는 66.3%로 취업모 자녀의 보육충족률인 35.4%의 거의 2배에 해당하고 있는데, 이는 이 연령군의 아동을 둔 취업모중 53.5%만이 保育施設을 사용할 것을 희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군에서 대리보육수요 충족률과 비슷한 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특이할 만한 사항은 유아의 경우 제주도와 충청 북도는 100%를 넘고 있다는 사실이며, 이에 비하여 부산과 인천은 50% 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지역별 편차가 큰 것으로 보인다. 즉, 부산과 인천의 보육서비스 규모는 아직도 취업모의 자녀로써 保育施設의 利用을 희망하는 아동을 보육하기에도 부족한 실정인 것이다.

〈表 VI-14〉 市·道別 年齡別 主觀的 代理保育需要 充足率

(단위: 명, %)

지역	0~5세 아동			2세 미만 아동			2세 아동			유아(3~5세)				
	취업모의 보육시설 이용희망 미취학 아동수	보육 아동수	보육률	취업모의 보육시설 이용희망 아동수	보육 아동수	보육률	취업모의 보육시설 이용희망 아동수	보육 아동수	보육률	취업모의 보육시설 이용희망 아동수	보육 아동수	유치원 취원 아동수	보육률	유치원 포함 보호율
전국	1,111,006	403,001	36.3	402,101	25,955	6.5	233,389	61,614	26.4	475,516	315,432	551,770	66.3	237.0
서울	246,010	95,143	38.7	93,378	9,563	10.2	51,781	17,447	33.7	100,851	68,133	103,307	67.6	170.0
부산	77,897	30,842	39.6	27,618	2,088	7.6	16,333	4,243	26.0	33,946	24,511	41,051	72.2	193.1
대구	63,631	20,202	31.7	25,061	1,226	4.9	13,279	3,458	26.0	27,228	15,518	27,045	57.0	156.3
인천	65,578	18,870	28.8	23,024	1,578	6.9	13,857	3,151	22.07	28,697	14,141	29,930	49.3	153.6
광주	35,675	16,154	45.3	12,864	794	6.2	7,543	2,344	31.1	15,268	13,016	13,890	85.3	176.2
대전	29,792	9,288	31.2	10,642	443	4.2	6,247	1,620	25.9	12,903	7,225	18,658	56.0	200.6
경기	225,146	68,735	30.5	81,441	3,446	4.2	47,249	8,495	18.0	96,456	56,794	110,831	58.9	173.8
강원	31,574	14,446	45.8	11,096	735	6.6	6,585	2,313	35.1	13,892	11,398	18,324	82.0	214.0
충북	33,071	17,982	54.4	11,962	791	6.6	7,040	2,790	39.6	14,069	14,401	18,978	102.4	237.3
충남	39,251	16,340	41.6	13,438	919	6.8	8,197	2,518	30.7	17,616	12,903	21,683	73.2	196.3
전북	44,832	17,994	40.1	16,156	895	5.5	9,404	2,471	26.3	19,272	14,628	22,010	75.9	190.1
전남	43,751	19,494	44.6	15,423	590	3.8	9,121	2,154	23.6	19,207	16,750	25,427	87.2	219.6
경북	62,040	17,321	27.9	21,188	726	3.4	12,760	2,291	18.0	28,092	14,304	36,287	50.9	180.1
경남	97,608	30,942	31.7	35,100	1,583	4.5	20,783	4,657	22.4	41,725	24,702	58,138	59.2	198.5
제주	15,150	9,228	60.9	5,647	558	9.9	3,209	1,662	51.8	6,294	7,008	6,211	111.3	210.0

資料: 통계청, 『1995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97.  
 ———, 1996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2) 主觀的 基本保育需要에 비추어 본 保育充足率

保育施設의 이용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취업모의 아동 대비 현재 保育施設 보호아동의 규모를 살펴본 <表 VI-15>에 의하면 각 시·도는 0~5세 연령군의 저소득층 취업모의 자녀 모두를 보육할 수 있는 保育施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보호율이 가장 낮은 2세 미만인 영아의 경우는 아직도 불충분하여 47.4%에 머물고 있어 기본적인 보육수요마저도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만이 유일하게 저소득층 취업모의 2세 미만의 자녀중 保育施設의 사용을 희망하는 아동을 모두 보호할 수 있는 保育施設 規模를 갖추고 있다. 保育需要 充足率이 가장 낮은 곳은 경기도로 19.3%에 불과하여 서울의 1/6 수준에 머물고 있다. 즉, 서울 이외의 지역에서는 2세 미만인 영아에 대한 보육서비스가 매우 부족하다.

<表 VI-15> 市·道別 年齡別 主觀的 基本保育需要 充足率 (단위: 명, %)

지역	0~5세 아동			2세 미만 아동			2세 아동			유아(3~5세)				
	보육시설 이용희망 미취학 아동수	보육 아동수	보육률	보육시설 이용희망 아동수	보육 아동수	보육률	보육시설 이용희망 아동수	보육 아동수	보육률	보육시설 이용희망 아동수	보육 아동수	유치원 취원 아동수	보육률	유치원 포함 보호율
전국	165,212	403,001	243.9	54,705	25,955	47.4	34,359	61,614	179.4	76,149	315,432	551,770	414.2	1138.8
서울	25,372	95,143	375.0	8,202	9,563	116.6	5,238	17,447	333.1	11,932	68,133	103,307	571.0	1436.8
부산	12,085	30,842	255.2	3,884	2,088	53.8	2,492	4,243	170.3	5,710	24,511	41,051	429.3	1148.2
대구	8,932	20,202	226.2	2,903	1,226	42.2	1,805	3,458	191.6	4,224	15,518	27,045	367.4	1007.6
인천	9,984	18,870	189.0	3,167	1,578	49.8	2,099	3,151	150.1	4,718	14,141	29,930	299.7	934.1
광주	4,570	16,154	353.5	1,565	794	50.7	974	2,344	240.7	2,032	13,016	13,890	640.6	1324.1
대전	3,183	9,288	291.8	997	443	44.4	654	1,620	247.7	15,333	7,225	18,658	47.1	168.8
경기	51,104	68,735	134.5	17,832	3,446	19.3	10,751	8,495	79.0	22,521	56,794	110,831	252.2	744.3
강원	4,740	14,446	304.8	1,607	735	45.7	961	2,313	240.7	2,173	11,398	18,324	524.5	1367.8
충북	5,760	17,982	312.2	1,835	791	43.1	1,218	2,790	229.1	2,708	14,401	18,978	531.8	1232.6
충남	4,079	16,340	400.6	1,182	919	77.7	829	2,518	303.7	2,067	12,903	21,683	624.2	1673.2
전북	4,989	17,994	360.7	1,653	895	54.1	1,027	2,471	240.6	2,308	14,628	22,010	633.8	1587.4
전남	4,377	19,494	445.4	1,299	590	45.4	879	2,154	245.1	2,200	16,750	25,427	761.4	1917.1
경북	8,443	17,321	205.2	2,693	726	27.0	1,724	2,291	132.9	4,026	14,304	36,287	355.3	1256.6
경남	15,050	30,942	205.6	4,990	1,583	31.7	3,166	4,657	147.1	6,893	24,702	58,138	358.4	1201.8
제주	2,544	9,228	362.7	899	558	62.1	542	1,662	306.6	1,103	7,008	6,211	635.4	1198.5

資料: 통계청, 『1995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97.  
 —, 1996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3) 潛在的 就業을 考慮한 保育需要 充足率

현재 취업중인 기혼여성뿐만 아니라 자녀양육 문제로 취업을 못하고 있는 여성들의 保育施設 利用希望率을 반영하여 산출된 아동의 19.2%만이 보육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다(表 VI-16 참조). 이는 지역별로 그 차이가 매우 커서 가장 높은 지역인 제주도가 34.3%이며, 가장 낮은 인천은 14.6%로 두 지역간에는 20%에 달하는 차이가 있다. 그밖의 6개 시·도는 20% 규모에도 못미치고 있다.

〈表 VI-16〉 市·道別 年齡別 潛在的 就業을 考慮한 保育需要 充足率 (단위: 명, %)

지역	0~5세 아동			2세 미만 아동			2세 아동			유아(3~5세)				
	보육시설 이용희망 미취학 아동수	보육 아동수	보 육 률	보육시설 이용희망 아동수	보 육 아동수	보 육 률	보육시설 이용희망 아동수	보 육 아동수	보 육 률	보육시설 이용희망 아동수	보 육 아동수	유치원 취원 아동수	보 육 률	유치원 포함 보호율
전국	2,097,881	403,001	19.2	822,280	25,955	3.2	435,107	61,614	14.2	840,494	315,432	551,770	37.5	103.2
서울	455,435	95,143	20.9	187,683	9,563	5.1	97,138	17,447	18.0	174,213	68,133	103,307	39.1	98.4
부산	136,523	30,842	22.6	58,697	2,088	3.6	16,333	4,243	26.0	61,493	24,511	41,051	39.9	106.6
대구	117,902	20,202	17.1	46,020	1,226	2.7	25,036	3,458	13.8	46,847	15,518	27,045	33.1	90.9
인천	128,958	18,870	14.6	48,937	1,578	3.2	27,689	3,151	11.4	52,332	14,141	29,930	27.0	84.2
광주	66,122	16,154	24.4	25,788	794	3.1	14,205	2,344	16.5	26,129	13,016	13,890	49.8	103.0
대전	60,207	9,288	15.4	23,537	443	1.9	12,816	1,620	12.6	23,854	7,225	18,658	30.3	108.5
경기	440,024	68,735	15.6	170,369	3,446	2.0	93,914	8,495	9.0	175,741	56,794	110,831	32.3	95.4
강원	59,465	14,446	24.3	22,694	735	3.2	12,594	2,313	18.4	24,177	11,398	18,324	47.1	122.9
충북	62,927	17,982	28.6	24,379	791	3.2	13,612	2,790	20.5	24,936	14,401	18,978	57.8	133.9
충남	71,516	16,340	22.8	26,670	919	3.4	15,207	2,518	16.6	29,639	12,903	21,683	43.5	116.7
전북	81,135	17,994	22.2	31,348	895	2.9	17,233	2,471	14.3	32,555	14,628	22,010	44.9	112.5
전남	82,345	19,494	23.7	31,318	590	1.9	17,491	2,154	12.3	33,536	16,750	25,427	49.9	125.8
경북	115,180	17,321	15.0	43,072	726	1.7	24,262	2,291	9.4	47,846	14,304	36,287	30.0	105.7
경남	193,215	30,942	16.0	74,553	1,583	2.1	41,817	4,657	11.1	76,844	24,702	58,138	32.1	107.8
제주	26,926	9,228	34.3	10,814	558	5.2	5,760	1,662	28.9	10,351	7,008	6,211	67.7	127.7

資料: 통계청, 『1995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97.  
 —, 1996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이를 연령별로 보면 2세 미만인 영아의 경우는 3.2%로 매우 규모가 적으며, 2세 아동은 14.2%, 유아의 경우는 37.5%이다. 3세 이상 유아의 경우는 유치원의 취원아동까지 합하면 100%를 넘어서고 있다. 연령군별 충족도에 있어서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제주도가 모든 연령

층에서 제일 높다. 그러나 최저수준은 연령군별로 상이하여, 2세 미만인 영아의 경우는 경북이 가장 낮아서 1.7%에 불과하며, 2세 영아의 경우는 경기도가 가장 낮아 9.0%이다. 3세 이상의 유아인 경우는 인천이 가장 낮아서 27%이며, 유치원의 취원률까지 합하여도 84.2%에 불과하다.

## VII . 未就學 및 初等學生 子女의 保育實態

보육수요에 상응하는 적절한 보육시설의 공급을 위해서는 현재 保育實態에서 나타나는 특징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1997년에 실시한 『1997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첫째, 자녀는 어떠한 방법으로 보육되고 있는가? 둘째, 취업모와 비취업모 사이에 자녀의 보육방식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가? 셋째, 보육방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넷째, 보육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가? 등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미취학 자녀 및 초등학생 자녀의 양육실태를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자료에는 미취학 및 초등학생 자녀의 保育實態와 보육시설 미사용이유, 보육시설 및 방과후 아동교실의 이용희망 여부, 부인의 취업실태 및 미취업 이유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보육방식에 대한 차이를 가져오는 특성으로는 부인의 가족형태(핵가족/확대가족 유무), 교육수준, 취업상태와 종사상의 지위, 직업, 근로시간 등과 같은 취업관련 특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 1. 未就學 子女의 保育實態

#### 가. 兒童의 年齡別 保育實態 比較

아동의 연령별 保育實態를 살펴본 <表 VII-1>에 의하면 연령별로 보육실태가 매우 다르며 특히 유아 즉 3세 이상 유아의 경우는 영아와

는 매우 상이한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表 VII-1〉 兒童의 年齡別 保育類型 및 施設利用率

(단위: 명, %)

보육유형 및 시설이용률	취업모				미취업모			
	0세	1세	2세	3세이상	0세	1세	2세	3세이상
대상아동수	92	106	147	635	397	426	378	1,102
보육유형 <sup>1)</sup>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양육자 없음	0.0	0.0	0.0	0.0	0.0	0.0	0.0	0.0
어머니만 담당	30.8	29.5	32.4	7.2	91.9	92.5	81.7	18.9
가정에서 전적으로 담당 및 가족 외 <sup>2)</sup> 의 전적인 도움	36.1	31.6	8.4	2.6	0.3	0.3	0.0	0.1
시설에만 전적으로 의존								
유치원	0.0	0.0	3.0	7.9	0.0	0.0	0.9	4.0
보육시설	1.3	4.2	9.1	7.1	0.3	0.3	1.6	2.8
사설학원	0.0	0.0	0.8	3.7	0.0	0.0	0.0	2.5
어머니+가족 및 가족외의 도움	30.6	29.3	20.0	4.5	7.5	5.0	4.6	0.9
어머니+시설보육								
유치원	0.0	0.0	2.5	22.5	0.0	0.3	4.0	38.4
보육시설	1.2	4.4	18.2	13.2	0.0	1.7	6.3	9.7
사설학원	0.0	0.0	1.2	9.9	0.0	0.0	0.9	17.8
가족 및 가족외의 도움+시설보육								
유치원	0.0	0.0	0.7	9.7	0.0	0.0	0.0	0.5
보육시설	0.0	1.0	2.5	3.5	0.0	0.0	0.0	0.1
사설학원	0.0	0.0	1.4	2.7	0.0	0.0	0.0	0.1
2가지 이상의 시설보육	0.0	0.0	0.0	5.5	0.0	0.0	0.0	4.2
시설의 종류별 이용률 <sup>3)</sup>								
보육시설	3.7	10.6	30.2	24.6	0.3	2.3	7.9	13.2
유치원	0.0	1.1	6.1	46.7	0.0	0.3	4.9	47.2
학원	0.0	0.0	4.1	23.9	0.0	0.0	1.5	27.1

註: 1) 한 아동당 중요한 보육방법순으로 3가지를 조사하였는데, 조사된 아동의 5%만이 3가지 방법의 보육수단을 사용하고 있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가지 방법까지의 조합을 통하여 보육유형을 살펴보았음.

2) 파출부, 가정부, 이웃, 위탁모, 아동지도원 등 비가족원에 의해서 가정보육되는 경우.

3) 각 시설이용률은 조사된 보육방법 3가지 중 한 번이라도 언급된 경우를 포함하여 산출되었음.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자료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나 미취업중인 경우 모두 3세 이상에서는 어머니, 가족 및 가족외의 도움으로 가정보육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시설이용률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시설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는 취업모의 경우 18.7%, 미취업모의 경우는 9.3%이다. 시설중 특히 유치원의 이용률이 급격히 상승하여 취업모 아동의 경우는 46.7%에 미취업모 아동의 경우는 47.2%에 달하고 있다. 즉, 3세 이상 미취학 아동의 경우 절반 정도가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것이다. 유치원 이용률은 어머니의 취업여부와는 상관없지만, 보육시설의 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취업모 아동의 경우는 24.6%, 미취업모 아동의 경우는 13.2%의 이용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학원이용률도 높아 취업모 아동의 경우는 23.9%, 미취업모 아동의 경우는 27.1%에 이르고 있다.

2세 미만인 영아의 경우 대부분이 어머니 또는 가족 및 가족외의 도움을 받아서 가정에서 보살펴지고 있다. 2세 영아로 취업모의 자녀인 경우는 어머니에 의하여 보호됨과 함께 시설보육되고 있는 경우가 21.9%, 시설보육에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12.9%, 가족 및 가족외 성원의 도움을 받아 가정에서 보육을 함과 동시에 시설을 병행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4.6%로 시설 이용률로는 보육시설 이용률이 30.2%, 유치원 이용률이 6.1%, 학원 이용률이 4.1%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미취업모의 경우는 어머니에 의한 가정보육과 시설이용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11.2%일 뿐으로 시설이용률이 취업모의 경우보다 낮아 보육시설 이용률은 7.9%, 유치원 이용률은 4.9%, 학원 이용률은 1.5% 정도이다.

이상과 같은 年齡別 保育實態 分析에서 나타난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세 미만인 영아의 경우는 어머니의 취업유무와는 상관없이 대부분이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다. 둘째, 2세의 경우는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는 급격히 시설이용률이 증가하여 특히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다. 셋째, 3세 이상 유아의 경우는 어머니의 취업유무와는 상관없이 가정양육의 비율이 매우 낮고 절반 정도가 유치원을 통하여 보육되고 있다. 넷째, 2세 이상 아동의 경우 상대적으로 취업모의 아

동이 미취업모의 아동보다 많이 보육시설에서 양육되고 있다.

#### 나. 母의 就業實態 및 家族形態에 따른 保育實態

취업모와 미취업모의 미취학 아동의 保育實態를 분석한 결과는 <表 VII-2>와 같다. 취업모가 일하는 동안 미취학 자녀의 保育實態를 보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보육유형은 어머니가 돌보면서 시설의 도움을 받는 경우로 33.8%에 달하고 있다. 그 다음은 어머니가 취업중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전적으로 돌보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로 15.8%에 이르고 있다. 그 다음이 전적으로 시설에 보내는 경우로 14.9%이며, 보육시설(놀이방·어린이집), 유치원, 학원 등의 시설에 보내면서 가정에서도 함께 돌본다고 응답한 경우가 10.7%로 나타났다. 한편, 가정에서 가족이나 가족외의 도움을 받아서 아이를 가정보육하고 있는 경우가 9.0%이며, 2가지 이상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도 3.6%이다. 이를 시설종류별로 정리해보면 학원 이용률이 16.2%로 가장 낮고, 보육시설 이용률이 21.8%, 유치원 이용률이 31.5%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미취업모의 경우는 절반이 넘는 55.4%가 어머니가 전적으로 돌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일반적인 유형은 어머니가 돌보면서 시설의 도움을 받는 경우로 33.7%에 달하고 있다.

부모와 동거하는가 여부에 따른 保育實態를 살펴보면, 확대가족의 경우 핵가족에 비하여 가정양육이 이루어지는 비율이 높고, 특히 취업모의 경우 현저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

어머니가 취업중으로 확대가족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의 약 절반 정도가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전적으로 양육되고 있다. 즉, 7.4%는 어머니에 의해서, 21.8%는 전적으로 가족 및 가족외의 성원에 의하여 가정양육되고 있으며, 18.5%는 어머니와 가족 및 가족외의 성원에 의해 양육되고 있다. 또한, 24.7%는 가족 및 가족외 성원의 도움

과 시설보육의 혼합형을 보이고 있다.

〈表 VII-2〉 母의 就業有無와 家族形態別 保育類型 및 施設利用率  
(단위: 명, %)

보육유형 및 시설이용률	취업모			비취업모		
	전체	핵가족	확대가족	전체	핵가족	확대가족
대상아동수	966	769	197	2,304	2,019	284
보육유형 <sup>1)</sup>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양육자 없음	0.1	0.2	0.0	0.0	0.0	0.0
어머니만 담당	15.8	18.0	7.4	55.4	56.9	44.9
가족 및 가족 외 <sup>2)</sup> 의 전적인 도움	9.0	5.7	21.8	0.2	0.2	0.0
시설에만 전적으로 의존						
유치원	5.7	6.0	4.3	2.0	2.1	1.6
보육시설	6.6	6.9	5.5	1.7	1.6	2.5
사설학원	2.6	3.1	0.7	1.2	1.4	0.0
어머니+가족 및 가족외의 도움	12.1	10.5	18.5	3.3	1.2	18.9
어머니+시설보육						
유치원	15.1	16.5	9.8	19.1	19.2	18.6
보육시설	12.0	14.2	3.2	5.9	6.2	4.4
사설학원	6.7	7.8	2.4	8.7	8.8	7.8
가족 및 가족외의 도움+시설보육						
유치원	6.3	4.7	12.5	0.2	0.2	0.4
보육시설	2.4	1.3	6.5	0.0	0.1	0.0
사설학원	2.0	1.0	5.7	0.0	0.0	0.0
2가지 이상의 시설보육	3.6	4.1	1.7	2.0	2.1	1.0
시설의 종류별 이용률 <sup>3)</sup>						
보육시설	21.8	23.5	15.2	8.0	8.2	6.9
유치원	31.5	32.2	29.0	23.4	23.7	21.5
학원	16.2	17.5	11.2	13.2	13.7	10.1

註: 1) 한 아동당 중요한 보육방법순으로 3가지를 조사하였는데, 조사된 아동의 5%만이 3가지 방법의 보육수단을 사용하고 있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가지 방법까지의 조합을 통하여 보육유형을 살펴보았음.  
 2) 파출부, 가정부, 이웃, 위탁모, 아동지도원 등 비가족원에 의해서 가정보육되는 경우  
 3) 각 시설 이용률은 조사된 보육방법 3가지 중 한 번이라도 언급된 경우를 포함하여 산출되었음.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자료

한편, 보육시설 이용률을 보면 비취업모의 아동에 비하여 취업모 아동의 경우 가족형태별로 차이가 커서 핵가족일 경우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다.

#### 다. 母의 教育水準에 따른 保育實態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保育實態를 살펴본 <表 VII-3>에 의하면 교육수준이 낮은 경우 아동이 어머니에 의해서 전적으로 양육되고 있는 경우가 많아, 어머니가 국졸인 취업모의 자녀의 경우 43.2%가 미취업모인 아동의 62.3%가 어머니에 의해서 전적으로 양육되고 있다. 또한, 취업모의 자녀인 경우, 가족 및 가족외의 도움을 받아 가정양육을 하고 있는 경우(어머니의 양육이 병행되는 경우 포함)는 학력이 높을수록 많아져 국졸의 경우 9.9%, 중졸은 12.7%, 고졸은 17.6%인데 비하여 전문대졸은 33.8%, 대졸은 30.8%로 나타났다.

#### 라. 就業母의 就業關聯 特性別 保育實態

취업모의 종사사의 지위, 근로시간, 직업별로 保育實態를 분석한 <表 VII-4>와 <表 VII-5>에 의하면 어머니가 자영업에 종사하거나 무급가족종사자인 경우 어머니에 의하여 전적으로 양육되는 비율이 높아서, 각각 23.3%와 26.7%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고용주인 경우와 상용근로자인 경우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 양육되는 비율이 높아 33.2%와 42.5%에 달하고 있다. 시설의 이용률을 보면 임금노동자인 경우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고, 유치원과 학원은 임시·일용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의 아동인 경우 그 이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表 VII-3〉 母의 教育水準別 保育類型 및 施設利用率

(단위: 명, %)

보육유형 및 시설이용률	취업모					미취업모				
	국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이상	대졸 이상	국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이상	대졸 이상
대상아동수	31	94	515	80	261	46	164	1,467	180	446
보육유형 <sup>1)</sup>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양육자 없음	2.0	0.5	0.0	0.0	0.0	0.0	0.0	0.0	0.0	0.0
어머니만 담당	43.2	25.8	15.7	16.7	8.3	62.3	52.6	55.4	52.3	57.1
가족 및 가족외 <sup>2)</sup> 의 전적인 도움	0.0	5.3	8.2	18.4	12.9	0.0	1.5	0.1	0.0	0.0
시설에만 전적으로 의존										
유치원	1.5	13.9	6.4	0.0	3.1	7.0	1.8	1.7	5.2	1.5
보육시설	3.9	6.2	6.8	5.8	6.8	1.2	0.6	2.0	1.9	1.3
사설학원	0.0	0.0	3.9	3.1	0.7	0.0	2.1	1.5	1.5	0.0
어머니+가족 및 가족외의 도움	9.9	7.4	9.4	15.4	17.9	2.6	4.0	3.2	2.6	4.2
어머니+시설보육										
유치원	14.0	11.4	16.5	11.3	14.2	23.0	19.5	18.2	19.8	21.2
보육시설	12.0	9.3	13.6	9.5	9.9	1.1	4.5	6.3	3.3	7.0
사설학원	0.0	8.4	7.0	5.7	6.4	2.7	12.0	9.6	9.5	4.7
가족 및 가족외의 도움+시설보육										
유치원	3.8	5.6	3.9	6.3	11.8	0.0	0.0	0.3	0.0	0.2
보육시설	0.0	2.6	2.9	3.8	2.4	0.0	0.0	0.1	0.0	0.0
사설학원	0.0	0.0	2.9	0.0	1.7	0.0	0.0	0.0	0.0	0.1
2가지 이상의 시설보육	9.8	3.6	2.9	3.9	4.0	0.0	1.4	1.7	3.9	2.7
시설의 종류별 이용률 <sup>3)</sup>										
보육시설	15.8	18.1	24.1	20.6	20.0	2.4	5.1	8.7	5.2	8.5
유치원	32.9	35.6	30.2	21.5	34.4	30.0	22.7	22.0	28.9	25.6
학원/과외	9.8	13.4	17.9	12.7	15.0	5.1	15.5	14.0	16.3	9.6

註: 1) 한 아동당 중요한 보육방법순으로 3가지를 조사하였는데, 조사된 아동의 5%만이 3가지 방법의 보육수단을 사용하고 있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가지 방법까지의 조합을 통하여 보육유형을 살펴보았음.

2) 파출부, 가정부, 이웃, 위탁모, 아동지도원 등 비가족원에 의해서 가정보육되는 경우.

3) 각 시설 이용률은 조사된 보육방법 3가지 중 한 번이라도 언급된 경우를 포함하여 산출되었음.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자료

〈表 VII-4〉 就業母의 從事上의 地位 및 勤勞時間別 保育類型 및 施設利用率

(단위: 명, %)

보육유형 및 시설의 종류별	종사상의 지위					근로시간	
	고용주	사용고	임시. 일용고	자영 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36시간 미만	36시간 이상
대상아동수	29	284	266	151	250	236	707
보육유형 <sup>1)</sup>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양육자 없음	0.0	0.0	0.2	0.0	0.2	0.0	0.2
어머니만 담당	14.8	4.1	13.2	23.3	26.7	20.5	12.8
가족 및 가족외 <sup>2)</sup> 의 전적인 도움	13.5	21.5	5.4	4.5	3.6	2.8	12.5
시설에만 전적으로 의존							
유치원	0.0	1.5	8.4	8.3	6.2	2.3	6.7
보육시설	7.8	8.3	5.9	6.3	5.1	3.4	7.8
사설학원	0.0	0.0	4.3	3.5	3.2	3.2	2.2
어머니+가족 및 가족외의 도움	19.7	21.0	8.2	5.3	8.9	9.1	13.0
어머니+시설보육							
유치원	15.1	5.7	18.6	16.0	20.9	23.5	11.8
보육시설	6.1	11.2	17.6	9.2	8.6	19.4	9.7
사설학원	7.9	1.6	7.8	12.9	7.1	9.2	5.4
가족 및 가족외의 도움+시설보육							
유치원	8.6	14.2	2.8	3.1	3.0	2.1	8.1
보육시설	4.1	4.7	3.3	1.2	0.7	1.6	3.3
사설학원	0.0	3.0	1.4	0.0	2.9	0.0	2.7
2가지 이상의 시설보육	2.6	3.2	3.0	6.5	2.9	2.9	3.9
시설의 종류별 이용률 <sup>3)</sup>							
보육시설	18.0	25.9	27.3	18.3	14.4	23.4	21.9
유치원	26.2	26.1	34.1	33.8	33.0	31.3	31.4
학원	13.0	9.7	18.6	22.5	17.0	16.7	15.6

註: 1) 한 아동당 중요한 보육방법순으로 3가지를 조사하였는데, 조사된 아동의 5%만이 3가지 방법의 보육수단을 사용하고 있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가지 방법까지의 조합을 통하여 보육유형을 살펴보았음.

2) 파출부, 가정부, 이웃, 위탁모, 아동지도원 등 비가족원에 의해서 가정보육되는 경우.

3) 각 시설 이용률은 조사된 보육방법 3가지 중 한 번이라도 언급된 경우를 포함하여 산출되었음.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자료

〈表 VII-5〉 就業母의 職業別 保育類型 및 施設利用率

(단위: 명, %)

보육유형 및 시설의 종류별	고위관리 및 전문직	준전문 관리직	사무직	판매직	농어촌	기능 /조립직	단순 노무직
대상아동수	126	126	85	374	63	70	105
보육유형 <sup>1)</sup>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양육자 없음	0.0	0.0	0.0	0.0	0.7	0.0	0.0
어머니만 담당	4.6	7.7	2.0	18.0	33.8	13.5	28.8
가족 및 가족외 <sup>2)</sup> 의 전적인 도움	15.6	13.5	25.2	7.0	0.0	12.7	2.1
시설에만 전적으로 의존							
유치원	1.9	0.9	0.0	8.0	4.5	13.1	4.9
보육시설	9.7	4.4	9.1	7.2	1.5	8.0	4.5
사설학원	0.0	0.0	1.5	3.9	0.9	0.0	7.9
어머니+가족 및 가족외의 도움	20.6	25.2	18.3	6.4	18.2	7.3	2.7
어머니+시설보육							
유치원	9.2	14.2	7.0	16.2	25.4	14.6	15.8
보육시설	8.0	15.2	13.0	14.1	5.4	7.8	8.2
사설학원	0.9	7.2	0.0	8.6	4.2	7.8	11.4
가족 및 가족외의 도움+시설보육							
유치원	20.2	5.1	9.7	3.1	3.8	5.1	4.5
보육시설	2.8	3.4	8.3	1.2	0.7	3.3	4.6
사설학원	2.6	0.9	4.8	2.1	1.0	0.0	1.2
2가지 이상의 시설보육	4.0	2.5	1.2	4.3	0.0	7.0	2.7
시설의 종류별 이용률 <sup>3)</sup>							
보육시설	23.2	24.0	31.7	23.2	7.5	19.0	17.4
유치원	35.9	23.6	17.8	32.9	33.7	41.2	27.9
학원	9.5	13.6	8.8	20.1	6.0	16.6	24.0

註: 1) 한 아동당 중요한 보육방법순으로 3가지를 조사하였는데, 조사된 아동의 5%만이 3가지 방법의 보육수단을 사용하고 있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가지 방법까지의 조합을 통하여 보육유형을 살펴보았음.

2) 파출부, 가정부, 이웃, 위탁모, 아동지도원 등 비가족원에 의해서 가정보육되는 경우

3) 각 시설 이용률은 조사된 보육방법 3가지 중 한 번이라도 언급된 경우를 포함하여 산출되었음.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자료

주간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경우 어머니가 전적으로 아동의 양육을 맡고 있는 경우가 높고, 36시간 이상인 경우는 가족 및 가족외의 성원에 의하여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어머니의 보호와 병행하여 유치원을 이용하거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36시간 미만 근로하는 경우 높게 나타나고, 시설보육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비율은 36시간 이상 근로하는 어머니의 아동의 경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직업별로는 관리직, 전문직, 사무직 등에 비하여 판매직, 농어촌, 기능/조립직, 단순노무직 등의 경우 어머니에 의해 전적으로 양육되는 비율이 높다. 특히, 농어촌과 단순노무직의 경우는 30% 내외로 매우 높다. 또한 관리직, 전문직 및 사무직의 경우 가족 및 가족외 성원의 도움을 받아서 가정에서 양육하고 있는 경우가 다른 직종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또한, 고위관리직 및 전문직에서 가족의 도움과 더불어 유치원을 병행하여 이용하는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에 비하여 판매직, 농어촌, 기능/조립직, 단순노무직은 어머니에 의한 양육과 시설보육을 병행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시설의 종류별 이용률을 보면 사무직의 경우 보육시설 이용률이 제일 높고, 유치원 사용률과 학원 이용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무직에 종사하는 어머니는 전적으로 규칙적인 전일보육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보육시설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 2. 初等學生 子女의 保育實態

### 가. 兒童의 年齡別 保育實態

아동의 연령별 保育實態를 살펴본 <表 VII-6>에 의하면 어머니의

취업여부와는 상관없이 어머니에 의해서만 보육되는 형태는 20% 미만인 반면 사설학원 이용률이 매우 높다. 취업모의 아동의 경우는 양육자가 없이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저학년의 경우는 4.4%가 고학년의 경우는 10.9%가 주양육자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表 VII-6〉 兒童의 學齡別 保育類型 및 施設利用率

(단위: 명, %)

보육유형 및 시설이용률	취업모		미취업모	
	저학년	고학년	저학년	고학년
대상아동수	639	676	843	694
보육유형 <sup>1)</sup>	(100.0)	(100.0)	(100.0)	(100.0)
양육자 없음	4.4	10.9	0.6	0.9
어머니만 담당	11.4	11.0	16.1	17.0
가족 및 가족외 <sup>2)</sup> 의 전적인 도움	2.5	2.0	0.5	0.2
시설에만 전적으로 의존				
방과후 아동교실/공부방	0.6	1.3	0.5	0.4
사설학원	24.6	26.7	9.4	11.2
어머니+가족 및 가족외의 도움	2.6	2.1	0.7	0.4
어머니+시설보육				
방과후 아동교실/공부방	2.4	2.7	2.4	3.0
사설학원	39.5	34.7	67.2	64.4
가족 및 가족외의 도움+시설보육				
방과후 아동교실/공부방	0.1	0.4	0.0	0.0
사설학원	10.6	6.5	1.3	0.8
2가지 이상의 시설보육	1.4	1.7	1.3	1.7
시설의 종류별 이용률 <sup>3)</sup>				
방과후 아동교실/공부방	4.7	6.6	6.1	6.0
학원	76.3	70.5	80.1	78.6

註: 1) 한 아동당 중요한 보육방법순으로 3가지를 조사하였는데, 조사된 아동의 5%만이 3가지 방법의 보육수단을 사용하고 있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가지 방법까지의 조합을 통하여 보육유형을 살펴보았음.

2) 파출부, 가정부, 이웃, 위탁모, 아동지도원 등 비가족원에 의해서 가정보육되는 경우

3) 각 시설 이용률은 조사된 보육방법 3가지 중 한 번이라도 언급된 경우를 포함하여 산출되었음.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자료

#### 나. 就業實態 및 家族形態에 따른 保育實態

초등학생 자녀의 保育實態를 분석한 결과는 <表 VIII-7>과 같다. 가장 많은 보육형태가 어머니와 사설학원 이용을 혼용하고 있는 경우로 37.2%에 달하고 있으며, 다음이 사설학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경우로 25.8%이다. 따라서 사설학원 이용률이 73.5%에 달하고 있다.

취업모가 일하는 동안 초등학교 자녀의 保育實態를 보면, 주양육자가 없는 경우가 7.7%에 달하고 있고, 핵가족인 경우는 사설학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가 확대가족의 2배인 27.9%에 달하고 있다. 이는 미취학아동의 경우보다도 두배 높은 수준이다. 그러나, 미취업모 아동의 경우는 가족형태별 보육유형의 차이가 매우 적으며 어머니와 더불어 사설학원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제일 흔한 유형으로 66.1%에 달하고 있다.

#### 다. 母의 教育水準에 따른 保育實態

어머니의 교육수준에 따른 초등학생의 방과후 保育實態를 보면 취업모의 경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양육자가 없이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졸 취업모인 경우 아동의 15.8%가 방과 후에 主養育者가 없이 방치되고 있다. 또한 어머니가 취업중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주양육자인 경우가 31.1%에 달하고 있다. 반면 고졸이하에 비하여 전문대졸 이상의 어머니를 둔 아동은 가족 및 가족 외의 도움을 받아서 가정에서 보육되고 있는 동시에 학원을 사용하는 유형을 많이 보이고 있어, 전문대 졸업의 경우는 23.6%, 대졸 이상의 경우는 15.4%에 이르고 있다. 또한 사설학원 이용률은 국졸 취업모의 경우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表 VII-8 참조).

〈表 VII-7〉 母의 就業有無와 家族形態別 保育類型 및 施設利用率  
(단위: 명, %)

보육유형 및 시설이용률	취업모			비취업모		
	전체	핵가족	확대가족	전체	핵가족	확대가족
대상아동수	1,308	1,107	200	1,534	1,395	139
보육유형 <sup>1)</sup>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양육자 없음	7.7	7.9	7.1	0.7	0.7	0.9
어머니만 담당	11.2	10.4	15.9	16.6	16.4	17.6
가족 및 가족외 <sup>2)</sup> 의 전적인 도움	2.1	1.8	3.9	0.3	0.2	1.7
시설에만 전적으로 의존						
방과후 아동교실/공부방	0.9	1.0	0.6	0.5	0.5	0.0
시설학원	25.8	27.9	14.1	10.2	10.3	9.0
어머니+가족 및 가족외의 도움	2.3	1.3	8.0	0.6	0.5	1.5
어머니+시설보육						
방과후 아동교실/공부방	2.5	2.9	0.8	2.7	2.6	3.5
시설학원	37.2	39.8	23.2	66.1	66.6	61.0
가족 및 가족외의 도움+시설보육						
방과후 아동교실/공부방	0.2	0.2	0.3	0.0	0.0	0.0
시설학원	8.3	5.3	25.0	0.9	0.7	2.5
2가지 이상의 시설보육이용	1.5	1.6	1.2	1.4	1.3	2.6
시설의 종류별 이용률 <sup>3)</sup>						
방과후 아동교실/공부방	5.7	6.3	2.8	6.0	5.9	8.0
학원	73.5	75.1	64.4	79.4	79.9	74.3

註: 1) 한 아동당 중요한 보육방법순으로 3가지를 조사하였는데, 조사된 아동의 5%만이 3가지 방법의 보육수단을 사용하고 있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가지 방법까지의 조합을 통하여 보육유형을 살펴보았음.

2) 파출부, 가정부, 이웃, 위탁모, 아동지도원 등 비가족원에 의해서 가정보육되는 경우.

3) 각 시설 이용률은 조사된 보육방법 3가지 중 한 번이라도 언급된 경우를 포함하여 산출되었음.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자료

〈表 VII-8〉 母의 教育水準別 保育類型 및 施設利用率

(단위: 명, %)

보육유형 및 시설이용률	취업모					미취업모				
	국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국졸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졸 이상
대상아동수	133	288	647	59	189	66	231	886	81	271
보육유형 <sup>1)</sup>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양육자 없음	15.8	13.1	5.0	4.5	4.5	5.3	0.5	0.7	0.0	0.0
어머니만 담당	31.1	13.0	8.6	5.7	5.4	35.6	28.2	13.9	14.6	11.2
가족 및 가족외 <sup>2)</sup> 의 전적인 도움	5.2	2.4	1.1	0.9	4.5	0.0	0.5	0.1	2.9	0.5
시설에만 전적으로 의존										
방과후 아동교실/공부방	0.9	1.4	1.1	0.0	0.0	0.0	1.4	0.5	0.0	0.0
사설학원	20.5	25.7	28.6	11.4	23.6	7.1	8.7	11.2	12.8	8.4
어머니+가족 및 가족외의 도움	3.9	1.5	2.8	0.0	1.8	1.6	1.2	0.3	0.0	0.9
어머니+시설보육										
방과후 아동교실/공부방	3.3	3.5	2.6	0.0	1.2	7.2	3.1	2.0	0.3	0.0
사설학원	18.0	34.8	39.9	52.2	39.4	39.1	10.7	8.9	8.4	5.3
가족 및 가족외의 도움+시설보육										
방과후 아동교실/공부방	0.0	0.4	0.1	0.0	0.7	0.0	0.0	0.0	0.0	0.0
사설학원	1.4	2.5	9.3	23.6	15.4	2.4	0.0	1.4	1.4	0.5
2가지 이상의 시설보육	0.0	1.7	1.1	1.8	3.6	1.7	3.1	1.4	0.0	0.4
시설의 종류별 이용률 <sup>3)</sup>										
방과후 아동교실/공부방	5.9	7.1	4.9	1.8	7.3	8.9	8.0	5.6	3.0	5.9
학원	38.8	64.9	80.1	89.1	82.3	52.2	67.0	83.1	79.8	84.0

註: 1) 한 아동당 중요한 보육방법순으로 3가지를 조사하였는데, 조사된 아동의 5%만이 3가지 방법의 보육수단을 사용하고 있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가지 방법까지의 조합을 통하여 보육유형을 살펴보았음.

2) 파출부, 가정부, 이웃, 위탁모, 아동지도원 등 비가족원에 의해서 가정보육되는 경우.

3) 각 시설 이용률은 조사된 보육방법 3가지 중 한 번이라도 언급된 경우를 포함하여 산출되었음.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자료

한편 미취업모의 경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어머니가 전적으로 보육하고 있는 비율이 높아 국졸의 경우 35.6%, 중졸이 28.2%, 고졸이 13.9%, 전문대졸이 14.6%, 대졸 이상이 11.2%이다.



#### 라. 就業母의 就業關聯 特性에 따른 保育實態 比較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 어머니의 취업관련 특성에 따른 保育實態를 살펴본 <表 VII-9>에 의하면, 미취학 아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영업자나 무급가족종사자의 경우 어머니에 의해서 전적으로 보육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취업관련 제특성과 관계없이 사설학원의 이용률이 매우 높은데 특히 고용주의 경우는 90.4%의 아동이 사설학원을 이용하고 있었다. 근로 시간별로 보면 36시간 미만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는 어머니의 보호와 더불어 사설학원을 보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비율이 높아 56.4%로 나타나고 있는데 비하여, 36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사설학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서 27.7%에 달하고 있다.

직업별로 보면 농업 및 어업 관련 직종의 경우가 양육자가 없거나 어머니에 의해서 보육되는 경우가 높아서, 각각 13.7%와 29.6%이다 (表 VII-10 참조). 또한 학원 이용률 또한 낮아서 43%이다. 시설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우는 판매직, 기능/조립직, 단순노무직의 경우 다른 직업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고위관리직 및 전문직, 준전문관리직, 사무직의 경우는 가족 및 가족외의 도움으로 인해 가정보육되면서 동시에 사설학원을 이용하는 경우가 타 직업에 비하여 높다. 특히 고위관리직 및 전문직의 경우는 27.5%에 달하고 있어 가장 흔한 방과후 보육유형으로 나타났다.

〈表 VII-9〉 就業母의 從事上の 地位 및 勤勞時間別 保育類型 및 施設利用率

(단위: 명, %)

보육유형 및 시설이용률	종사상의 지위					근로시간	
	고용주	사용고	임시. 일용고	자영 업자	무급 가족 종사자	36시간 미만	36시간 이상
대상아동수	44	280	400	209	382	298	977
보육유형 <sup>1)</sup>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양육자 없음	4.0	11.7	7.9	4.0	7.2	2.8	9.2
어머니만 담당	5.6	5.4	10.8	13.2	15.5	12.8	10.5
가족 및 가족외 <sup>2)</sup> 의 전적인 도움	0.0	5.1	1.8	1.8	1.3	0.6	2.9
시설에만 전적으로 의존							
방과후 아동교실/공부방	0.0	0.5	1.0	2.5	0.5	1.0	0.8
시설학원	32.9	22.6	23.3	29.7	27.4	18.7	27.7
어머니+가족 및 가족외의 도움	0.0	3.1	2.0	0.9	3.3	0.6	3.0
어머니+시설보육							
방과후 아동교실/ 공부방	0.0	1.5	2.3	3.8	3.2	2.0	2.8
시설학원	38.8	28.1	45.3	37.9	34.3	56.4	31.3
가족 및 가족외의 도움+시설보육							
방과후 아동교실/ 공부방	0.0	0.5	0.0	0.6	0.2	0.0	0.3
시설학원	18.8	20.1	4.1	4.6	5.6	3.1	10.0
2가지 이상의 시설보육	0.0	1.5	1.7	1.2	1.7	1.9	1.5
시설의 종류별 이용률 <sup>3)</sup>							
방과후 아동교실/공부방	0.0	5.0	5.2	8.3	6.0	5.4	5.9
학원	90.4	73.2	75.1	74.0	69.1	79.6	71.5

註: 1) 한 아동당 중요한 보육방법순으로 3가지를 조사하였는데, 조사된 아동의 5%만이 3가지 방법의 보육수단을 사용하고 있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가지 방법까지의 조합을 통하여 보육유형을 살펴보았음.

2) 파출부, 가정부, 이웃, 위탁모, 아동지도원 등 비가족원에 의해서 가정보육되는 경우.

3) 각 시설 이용률은 조사된 보육방법 3가지 중 한 번이라도 언급된 경우를 포함하여 산출되었음.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자료

<表 VII-10> 就業母의 職業別 保育類型 및 施設利用率

(단위: 명, %)

보육유형 및 시설이용률	고위 관리 및 전문직	준전문 관리직	사무직	판매직	농어촌	기능/ 조립직	단순 노무직
대상아동수	78	105	76	538	144	188	163
보육유형 <sup>1)</sup>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양육자 없음	6.0	2.4	10.7	4.8	13.7	9.7	12.0
어머니만 담당	4.9	8.4	1.5	10.0	29.6	9.2	12.5
가족 및 가족외 <sup>2)</sup> 의 전적인 도움	5.9	1.2	2.1	1.5	3.1	3.6	1.9
시설에만 전적으로 의존							
방과후 아동교실/공부방	0.0	0.0	0.0	1.3	1.2	0.3	1.9
사설학원	17.3	19.5	16.2	30.6	17.7	28.8	23.6
어머니+가족 및 가족외의 도움	4.4	0.0	1.6	1.6	5.6	0.9	4.7
어머니+시설보육							
방과후 아동교실/공부방	1.6	1.1	4.7	2.6	3.9	2.5	1.2
사설학원	27.5	51.8	43.2	39.1	18.5	37.5	37.3
가족 및 가족외의 도움+시설보육							
방과후 아동교실/공부방	1.7	0.0	0.0	0.3	0.0	0.0	0.0
사설학원	27.5	12.1	18.7	7.3	5.6	6.0	3.4
2가지 이상의 시설보육	3.7	3.6	1.4	0.9	1.2	1.5	1.7
시설의 종류별 이용률 <sup>3)</sup>							
방과후 아동교실/공부방	8.1	4.7	6.1	5.3	6.6	4.3	6.7
학원	77.2	87.1	84.2	78.6	43.0	73.7	65.5

註: 1) 한 아동당 중요한 보육방법순으로 3가지를 조사하였는데, 조사된 아동의 5%만이 3가지 방법의 보육수단을 사용하고 있었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가지 방법까지의 조합을 통하여 보육유형을 살펴보았음.

2) 파출부, 가정부, 이웃, 위탁모, 아동지도원 등 비가족원에 의해서 가정보육되는 경우

3) 각 시설 이용률은 조사된 보육방법 3가지 중 한 번이라도 언급된 경우를 포함하여 산출되었음.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자료

### 3. 保育施設 未利用 理由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그 이유를 살펴보면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은 본인 또는 가까운 사람이 돌보는 것이 안심이기 때문으로 46.4%이며, 다음이 학원/유치원의 교육적 효과가 크기 때문으로 23.7%, 만 2세 미만이라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이 10.6%로 나타났다.

이를 아동의 연령별로 보면 연령별 미사용 이유가 매우 다름을 알 수 있다. 연령이 어릴수록 본인이나 가까운 사람이 돌보는 것이 안심이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 2세 미만이라서 보육시설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보내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0세 영아의 경우 23.6%, 1세의 경우 28.1%로 나타났다. 반면 3세 이상 유아의 경우는 학원이나 유치원이 더 교육적 효과가 크다고 판단하여 보육시설 대신 유치원·학원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유치원에 대한 선호는 향후 보육시설 이용희망율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현재 유치원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의 보육시설 이용희망율은 37.7%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현재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는 대부분이 계속 이용하겠다고 응답하고 있다. 또한 현재 어머니가 보육을 담당하는 경우도 65.8%가 앞으로 보육시설을 사용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어서 잠재적인 보육시설 추가 이용이 있을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상의 分析에서 나타난 結果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령에 따른 보육방식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2세 미만 영아의 경우는 어머니의 취업유무와는 상관없이 대부분이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다. 2세의 경우는 어머니가 취업중인 경우는 급격히 시설이용률이 증가하여 특히 보육시설 이용률이 높다.

〈表 VII-11〉 兒童의 年齡別 保育施設 未利用 理由

(단위: 명, %)

이 유	전체	0세	1세	2세	3세이상
대상아동수	2,894 (100.0)	485 (100.0)	512 (100.0)	451 (100.0)	1,445 (100.0)
본인/가까운 사람이 돌보는 것이 안심되므로	46.4	72.6	66.8	63.0	25.2
가까운 곳에 아이를 돌봐줄 곳이 없어서	8.1	1.6	1.4	6.5	13.2
만2세 미만이라서 받아주지 않음	10.6	23.6	28.1	10.0	0.3
학원/유치원의 교육적 효과	23.7	0.0	0.2	4.0	46.2
보육료 부담	5.5	0.7	1.6	8.5	7.5
기타	5.7	1.5	1.9	8.0	7.6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자료

〈表 VII-12〉 現在 保育形態別 保育施設 利用計劃

(단위: 명, %)

보육형태	대상 아동수	이용 하겠다	이용하지 않겠다	모르겠다
전체	2,443(100.0)	62.6	31.1	6.4
어머니 담당	1,666(100.0)	65.8	28.0	6.2
가족 및 가족외 전적인 도움	185(100.0)	73.0	20.0	7.0
유치원	305(100.0)	37.7	55.1	7.2
보육시설	174(100.0)	87.9	8.6	3.5
사설학원	113(100.0)	26.5	64.7	9.1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자료

3세 이상 유아의 경우는 어머니의 취업유무와는 상관없이 가정양육의 비율이 매우 낮고 절반 정도가 유치원을 통하여 보육되고 있다. 반면 초등학생의 경우는 사설학원 이용률이 높다. 이는 보육시설 미이용 이유에도 반영되어 영아의 경우는 본인이나 가까운 사람이 돌보는 것이 안심이 되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아이를 보내지 않으며, 3세 이상의 유아의 경우에는 교육적인 이유로 유치원이나 학원에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의 연령에 따른 부모의 보육에 대한 기대의 내용이 다르며, 따라서 이러한 아동의 연령에 따른 보육서비

스 제공의 방법과 수단이 달라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둘째, 취업모의 경우 미취업모에 비하여 보육시설의 이용도가 높으며 특히 전적으로 보육시설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 반면 미취업모는 보육시설을 보충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보육시설에 비하여 유치원을 선호하고 있다.

셋째, 취업모의 경우 가족형태에 따른 보육형태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즉, 핵가족에 비하여 확대가족인 경우 미취학 아동은 가정양육이 높게 나타나고,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도 가정양육에 병행하여 사설학원을 이용하는 유형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핵가족의 아동에 대한 보육문제에 큰 관심이 두어져야 함을 볼 수 있다.

넷째,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으면 미취학 아동과 초등학교 학생 모두 어머니에 의해서 전적으로 양육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 양육자 없이 방치되는 비율도 높아서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주간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경우 어머니가 전적으로 아동의 양육을 맡고 있는 경우가 높고, 36시간 이상인 경우는 가족 및 가족외 성원에 의하여 가정에서 양육되고 있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농어촌/단순노무직 종사자의 아동은 어머니에 의해서 양육되는 비율이 높고, 고위관리직 및 전문직, 사무직의 경우 가족의 도움과 시설양육을 병행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 VIII. 保育政策方案

### 1. 要約

#### 가. 政策目標別 保育서비스 對象의 規模

앞에서 살펴본 보육수요의 규모를 보육정책의 목표별로 정리하면 <表 VIII-1>과 같다. 보육대상자의 규모는 첫째 정부의 보육정책이 지향하는 목표, 즉 아동복지의 증진을 위한 것으로 보는지, 아니면 취업여성의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한 수단인지, 또는 계층불평등을 해소시키는 제정책중의 하나로 파악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진다. 둘째, 보육서비스의 대상을 파악함에 있어서 시설보육에의 요구가 있는 가정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모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할 것인지 하는 것이다. 시설보육에의 요구가 있는 가정의 아동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곧, 현재의 상황에서 가족성원의 도움에 의존한다던가, 취업중인 어머니가 일과 함께 아동의 양육을 병행하고 있는 현 보육실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개인 또는 가족의 도움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사회보육이 가정보육보다 아동복지를 위해 바람직하다고 판단한다면 대상연령층의 모든 아동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정책목표로 설정해야 할 것이며, 이 때 미취학 아동은 약 395만 8,500명, 초등학교 연령층은 약 359만 8,300명으로 추정된다. 만일 국가의 보육정책이 보육시설의 사용을 희망하는 취업여성의 아동과 보육문제 때문에 취업을 못하고 있는 기혼여성의 보육시설 이용희망을 고려하여 파악된 보육시설 이용희망 아동 모두에게 보육시설을 제공할 것을 정책

목표로 설정하는 경우의 미취학 아동의 규모는 약 210만명 정도로 전 연령층의 53%이며, 초등학교 학생의 경우는 약 97만명으로 해당 연령층의 27%에 달한다.

〈表 VIII-1〉 政策目標別 保育施設需要

정책목표	미취학 아동	초등학교 연령층
(1) 보편적 보육수요: 모든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	3,958,546 (100.0)	3,598,335 (100.0)
(2) 잠재적 취업을 고려한 주관적 수요: 실제적 보육시설 사용희망여성 및 잠재적인 사용 희망 여성의 아동	2,097,881 ( 53.0)	968,673 ( 26.9)
(3) 대리보육수요: 취업여성의 모든아동	1,710,760 ( 43.2)	1,941,286 (53.9)
(4) 주관적 대리보육수요: 보육시설의 사용을 희망하는 취업여성의 아동	1,111,006 ( 28.1)	630,990 ( 17.5)
(5) 기본보육수요: 저소득층 취업여성의 모든아동	293,939 ( 7.4)	405,377 ( 11.3)
(6) 주관적 기본보육수요: 보육시설의 사용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취업여성의 아동	165,212 ( 4.2)	124,998 ( 3.5)

셋째, 취업여성의 모든 아동에게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보육서비스의 제공을 목표로 한다면, 그 규모는 미취학아동이 171만명, 초등학생이 194만명으로 각각 해당 연령군의 43%와 54%로 파악되었다. 넷째, 현재 보육시설의 이용을 희망하는 취업여성의 아동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목표로 하는 경우는 미취학 아동 약 111만명과 초등학생 63만명으로 해당 연령군의 28%와 18%이다. 다섯째, 저소득층 취업여성의 모든 아동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 기본보육수요의 관점에서 정책을 수립한다면 보육서비스 대상의 규모는 미취학아동 약 29만명과 초등학생 약 41만명으로 해당 연령군의 7.4%와 11.3%이다. 마지막으로 보육서비스가 보육시설의 사용을 희망하는 저



소득층 취업여성의 아동에게 제공되어야 한다고 목표를 설정한다면  
보육서비스 대상규모는 미취학아동 약 17만명과 초등학생 12만명으로  
각 해당 연령군의 4%이다.

#### 나. 地域別 保育서비스 提供實態

각 정책목표별로 추정된 보육대상 아동규모 대비 현재 보육시설에  
서 보육되고 있는 미취학 아동의 규모를 계산한 <表 VIII-2>에 의하면,  
현재 보육시설의 공급규모는 경기도를 제외하고는 기본보육의 충족이  
이루어지는 상태로, 즉 저소득층 취업모의 아동을 보육할 수 있는 규  
모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시급한 과제는 보육시설의  
이용을 희망하는 취업여성의 자녀를 보육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을 확  
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보육시설에서 보육되고 있는 아동은  
약 40만 3천명으로 약 70만 9천명을 보육할 수 있는 보육시설의 확충  
이 필요하다(表 VIII-3 참조). 즉, 현재 규모의 약 1.8배의 보육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이를 지역별로 보면 그 규모가 가장 큰 지역은 경  
기도로 15만 6천여명의 아동을 보육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확충되어  
야 한다. 다음으로는 서울특별시로 15만명의 아동을 보육할 수 있는  
보육시설이 확충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보육시설의 공급규모는 아동의 연령에 따라서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 2세 미만인 영아의 경우는 서울을 제외하고는 보육서비  
스가 저소득층 기혼취업여성중 보육시설의 이용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취업여성의 아동에게도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국적으로  
2세 미만 영아의 주관적 기본보육수요 충족률은 47.4%에 불과하다.

〈表 VIII-2〉 市·道別 年齡別 觀點別 保育充足率

(단위: 명, %)

## (1) 0~5歲 兒童

지역	보편적	잠재적 취업을	대리	주관적	기본	주관적
	보육수요	고려한 주관적 수요		보육수요		대리보육수요
전국	9.9	19.2	23.6	36.3	137.1	243.9
서울	11.1	20.9	25.3	38.7	210.0	375.0
부산	10.1	22.6	25.6	39.6	142.8	255.2
대구	9.3	17.1	20.6	31.7	126.5	226.2
인천	7.4	14.6	18.6	28.8	105.8	189.0
광주	8.3	24.4	29.4	45.3	199.9	353.5
대전	7.5	15.4	20.2	31.2	162.8	291.8
경기	8.0	15.6	19.8	30.5	76.2	134.5
강원	12.5	24.3	29.6	45.8	171.4	304.8
충북	14.9	28.6	35.3	54.4	174.9	312.2
충남	12.2	22.8	26.8	41.6	221.5	400.6
전북	12.0	22.2	26.0	40.1	202.6	360.7
전남	12.3	23.7	28.8	44.6	246.5	445.4
경북	8.0	15.0	18.0	27.9	114.6	205.2
경남	8.1	16.0	20.6	31.7	115.7	205.6
제주	19.0	34.3	39.7	60.9	206.0	362.7

## (2) 2歲 未滿 嬰兒

지역	보편적	잠재적 취업을	대리	주관적	기본	주관적
	보육수요	고려한 주관적 수요		보육수요		대리보육수요
전국	1.9	3.2	4.9	6.5	31.5	47.4
서울	3.3	5.1	7.8	10.2	77.5	116.6
부산	2.1	3.6	5.7	7.6	35.7	53.8
대구	1.7	2.7	4.0	4.9	28.1	42.2
인천	1.9	3.2	5.2	6.9	33.1	49.8
광주	1.9	3.1	4.7	6.2	33.7	50.7
대전	1.1	1.9	3.2	4.2	29.5	44.4
경기	1.2	2.0	3.2	4.2	12.8	19.3
강원	1.9	3.2	5.0	6.6	30.4	45.7
충북	2.0	3.2	5.0	6.6	28.6	43.1
충남	2.1	3.4	5.2	6.8	51.6	77.7
전북	1.8	2.9	4.2	5.5	36.0	54.1
전남	1.1	1.9	2.9	3.8	30.2	45.4
경북	1.0	1.7	2.6	3.4	17.9	27.0
경남	1.3	2.1	3.4	4.5	21.1	31.7
제주	3.3	5.2	7.5	9.9	41.2	62.1

(3) 2歲 嬰兒

지역	보편적	잠재적 취업을		대리	주관적	기본	주관적
	보육수요	고려한	주관적 수요	보육수요	대리보육수요	보육수요	기본 보육수요
전국	8.8	14.2		21.3	26.4	78.8	179.4
서울	11.8	18.0		27.2	33.7	235.8	333.1
부산	8.1	26.0		21.0	26.0	120.5	170.3
대구	9.2	13.8		21.0	26.0	135.6	191.6
인천	7.2	11.4		18.4	22.07	106.3	150.1
광주	11.0	16.5		25.1	31.1	170.5	240.7
대전	7.6	12.6		21.0	25.9	175.3	247.7
경기	5.7	9.0		14.5	18.0	55.9	79.0
강원	11.6	18.4		28.4	35.1	170.4	240.7
충북	13.2	20.5		32.0	39.6	162.2	229.1
충남	11.0	16.6		24.8	30.7	215.0	303.7
전북	9.6	14.3		21.2	26.3	170.3	240.6
전남	7.9	12.3		19.1	23.6	173.6	245.1
경북	6.2	9.4		14.5	18.0	94.1	132.9
경남	7.0	11.1		18.1	22.4	104.1	147.1
제주	19.6	28.9		41.9	51.8	217.3	306.6

(4) 3歲 以上 幼兒

1) 保育施設

지역	보편적	잠재적 취업을		대리	주관적	기본	주관적
	보육수요	고려한	주관적 수요	보육수요	대리보육수요	보육수요	기본보육수요
전국	15.7	37.5		35.4	66.3	193.4	414.2
서울	16.5	39.1		36.0	67.6	266.7	571.0
부산	16.0	39.9		38.5	72.2	200.5	429.3
대구	14.4	33.1		30.4	57.0	171.6	367.4
인천	11.1	27.0		26.3	49.3	140.0	299.7
광주	21.8	49.8		45.4	85.3	299.1	640.6
대전	11.9	30.3		29.8	56.0	220.1	47.1
경기	13.2	32.3		31.4	58.9	117.8	252.2
강원	19.7	47.1		43.7	82.0	245.0	524.5
충북	24.1	57.8		54.6	102.4	248.4	531.8
충남	19.2	43.5		39.0	73.2	291.5	624.2
전북	19.7	44.9		40.5	75.9	295.9	633.8
전남	21.0	49.9		46.5	87.2	355.6	761.4
경북	13.2	30.0		27.1	50.9	165.9	355.3
경남	13.0	32.1		31.6	59.2	167.3	358.4
제주	30.2	67.7		59.3	111.3	296.8	635.4

## 2) 幼稚園 就園 包含

지역	보편적 보육수요	잠재적 취업을 고려한 주관적 수요	대리 보육수요	주관적 대리보육수요	기본보육 수요	주관적 기본보육수요
전국	43.1	103.2	97.2	237.0	531.8	1138.8
서울	41.4	98.4	90.6	170.0	671.0	1436.8
부산	42.9	106.6	102.9	193.1	536.2	1148.2
대구	39.6	90.9	83.3	156.3	470.6	1007.6
인천	34.5	84.2	126.3	153.6	436.3	934.1
광주	45.1	103.0	93.9	176.2	618.2	1324.1
대전	42.7	108.5	106.9	200.6	788.6	168.8
경기	38.9	95.4	92.6	173.8	347.6	744.3
강원	51.3	122.9	114.0	214.0	638.8	1367.8
충북	55.9	133.9	126.5	237.3	575.7	1232.6
충남	51.4	116.7	104.6	196.3	781.3	1673.2
전북	49.3	112.5	101.3	190.1	741.2	1587.4
전남	52.8	125.8	117.0	219.6	895.5	1917.1
경북	46.5	105.7	96.0	180.1	586.8	1256.6
경남	43.7	107.8	105.8	198.5	561.2	1201.8
제주	57.0	127.7	111.9	210.0	559.9	1198.5

〈表 VIII-3〉 市·道別 保育施設擴充 規模

(단위: 명)

지역	주관적 대리보육수요	보육 아동수	추가보육대상 아동수
전국	1,111,006	403,001	1,111,006
서울	246,010	95,143	246,010
부산	77,897	30,842	77,897
대구	63,631	20,202	63,631
인천	65,578	18,870	65,578
광주	35,675	16,154	35,675
대전	29,792	9,288	29,792
경기	225,146	68,735	225,146
강원	31,574	14,446	31,574
충북	33,071	17,982	33,071
충남	39,251	16,340	39,251
전북	44,832	17,994	44,832
전남	43,751	19,494	43,751
경북	62,040	17,321	62,040
경남	97,608	30,942	97,608
제주	15,150	9,228	15,150

2세 영아의 경우는 저소득층 취업모의 아동을 겨우 보호할 수 있는 규모의 보육시설이 있으며, 경북과 경기도의 경우는 현재 보육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이 저소득층 취업모 아동의 94%와 55.9%에 머물고 있어 생존을 위해 취업을 해야만 하는 저소득층 취업모의 아동조차도 충분히 보육할 수 없는 실정이다.

3세 이상의 유아인 경우는 보육시설에 의한 기본보육의 충족이 이루어지고 이에 유치원 취원아동까지 고려하면 주관적인 대리보육, 즉 보육시설의 사용을 희망하는 취업여성의 아동을 충분히 보육할 수 있는 수준이다.

한편, 초등학생을 위한 방과후 아동보육은 실시 초기단계이며, 따라서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방과후 보육서비스의 공급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방과후 보육을 위한 전담보육시설은 48개소가 있고, 292개의 사회복지관중 일부가 방과후 보육을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과후 보육서비스의 확대를 위하여, 방과후 보육을 위해 활용될 수 있는 시설로는 전국 12,098개소의 보육시설이 있고, 방과후 아동교실 실시가 가장 손쉬운 국·공립보육시설은 총 보육시설의 8.9%에 해당하는 1,079개소이다. 또한 방과후 초등학생을 보육하기 위해 이용될 수 있는 공공기관에는 5,721개의 초등학교, 54,600여개의 종교시설, 58,134개소의 학원 등이 있다.

## 2. 政策建義

### 가. 年齡別 特性을 考慮한 保育政策樹立

현재의 보육시설은 저소득층 취업모의 미취학 아동을 보육할 수 있는 규모의 보육시설만이 설치되어 있는 상황으로 시급한 과제는 미취

학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를 취업여성으로서 보육시설의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그들의 자녀를 충분히 보육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보육시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보육서비스의 약 1.8배에 해당하는 보육서비스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편, 현재 보육시설에서 보육되고 있는 아동은 연령에 따라서 보육충족률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보육정책을 수립하여야만 효율적인 보육시설의 확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령에 따라 중점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정책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 1) 嬰兒保育의 全幅的인 擴大

현재 보육시설에서 보육되고 있는 아동은 연령에 따라서 보육충족률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영아의 保育未充足率(unmet needs)이 높고, 특히 2세 미만 영아의 보육미충족율이 매우 높다. 이러한 원인은 무엇보다도 보육서비스의 공급 측면에서 찾아질 수 있다. 보육서비스의 대상으로 파악된 아동의 연령구성비에 비하여 보육사업지침에서 권유하고 있는 보육정원에 나타난 영아의 비중이 매우 낮다(表 VIII-4와 表 VIII-5 참조). 보육사업지침에 의하면 보육시설규모에 따라서 2세 미만 아동의 비율이 전체보육정원의 6.3~9.6%, 2세 영아의 경우는 13.5~17.7%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보육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를 갖고 있는 아동중 2세 미만 아동의 비율은 관점에 따라서 28.0~39.2%를, 2세 영아의 경우는 16.5~21%를 차지하고 있다. 즉, 2세 영아의 경우는 규정상 비교적 수요에 상응하는 서비스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지만, 2세 미만 영아의 경우는 실제 보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비하여 너무 적은 비중의 정원이 배정되어 있는 것이다. 즉, 실제 수요중 2세 미만 아동이

차지하는 비중의 약 1/4정도만이 보육정원상 인정되고 있어서, 2세 미만 아동의 보육정책이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表 VIII-4〉 保育事業指針上の 保育施設 規模別 保育施設の 班編成  
(단위: 명, %)

보육시설규모	보육정원	2세 미만	2세	3세 이상
유형 1	52(100.0)	5( 9.6)	7(13.5)	40(76.9)
유형 2	79(100.0)	5( 6.3)	14(17.7)	60(75.9)
유형 3	104(100.0)	10( 9.6)	14(13.5)	80(76.9)
유형 4	131(100.0)	10( 7.6)	21(16.0)	100(76.3)
유형 5	156(100.0)	15( 9.6)	21(13.5)	120(76.9)
유형 6	183(100.0)	15( 8.2)	28(15.3)	140(76.5)

註: 1개반 인원은 2세 미만이 5명, 2세가 7명, 3세 이상이 20명으로 규정되어 있음.

資料: 보건복지부, 『1997년도 보육지침』, 1996.

〈表 VIII-5〉 觀點別 保育對象 兒童의 年齡別 構成比  
(단위: 명, %)

정책목표	0~5세	2세 미만	2세 영아	3세 이상
(1) 모든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	3,958,546 (100.0)	1,319,305 (33.3)	684,717 (17.3)	1,954,524 (49.4)
(2) 실제적 보육시설 사용희망여성 및 잠재적인 사용 희망 여성의 아동	2,097,881 (100.0)	822,280 (39.2)	435,107 (20.7)	840,494 (40.1)
(3) 취업여성의 모든아동	1,710,760 (100.0)	529,765 (31.0)	288,848 (16.9)	892,150 (52.1)
(4) 보육시설의 사용을 희망하는 취업여성의 아동	1,111,006 (100.0)	402,101 (36.2)	233,389 (21.0)	475,516 (42.8)
(5) 저소득층 취업여성의 모든아동	293,939 (100.0)	82,351 (28.0)	48,529 (16.5)	163,059 (55.5)
(6) 보육시설의 사용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취업여성의 아동	165,212 (100.0)	54,705 (33.1)	34,359 (20.8)	76,149 (46.1)

따라서 보육지침상 보육정원의 연령별 구성이 현실적인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보육지침상 보육정원중 2

세 미만 아동의 구성비를 증대시켜야 한다. 그 수준은 현재 보육서비스가 기본보육은 충족시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취업여성의 아동중 2세미만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인 28%보다는 높아야 한다. 또한, 지향하는 정책의 목표가 보육시설의 이용을 희망하는 취업여성의 아동을 보육할 수 있는 규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책목표에 기초하여 파악된 미취학 아동대비 2세 미만 아동의 비율인 36.2% 사이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보육사업지침상의 제한점 뿐만 아니라 보육사업지침에서 권유하고 있는 지침이 실제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보육사업지침에서 제시된 기준에 비하여 실제로 전체 보육정원중 영아가 차지하는 비율이 낮기 때문이다(表 VIII-6 참조). 보육사업지침에 의해 제시된 2세 미만 아동의 비율이 6.3~9.6%임에 비하여 실제로 보육되고 있는 아동의 6.4%만이 2세 미만 아동으로 지침상의 최저수준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保育施設 未利用 이유에서도 나타나 2세 미만 영아의 경우 약 1/4이 보육시설에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보육시설에 보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表 VII-11 참조).

실제로 보육되고 있는 아동중 2세미만 아동의 비율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10.1%, 인천이 8.4%, 부산이 6.8%로 평균을 웃돌고 있을 뿐 나머지 12개 시·도는 규정상의 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 2세 영아의 경우는 지침상 규정의 중간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비교적 지침이 준수되고 있는 편이다. 그러나 역시 7개 시·도가 평균수준 이하이며, 전남의 경우는 11%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보육지침상 보육정원중 2세 미만 아동의 구성비 증대와 더불어 지침의 규정에 따라서 영아반이 운영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한편, 이들 연령군의 보육실태를 보면 주로 가족성원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취업모인 경우 특히 가족성원의 도움에 의해서 가정



내에서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 가장 많이 지적된 미사용 이유가 가까운 사람이 양육하는 것이 안심이 되기 때문이다<sup>24)</sup>. 즉, 아직 시설보육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表 VIII-6〉 市·道別 保育兒童의 年齡別 構成比

(단위: 명, %)

지역	0~5세	2세 미만	2세	3세 이상
전국	403,001(100.0)	25,955( 6.4)	61,614(15.3)	315,432(78.3)
서울	95,143(100.0)	9,563(10.1)	17,447(18.3)	68,133(71.6)
부산	30,842(100.0)	2,088( 6.8)	4,243(13.8)	24,511(79.5)
대구	20,202(100.0)	1,226( 6.1)	3,458(17.1)	15,518(76.8)
인천	18,870(100.0)	1,578( 8.4)	3,151(16.7)	14,141(74.9)
광주	16,154(100.0)	794( 4.9)	2,344(14.5)	13,016(80.6)
대전	9,288(100.0)	443( 4.8)	1,620(17.4)	7,225(77.8)
경기	68,735(100.0)	3,446( 5.0)	8,495(12.4)	56,794(82.6)
강원	14,446(100.0)	735( 5.1)	2,313(16.0)	11,398(78.9)
충북	17,982(100.0)	791( 4.4)	2,790(15.5)	14,401(80.1)
충남	16,340(100.0)	919( 5.1)	2,518(14.0)	12,903(71.8)
전북	17,994(100.0)	895( 5.0)	2,471(13.7)	14,628(81.3)
전남	19,494(100.0)	590( 3.0)	2,154(11.0)	16,750(85.9)
경북	17,321(100.0)	726( 4.2)	2,291(13.2)	14,304(82.6)
경남	30,942(100.0)	1,583( 5.1)	4,657(15.1)	24,702(79.8)
제주	9,228(100.0)	558( 6.0)	1,662(18.0)	7,008(75.9)

資料: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1996. 4.

24)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선진국에서는 1세 미만의 영아에 대해서는 아동과 모성의 건강을 보호하고 가족이 새로이 탄생한 아동에게 적응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폭넓게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큰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가 확립·확대될 경우 시설보육에의 욕구는 저하될 것이며 이는 1세 미만 영아에 대한 시설보육을 위한 공급의 규모를 결정함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기는 하지만 후속연구를 통해서 1세 미만의 영아를 위해서 출산·육아휴직제도와 보육시설의 확대의 상대적인 이점과 사회경제적인 비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무엇보다 먼저 신뢰할 수 있는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호자로부터 신뢰를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시설보강을 통해 안심하고 영아를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영아전담시설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는 경기, 경남, 제주에 2개소, 서울에 1개소로 전국에 7개소만이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적어도 모든 시·도에 영아전담시설이 1개소 이상 설치되도록 정책적인 배려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현재 영아전담시설에 대해서는 국고보조보육시설의 경우 신·증·개축비의 우선지원, 영아보육에 따른 보육교사 소요 인건비의 100%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 보육시설에는 국민연금기금에서 설치비를 우선 용자해주고 있고<sup>25)</sup> 종교·학교시설 부설 보육시설에 준하여 최대 보육교사 3명의 인건비를 지원해주며, 교재·교구비를 1개소당 연간 12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세 미만 영아반의 경우 교사당 아동수가 제한되어 있어 인건비가 큰 부담이 되고 있다(서울시정개발연구원, 1994). 따라서 현재 국공립 또는 법인운영 보육시설에 지원되고 있는 인건비 보조를 모든 보육시설에 확대하도록 하며, 모든 2세 미만의 영아반 담당 교사에 대한 인건비가 지급될 수 있도록 보조의 범위가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 2) 幼兒保育을 위한 綜合的 對策 樹立

1997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에 의하면 3세 이상 유아의 경우 유치원이용률은 47%, 사설학원은 26%, 보육시설 이용률은 17.3%이다. 즉, 유치원, 보육시설, 사설학원이 상호보완적으로 3세 이상의 유아를 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25) 1998년도부터는 국민연금기금으로부터의 용자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라서 보육시설만을 유일한 보육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간주하여 시설의 확충계획을 세운다면 자칫 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의 과잉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제한된 재원의 효과적인 이용을 저해할 수 있다.

한편, 정책목표별 보육충족률을 살펴보면 보육시설에서 보육되고 있는 아동만을 기준으로 할 경우는 기본보육수요를 충족시키는 수준이지만, 유치원의 취원아동까지 포함하면 거의 모든 시·도에서 대리보육수요가 충족되고 있다(表 VIII-2 참조). 그러나, 반일반이 주종을 이루는 유치원이 취업모의 보육요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이는 1997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에서도 나타나, 유치원과 학원의 경우는 그 이용률이 어머니의 취업유무와는 관계없는데 비하여 보육시설은 취업모에게서 그 이용률이 높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볼 때 무엇보다도 기존시설의 효율적 활용이 요구된다 하겠다. 보육시설은 유연한 보육시간, 주말 보육 등과 같은 취업모의 욕구에 상응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유치원의 경우 종일반의 확대를 통하여 취업모의 보육요구에 상응하는 서비스를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즉, 기존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하여 취업모의 보육요구에 상응하는 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보육시설 뿐만 아니라 유치원까지 포함하여 살펴보면 모든 시·도에서 대리보육수요가 충족되고 있기 때문에 유아 보육은 이제 보편적 보육수요의 충족이라는 목표를 지향해야 할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3세 이상 유아에 대한 사회보육이 일반화 되어있다. 그러나 어떠한 기관을 통하여 보육서비스가 제공되는가는 상이하다. 즉, 스웨덴은 보육시설을 중심으로, 프랑스는 유치원을 중심으로 보육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미국이나 일본은 보육시설과 유치원으로 이원화 되어있다(한혜경 외, 1996). 따라서 이제는 3세 이상 유아에 대한

보편적 보육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즉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어떠한 관계를 갖고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가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 나. 關聯 部處間의 協助體系 構築

아동의 보육실태에 나타난 것처럼 미취학 아동의 보육유형은 매우 다양하여, 보육시설, 유치원, 사설학원 등이 서로 상이한 역할을 수행하며 상호보완적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보육실태에 상응하고 효율적인 보육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간의 협조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먼저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유치원 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기초로한 보육시설 확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보육시설에 교육기능 강화와 사설학원의 보육기능 강화가 요구된다. 3세 이상 아동의 경우 절반 정도가 보육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이유로 학원이나 유치원이 교육적 효과가 크기 때문이라고 응답하고 있다. 이는 보호자의 입장에서 볼 때 유아보육에서 교육기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고 있고, 보육시설에 비하여 유치원이나 학원이 그러한 기능을 더 잘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보육시설에서도 유아보육의 경우 교육기능을 강화하여 보호자로부터 신뢰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양질의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

또한, 3세 이상 유아의 보육에 있어서 학원도 상당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사설학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들 사설학원이 주로 교육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볼 때 아동복지의 증진을 위해서는 보호기능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보육시설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와 유치

원 및 사설학원을 지도·감독하고 있는 교육부와의 긴밀한 협조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초등학생에 대한 방과후 보육의 규모는 아직 미미한 상태이다. 전국적으로 방과후 보육 전담시설은 48개에 불과하나, 사회복지관 중 상당수가 방과후 아동지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여 방과후 아동들을 보육하고 있는 공부방이 1996년 현재 전국에 75개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sup>26)</sup>. 이렇게 초등학생의 방과후 아동교실/공부방의 수가 미미하기 때문에, 초등학생중 6%만이 방과후 아동교실 또는 공부방을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방과후 아동교실을 사용하겠다는 비율이 프로그램이 좋으면 사용하겠다는 경우까지 합하면 약 80%에 달하고 있어, 이러한 대 규모의 수요에 상응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초등학교에 기초를 둔 방과후 아동지도가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초등학교를 관장하고 있는 교육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현재 3개(안산, 상암, 돈암)의 초등학교에서 방과후 아동교실을 개설하고 있으며, 교육부는 각 학교시설을 활용, 방과후 아동의 사교육비를 줄이고 부족한 학습을 보완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활동”을 1994년도부터 실시하여 현재 초등학교의 81.9%에 해당하는 4,873개교가 시행중에 있다.

그러나, 현재의 “초등학교 방과후 교육활동”은 하루에 1~2시간 동안만 이루어지고 주로 교육에만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방과후 보육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보호와 교육의 기능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편, 사설학원도 방과후 아동의 보호·교육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현재 초등학생의 경우 80% 내외가 사설학원을 이용하고 있

26) 도입단계에 불과하여 방과후 아동지도를 실시하고 있는 기관에 대한 공식적인 실태 파악이 되지 않고 실정이다.

다. 따라서 초등학교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단시간의 교육활동이 아니라 보호와 교육이라는 통합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보육시설, 사회복지관, 공부방, 종교시설, 초등학교 관계자의 협조아래 업무의 분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다. 地域別 特性에 따른 保育政策의 優先順位의 設定

보육수요의 파악과 보육서비스의 실태에 기초하여 볼 때 지역별로 그 보육서비스 공급상황은 상이하므로 따라서 지역적 상황에 맞는 보육정책의 우선순위 설정이 필요하다<sup>27)</sup>.

##### 1) 서울特別市

서울특별시 는 유일하게 2세 미만 영아에 대한 기본보육수요의 충족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는 보육시설에서 보육되고 있는 아동의 연령별 구성비(表 VIII-5 참조)에서 나타난 것처럼 보육사업지침의 준수가 잘 이루어져 2세 미만 영아의 비중이 사업지침상의 비율보다 훨씬 높기 때문이다. 2세 미만 영아에 대한 보육이 타 지역에 비하여 잘 되고 있는 반면, 3세 이상 유아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보육률과 유치원 취업률이 타 지역에 비하여 낮은 편이다. 따라서 3세 이상 유아의 보육확대에 특별한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취업모의 구성비를 보면 타지역에 비하여 서울지역의 경우 36시간 미만 근로자의 비율이 높다(附表 7-4 참조). 근로시간이 적은 취업모의 경우는 유치원 또는 보육시설의 이용과 함께 어머니에 의한 보육이 병행하여 이용되고 있다는 특성(表 VII-4 참조)에 비추어볼 때,

27) 방과후 아동교실의 경우는 전국적인 차원에서의 정책의 방향수립이 더 중요한 시점이며, 실제 방과후 아동교실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지역별 자료가 부족할 실정이기 때문에 미취학아동에 대한 지역별 우선과제만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육시설에서는 시간제 보육 및 유연한 보육시간제도의 확대에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 2) 釜山廣域市

부산광역시의 경우는 0~5세 연령군 전체의 보육률은 평균수준이지만, 3세 이상의 유아에 대한 유치원 취원율이 높은 편이며, 보육사업 지침의 준수가 잘 이루어져 2세 미만인 영아의 비중이 사업지침상의 비율보다 높다.

또한, 유치원 선호도가 높은 기능직/조립직의 비율이 타 지역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이러한 특성은 높은 유치원 이용률과 연관하여 볼 때 타 지역보다 보육시설에 대한 유치원 선호도가 높은 곳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무엇보다도 유치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한 교육기능의 강화를 통하여 보육의 질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 3) 大邱廣域市

대구광역시는 보육시설이 기본보육수요를 겨우 충족시키는 수준으로 전국 평균에 못미치고 있어 전반적인 보육시설의 확대가 시급하다. 또한, 보육사업지침상의 지도에 잘 따르고 있지 않아 2세 이하인 영아의 비율이 지침에서 제시한 것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침을 준수하도록 강력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더불어 영아전담시설이 전혀 없는 실정이므로 영아전담시설의 설치를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4) 仁川廣域市

인천광역시는 보육대상 아동 대비 보육시설의 규모가 전국 최하위

권으로 겨우 기본보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실정이며 주관적 대리 보육수요의 30%정도 만을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이다. 이는 주로 3세 이상 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가 타 지역에 비하여 매우 부족하기 때문으로 기본보육수요만을 겨우 충족시키는 수준이다. 또한, <表 VI-16>에 의하면 1인당 보육사업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타지역에 비하여 그 비중이 낮은 국·공립 보육시설의 확대를 중심으로 한 보육사업에의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하겠다.

#### 5) 光州廣域市

전국 평균수준의 보육공급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3세 유아의 경우 보육시설과 유치원에서 보육되고 있는 아동의 규모가 비슷하다. 이는 전국적으로 3세 아동의 경우 유치원에서 보육되고 있는 아동이 더 많은 것에 비하여 보육시설의 비중이 비교적 큰 지역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2세 미만 영아의 비율이 지침에서 제시한 것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는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또한 영아전담시설이 전혀 없는 실정이므로 영아전담시설의 설치를 위한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6) 大田廣域市

전국 평균수준의 보육공급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한편, 타 지역에 비하여 영아전담시설이 2 곳이나 설치되어 있어서 영아보육에 대한 관심은 높은 것으로 보이나, 2세 미만 영아의 비율이 지침에서 제시한 것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일반 보육시설에서의 2세 미만인 영아의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이들 시설에 대한 엄격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특히, 보육시설에서 보육되는 아동수보다는 유치원에서 보육되고 있는 아동의 규모가 커서 유아교육에 있어서 보육시설의 비중이 낮다. 이는 보육시설의 유아교육 기능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유아교육 기능의 강화와 홍보에 보다 많은 관심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가정보육시설의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40%로 가정교육시설의 지도·감독의 강화가 요구된다.

#### 7) 京畿道

전국에서 보육의 충족도가 가장 낮은 지역이다. 즉 전국에서 유일하게 기본보육수요, 즉 저소득층 취업모의 자녀를 보육할 수 있는 규모의 보육시설조차 갖추어져 있지 않다. 이는 타지역에 비하여 저소득층 취업모의 자녀비중이 높는데 비하여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보육아동 1인당 보육사업비의 규모에서도 드러나 보육사업비의 규모가 전국에서 매우 적은 지역이다.

이는 모든 연령군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며 특히 3세 이상 유아의 경우 유치원 취원아동까지 합하여도 대리보육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몇 안되는 지역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경기도는 그 어떤 지역보다도 보육사업의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집중적인 투자와 그에 상응하는 중앙정부의 재정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또한 2세 이하인 영아의 비율이 지침에서 제시한 것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침을 준수하도록 강력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 8) 江原道

전국 평균수준의 보육공급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2세 미만 영아의 경우는 평균수준보다 낮는데 이는 지침상의 기준을 준수하기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공립 시설의 비중이 14.6%로 타 지역에 비하여 높음에도 불구하고 보육아동중 2세 미만 영아의 비율이 이렇게 낮게 나타나고 있어, 강력한 행정지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아전담시설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므로 2세 미만인 영아의 보육에 특별한 관심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 9) 忠淸北道

저소득층 아동의 규모에 대비하여 볼 때 현재의 보육공급규모는 전국 평균수준이지만 앞으로 보육정책이 우선적으로 이룩해야 할 주관적 대리보육수요의 충족, 즉 보육시설의 이용을 희망하는 취업모의 자녀에게 충분한 보육시설을 제공하는데 있어서는 다른 지역에 비하여 앞서있다. 즉 주관적 대리보육수요 대비 충족률이 54.4%로 제주도와 함께 50%를 넘어서고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

그러나 연령별 보육실태에 있어서는 큰 변이가 있어 2세 영아의 경우는 보육률이 평균수준 이하인 반면, 3세 이상 유아의 경우는 이미 주관적 대리보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이다. 2세 영아의 보육이 저조한 이유는 지침상의 기준을 준수하기 않고 있고 영아전담시설이 한 곳도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따라서 2세 영아 보육에 대한 집중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또한 농업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의 비율이 전체 기혼여성의 1/3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의 특성에 상응하는 보육서비스 제공에 집중적인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즉 계절적인 수요변동이 심하며, 보육대상 아동이 한 곳에 집중적으로 거주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의 시설이 지역별로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차량 운행과 관련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국·공립 보육시설, 기존 초등학교 시설을 사용한 보육시설의 확충 등의 노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이석무, 1994).

#### 10) 忠淸南道

기본보육수요의 충족도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상위권에 속하는 지역으로 특히 2세 미만 영아의 보육률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높은 편이다. 그러나 충청남도 역시 2세 미만 영아의 비율이 지침에서 제시한 것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는 행정지도가 이루어질 경우 2세 미만 영아의 보육률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반면, 3세 이상 유아를 위한 보육시설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며 유치원에 의한 보육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유치원 취원까지 포함하면 3세 이상 유아에 대한 보육이 상위권에 속하고 있다. 따라서 보육시설에서는 유아의 교육적 기능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고 보호자에게 보육기관의 교육기능에 대한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무급가족종사자의 비율이 타 지역보다 높은 43.8%로 나타나고 있고, 이들 무급가족종사자들은 종일반보다는 반일반 또는 자신의 근로시간에 따른 유연한 시간제를 선호하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농업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의 비율이 전체 기혼여성의 1/3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보육서비스에 집중적인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 11) 全羅北道

전국 평균수준을 약간 상회하는 보육공급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특히 2세 미만 영아의 보육률은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그러나 보육시설에서 보육되고 있는 아동중 2세 미만 영아의 비율이 지침에서 제

시한 것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지침을 준수하도록 하는 행정지도가 이루어질 경우 2세 미만 영아의 보육률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 12) 全羅南道

기본보육수요에 기초하여 보육공급 정도를 평가해 본 기본보육수요 충족률에 따르면 전국에서 가장 순위가 높은 지역이다. 특히 3세 이상 유아에 대한 보육수준이 상당히 높아 주관적 대리보육수요의 약 90%정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규모이다. 반면 2세 미만 영아에 대한 보육은 전국 평균수준보다 낮은 편이다. 2세 미만 영아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낮아 지침에서 제시한 것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3%로 나타나고 있어 2세미만 영아보육과 관련하여 강력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더불어, 농업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의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아 55%를 넘고 있다. 따라서 농어촌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보육서비스의 확충에 집중적인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 13) 慶尙北道

미취학 아동의 보육수준이 최하위 수준으로 겨우 기본보육수요가 충족되고 있고 이는 모든 연령군에서 공통적이다. 또한 1인당 보육사업비도 1인당 지역내 생산의 규모에 비추어 볼 때 경상북도의 경제상태에 비하여 적은 편이다. 따라서 보육사업에 대한 투자강화와 더불어 전반적인 보육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농업에 종사하는 기혼여성의 비율이 전체 기혼여성의 1/3정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어촌 지역의 특성에 상응하는 보육서비스의 확충에 집중적인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이다.

#### 14) 慶尙南道

경상북도와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는 지역이다. 즉, 미취학 아동의 보육수준이 최하위 수준이다. 또한 1인당 보육사업비도 최하위 수준으로 특히 경상남도의 경제상태에 비하여 매우 적은 편이다. 따라서 보육사업에 대한 투자강화와 더불어 전반적인 보육정책의 강화가 필요하다.

#### 15) 濟州道

보육공급의 규모가 상위권에 속하는 지역으로 특히 영아보육 수준이 타 지역에 비하여 높다. 이 지역은 타 시·도보다 작음에도 불구하고 영아전담시설이 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1인당 보육사업비의 규모도 큰 편에 속한다. 3세 이상 유아의 경우 유일하게 보육시설에서 보육되고 있는 아동의 수가 유치원 취원아동수보다 많은 지역이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 정책적 단기목표로 제시한 주관적 대리보육수요의 충족이라는 목표에 기초하여 볼 때 현재의 보육시설규모가 약 61%의 충족률을 보이고 있어 현재와 같은 방향의 보육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타 지역에 비하여 제일 먼저 미취학 아동에 대한 주관적 대리보육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지역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공립 보육시설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증가속도가 빠름에도 불구하고 1996년 현재 4.4%에 불과하여 전국 평균이 8.9%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따라서 국·공립시설의 확충에 관심이 두어져야 할 것이다.

## 參 考 文 獻

- 교육부, 『교육통계연보』, 1996.
- 금진호, 「육아비용과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여성인력의 고용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에 관한 세미나』, 한국노동연구원, 1996.
- 김용하, 「국민연금기금을 활용한 보육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방안」, 『사회복지』, 1995, 여름호. pp.120~136.
- 김태홍·양승주, 『여성인구의 특성과 변화』, 통계청, 1997.
- 김 훈, 「여성인력의 노동시장참가실태와 과제」, 『여성고용촉진과 고용평등을 위한 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 한국노동연구원, 1995.
- 노동부, 『임금구조 기본통계조사 보고서』, 1995.
- 보건복지부, 『보건사회백서』, 1996.
- \_\_\_\_\_, 『방과후 아동보육사업 활성화 대책』, 1996.
- \_\_\_\_\_, 『1997 보육사업지침』, 1996.
- \_\_\_\_\_, 『영유아보육 법령집』, 1996.
- \_\_\_\_\_, 『'95 직장 및 민간 보육시설 설치자금 융자계획』, 1995.
-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시 인구구조 변화와 행정서비스 수요』, 1994.
- 양승주,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행태분석」, 『한국인구학회지』 제18권 1호, 1995, pp.41~62.

- 양승주, 『고용주지원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방안』, 한국여성개발원, 1996.
- 우리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 엮음, 『21세기의 영유아보육』, 한울, 1993.
- 이석무, 『아동보육사업 경영경제론』, 혜화당, 1994.
- 이성진, 『한국의 탁아사업시행에 관한 기초연구』, 1989.
- 이현송·정경희·한경혜·이혜경·강혜규, 『여성의 경제활동과 가족복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 이혜경, 「탁아정책 모델과 재정제도의 선택」, 『우리아이들의 육아현실과 미래』, 한울, 1991, pp.109~136,
- 정병호, 「보육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행정쇄신위원회 보육제도 개선안 마련을 위한 종합기획연구과제 보고서』, 1993.
- 장성자 외, 『각국의 육아휴직제도 비교와 우리나라제도의 개선방향』, 한국여성개발원, 1993.
- 장영식·조남훈·문현상·변용찬·오영희, 『신인구추계에 의한 인구규모 및 구조변동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 조혜정, 「우리의 가정환경, 과연 자녀양육에 바람직한가」, 『우리아이들의 육아현실과 미래』, 한울, 1991, pp.33~43,
-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영유아 보육시설의 실태와 보육정책의 대안』, 우리아이들의 보육을 걱정하는 모임, 1993.
- 최강식·정진화, 『여성 잠재인력의 활용방안』, 한국노동연구원, 1997.
- 통계청, 『1995 인구주택총조사』, 1996.
- , 『경제활동인구연보』, 각 년도.

- 통계청, 『고용구조 통계조사보고서』, 1993.
- , 『도시근로자 가계조사에 의한 맞벌이가구의 가계수지』, 1995b.
- , 『한국의 사회지표』, 1996.
- , 『장래인구추계 1990~2021』, 1996.
- 한국여성개발원, 『취업여성의 모성보호 비용과 자녀양육 비용의 사회적 부담방식에 관한 연구』, 1994.
- , 『가족간호휴직제도의 법제화방안 연구』, 1995.
- , 『각국의 육아휴직제도 비교와 우리나라 제도의 개선 방향』, 한국여성개발원, 1993.
- , 『1995 여성통계연보』, 1995.
- , 『고용주지원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방안』, 1996,
- 한국행동과학연구소, 『전국 탁아 수요 및 부모의 요구조사 연구』, 1990.
- 한혜경·박은혜·정경희, 『보육정책의 현황과 개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6.



# 附 錄

〈附表 4-1〉 市·道別 未婚女性の 年齡別 經濟活動參加率

(단위: 천명, %)

지역	여성수	15~ 19세	20~ 24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45~ 49세	50~ 54세	55~ 59세	60세 이상
서울	734	18.1	75.2	88.4	88.0	82.6	85.7	50.0	33.3	-	-
부산	220	13.2	73.8	83.1	76.9	66.7	50.0	-	100.0	-	-
대구	133	12.0	68.8	89.2	85.7	100.0	50.0	-	100.0	-	-
인천	118	17.2	79.2	88.6	62.5	100.0	100.0	100.0	-	-	-
광주	65	11.6	58.5	78.9	100.0	100.0	-	-	-	-	-
대전	59	10.7	67.9	81.3	100.0	100.0	-	-	-	-	-
경기	359	17.4	81.3	86.7	76.5	92.9	100.0	50.0	66.7	-	-
강원	43	8.5	68.6	90.9	66.7	100.0	100.0	-	-	-	-
충북	56	15.6	62.0	84.6	66.7	50.0	-	-	100.0	-	-
충남	47	9.3	70.0	72.7	66.7	100.0	-	-	-	-	-
전북	70	7.4	68.9	77.3	66.7	100.0	100.0	-	-	-	-
전남	49	5.6	76.1	63.6	50.0	-	-	-	-	-	-
경북	80	6.7	58.5	85.7	66.7	66.7	50.0	-	-	-	-
경남	128	8.3	70.2	81.8	87.5	50.0	-	-	-	-	-
제주	26	8.7	75.0	87.5	50.0	-	-	-	-	-	-
전국	2,187	13.2	72.6	85.3	79.6	82.0	77.3	66.7	70.0	50.0	25.0

資料: 통계청, 1996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附表 4-2-1〉 就業母의 年齡別 兒童數(서울特別市)

(단위: 명)

아동 연령	전체	15~ 19세	20~ 24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45~ 49세	50~ 54세	55~ 59세	60세 이상
0	60,156	233	6,754	29,283	18,397	4,867	534	44	38	6	-
1	62,832	121	4,305	27,261	23,639	6,628	775	52	36	16	-
2	64,086	23	2,428	23,082	28,521	8,718	1,173	79	40	23	-
3	65,040	13	1,277	17,488	33,259	11,292	1,540	114	30	27	-
4	63,132	1	587	11,894	34,980	13,577	1,884	149	32	26	3
5	61,042	-	235	7,122	33,809	17,184	2,398	227	35	25	7
6	60,370	-	92	4,206	31,239	21,367	3,070	321	42	21	11
7	61,568	-	49	2,500	27,761	26,778	3,933	455	54	24	13
8	63,298	-	30	1,487	22,929	32,625	5,452	639	94	26	16
9	67,787	-	12	897	18,221	39,664	7,799	998	141	38	17
10	71,374	-	-	481	13,360	44,675	11,164	1,420	215	41	18
11	78,366	-	-	256	9,338	48,652	17,305	2,388	345	56	26
12	89,017	-	-	156	6,239	50,289	27,356	4,208	657	83	28

資料: 통계청, 1996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附表 4-2-2〉 就業母의 年齡別 兒童數(釜山廣域市)

(단위: 명)

아동 연령	전체	15~ 19세	20~ 24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45~ 49세	50~ 54세	55~ 59세	60세 이상
0	17,328	150	2,084	7,905	5,492	1,468	201	13	13	3	-
1	19,062	50	1,430	7,775	7,394	2,084	285	23	14	7	-
2	20,214	22	798	6,997	9,175	2,719	454	29	12	9	-
3	21,296	4	411	5,638	11,108	3,492	570	57	11	6	-
4	21,027	-	160	3,830	12,152	4,161	642	60	12	10	1
5	21,365	-	62	2,469	12,427	5,444	855	86	11	10	2
6	21,996	-	25	1,446	12,269	6,977	1,129	122	14	10	3
7	22,213	-	14	842	11,117	8,692	1,345	167	21	12	3
8	23,940	-	12	448	9,855	11,493	1,860	225	31	11	5
9	25,491	-	7	255	8,019	14,151	2,636	355	48	14	6
10	27,439	-	-	148	6,065	16,893	3,770	453	88	14	7
11	31,333	-	-	81	4,317	19,743	6,159	871	129	23	10
12	35,743	-	-	48	2,750	20,900	10,189	1,567	238	38	12

資料: 통계청, 1996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附表 4-2-3〉 就業母의 年齡別 兒童數(大邱廣域市)

(단위: 명)

아동 연령	전체	15~ 19세	20~ 24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45~ 49세	50~ 54세	55~ 59세	60세 이상
0	14,711	-	2,011	7,087	4,475	1,011	110	10	7	1	-
1	15,751	-	1,262	6,895	6,020	1,370	181	9	9	4	-
2	16,434	-	699	6,147	7,500	1,795	264	17	8	6	-
3	17,134	-	322	4,942	9,198	2,307	319	34	9	5	-
4	16,781	-	134	3,260	10,109	2,841	385	37	6	7	1
5	17,169	-	54	2,064	10,617	3,813	553	52	9	5	1
6	17,191	-	20	1,203	10,286	4,901	693	72	8	6	1
7	16,824	-	12	667	9,203	6,018	807	100	11	6	1
8	17,861	-	10	353	8,146	8,003	1,166	152	22	6	3
9	18,115	-	5	206	6,362	9,654	1,624	219	31	11	3
10	18,809	-	-	120	4,661	11,372	2,261	329	50	12	4
11	20,738	-	-	56	3,114	13,388	3,537	534	87	17	6
12	23,516	-	-	37	2,020	14,135	6,182	957	155	23	7

資料: 통계청, 1996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附表 4-2-4〉 就業母의 年齡別 兒童數(仁川廣域市)

(단위: 명)

아동 연령	전체	15~ 19세	20~ 24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45~ 49세	50~ 54세	55~ 59세	60세 이상
0	14,319	-	1,732	6,784	4,652	1,020	114	8	7	1	-
1	16,022	-	1,184	6,873	6,325	1,448	168	10	10	3	-
2	17,150	-	699	6,295	7,930	1,959	236	17	7	6	-
3	18,347	-	372	5,268	9,864	2,511	295	21	7	9	-
4	17,937	-	176	3,730	10,726	2,944	319	31	5	6	-
5	17,558	-	69	2,423	10,735	3,820	442	50	12	5	1
6	17,234	-	28	1,448	10,279	4,836	560	63	12	8	2
7	17,000	-	18	878	9,212	6,078	715	80	10	6	2
8	17,131	-	8	515	7,833	7,624	1,002	122	20	3	3
9	17,504	-	3	303	6,336	9,162	1,477	189	22	6	4
10	17,994	-	-	147	4,809	10,664	2,067	244	52	6	4
11	18,700	-	-	68	3,291	11,588	3,234	434	67	9	9
12	20,370	-	-	40	2,243	11,926	5,275	741	123	16	7

資料: 통계청, 1996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附表 4-2-5〉 就業母의 年齡別 兒童數(光州廣域市)

(단위: 명)

아동 연령	전체	15~ 19세	20~ 24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45~ 49세	50~ 54세	55~ 59세	60세 이상
0	8,122	-	918	3,897	2,587	643	60	10	5	2	-
1	8,826	-	597	3,854	3,369	882	113	8	4	-	-
2	9,336	-	334	3,563	4,171	1,107	131	23	3	3	-
3	9,771	-	168	2,885	5,122	1,378	191	20	5	3	-
4	9,437	-	76	1,932	5,528	1,628	233	30	7	3	-
5	9,437	-	26	1,274	5,714	2,098	278	39	4	3	-
6	9,194	-	8	676	5,421	2,676	355	50	6	2	-
7	9,225	-	6	421	4,909	3,381	433	63	6	5	1
8	9,640	-	3	244	4,245	4,410	631	91	10	4	2
9	9,950	-	2	143	3,348	5,427	873	130	19	7	2
10	10,434	-	-	79	2,556	6,277	1,261	220	29	8	4
11	11,805	-	-	36	1,910	7,312	2,121	361	48	13	4
12	13,051	-	-	21	1,225	7,559	3,422	692	105	21	6

資料: 통계청, 1996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附表 4-2-6〉 就業母의 年齡別 兒童數(大田廣域市)

(단위: 명)

아동 연령	전체	15~ 19세	20~ 24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45~ 49세	50~ 54세	55~ 59세	60세 이상
0	6,752	-	625	3,281	2,151	601	86	3	6	-	-
1	7,267	-	430	3,122	2,813	768	119	9	5	-	-
2	7,731	-	248	2,781	3,438	1,083	166	9	3	3	-
3	8,117	-	132	2,260	4,145	1,342	212	19	5	2	-
4	8,001	-	54	1,553	4,527	1,595	240	26	3	3	-
5	8,089	-	25	1,002	4,519	2,159	341	35	5	4	1
6	7,969	-	12	617	4,251	2,617	415	49	4	3	1
7	8,360	-	5	384	3,956	3,417	507	76	11	2	1
8	8,628	-	3	226	3,329	4,253	703	98	13	3	1
9	9,171	-	2	121	2,690	5,137	1,067	136	14	3	2
10	9,487	-	-	62	2,005	5,786	1,383	210	34	5	2
11	10,528	-	-	30	1,445	6,390	2,296	312	43	7	4
12	11,674	-	-	16	961	6,452	3,566	568	95	12	4

資料: 통계청, 1996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附表 4-2-7〉 就業母의 年齡別 兒童數(京畿道)

(단위: 명)

아동 연령	전체	15~ 19세	20~ 24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45~ 49세	50~ 54세	55~ 59세	60세 이상
0	51,221	311	6,936	24,098	15,474	3,939	383	38	34	8	-
1	56,083	159	4,686	24,120	20,906	5,531	571	57	36	17	-
2	58,477	49	2,805	21,734	25,683	7,223	850	75	31	25	-
3	61,579	14	1,482	17,952	31,540	9,358	1,092	83	29	30	-
4	60,535	4	636	12,595	34,445	11,392	1,285	123	24	29	2
5	58,855	-	275	8,099	34,169	14,484	1,614	164	21	24	5
6	58,340	-	113	4,819	32,530	18,476	2,093	235	34	31	9
7	57,944	-	54	2,862	29,224	22,747	2,672	304	45	25	12
8	58,086	-	27	1,685	24,014	28,198	3,580	468	67	31	16
9	59,601	-	13	928	19,056	33,608	5,189	644	106	39	17
10	60,653	-	-	479	13,992	37,652	7,322	974	173	38	23
11	62,912	-	-	256	9,542	40,337	10,907	1,511	280	52	26
12	66,981	-	-	133	6,352	40,248	17,045	2,622	461	92	29

資料: 통계청, 1996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附表 4-2-8〉 就業母의 年齡別 兒童數(江原道)

(단위: 명)

아동 연령	전체	15~ 19세	20~ 24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45~ 49세	50~ 54세	55~ 59세	60세 이상
0	6,960	-	787	3,241	2,142	685	90	8	5	2	-
1	7,660	-	554	3,229	2,815	913	122	14	10	4	-
2	8,150	-	355	2,967	3,480	1,150	166	18	4	10	-
3	8,573	-	194	2,500	4,197	1,445	206	18	7	8	-
4	8,677	-	101	1,882	4,623	1,740	284	28	11	9	-
5	8,813	-	42	1,317	4,819	2,216	357	41	10	10	2
6	9,015	-	19	926	4,824	2,740	422	62	11	9	3
7	9,386	-	10	632	4,613	3,499	522	81	22	4	2
8	9,899	-	6	416	4,140	4,424	731	124	45	10	4
9	10,613	-	3	249	3,637	5,446	1,014	187	55	15	7
10	11,159	-	-	146	2,929	6,290	1,429	254	80	23	8
11	12,243	-	-	76	2,293	7,175	2,104	419	143	22	11
12	14,010	-	-	45	1,727	8,007	3,224	678	261	52	15

資料: 통계청, 1996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附表 4-2-9〉 就業母의 年齡別 兒童數(忠淸北道)

(단위: 명)

아동 연령	전체	15~ 19세	20~ 24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45~ 49세	50~ 54세	55~ 59세	60세 이상
0	7,514	55	1,112	3,643	2,063	540	89	4	8	1	-
1	8,247	31	822	3,743	2,746	765	121	9	8	3	-
2	8,713	9	488	3,528	3,514	987	168	11	6	3	-
3	8,981	3	272	2,957	4,307	1,197	222	15	6	3	-
4	8,663	1	125	2,105	4,659	1,463	275	27	4	3	1
5	8,751	-	46	1,411	5,010	1,890	330	45	11	5	2
6	8,626	-	27	885	4,808	2,385	446	58	11	4	3
7	9,111	-	14	595	4,627	3,180	596	75	16	5	3
8	9,690	-	4	342	4,242	4,087	866	105	31	10	3
9	10,266	-	2	220	3,550	5,102	1,141	190	47	8	5
10	10,694	-	-	103	2,754	5,987	1,525	236	65	18	6
11	11,940	-	-	50	2,067	6,866	2,470	338	113	24	11
12	13,316	-	-	32	1,420	7,186	3,773	656	192	41	16

資料: 통계청, 1996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附表 4-2-10〉 就業母의 年齡別 兒童數(忠淸南道)

(단위: 명)

아동 연령	전체	15~ 19세	20~ 24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45~ 49세	50~ 54세	55~ 59세	60세 이상
0	8,301	-	1,151	3,657	2,545	791	137	9	12	1	-
1	9,409	-	866	3,805	3,429	1,119	156	19	12	2	-
2	10,145	-	529	3,626	4,273	1,433	238	33	10	3	-
3	10,808	-	334	3,111	5,231	1,740	317	48	15	12	-
4	11,036	-	148	2,300	5,942	2,175	387	64	10	9	2
5	11,205	-	66	1,613	6,207	2,746	469	77	13	12	2
6	11,705	-	29	1,095	6,233	3,555	622	130	19	15	7
7	12,283	-	16	736	5,928	4,599	785	169	29	12	9
8	13,378	-	9	460	5,472	5,996	1,135	238	45	14	10
9	14,428	-	3	286	4,764	7,266	1,636	353	81	25	14
10	15,238	-	-	151	3,708	8,495	2,234	505	98	30	16
11	17,609	-	-	85	2,843	10,006	3,522	877	208	44	23
12	19,924	-	-	34	1,992	10,484	5,517	1,411	380	78	28

資料: 통계청, 1996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附表 4-2-11〉 就業母의 年齡別 兒童數(全羅北道)

(단위: 명)

아동 연령	전체	15~ 19세	20~ 24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45~ 49세	50~ 54세	55~ 59세	60세 이상
0	9,961	-	1,035	5,093	2,882	807	128	9	7	1	-
1	11,332	-	800	5,350	3,888	1,101	155	18	13	8	-
2	11,639	-	499	4,859	4,720	1,300	227	22	7	4	-
3	12,196	-	300	4,183	5,670	1,711	284	30	11	8	-
4	11,884	-	135	3,090	6,247	2,009	343	42	9	9	1
5	12,078	-	67	2,158	6,621	2,653	482	71	15	6	4
6	12,191	-	23	1,424	6,591	3,424	604	93	15	11	6
7	12,638	-	10	981	6,232	4,466	767	147	22	9	4
8	13,391	-	7	632	5,753	5,669	1,042	230	40	12	5
9	14,587	-	2	404	4,981	7,073	1,695	330	72	17	12
10	15,258	-	-	214	3,897	8,360	2,231	437	93	17	9
11	17,480	-	-	126	3,091	9,580	3,662	793	174	34	19
12	20,080	-	-	34	1,992	10,484	5,517	1,411	380	78	23

資料: 통계청, 1996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附表 4-2-12〉 就業母의 年齡別 兒童數(全羅南道)

(단위: 명)

아동 연령	전체	15~ 19세	20~ 24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45~ 49세	50~ 54세	55~ 59세	60세 이상
0	9,636	103	1,178	4,670	2,664	878	111	19	11	3	-
1	10,687	44	873	4,889	3,490	1,173	169	22	19	9	-
2	11,288	9	546	4,683	4,396	1,404	206	29	10	5	-
3	12,075	4	321	4,060	5,470	1,857	298	44	9	11	-
4	11,812	2	154	3,080	6,012	2,121	349	64	16	12	3
5	12,148	-	66	2,174	6,568	2,754	461	85	19	18	3
6	12,264	-	30	1,455	6,572	3,454	573	128	32	13	7
7	12,906	-	16	962	6,400	4,460	785	202	60	14	7
8	14,032	-	7	634	5,975	5,938	1,065	304	76	24	10
9	15,636	-	4	372	5,335	7,608	1,668	487	113	29	21
10	16,652	-	-	234	4,284	8,909	2,285	682	189	48	21
11	19,798	-	-	130	3,496	10,783	3,843	1,117	325	76	29
12	22,593	-	-	60	2,426	11,481	5,959	1,857	623	147	40

資料: 통계청, 1996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附表 4-2-13〉 就業母의 年齡別 兒童數(慶尙北道)

(단위: 명)

아동 연령	전체	15~ 19세	20~ 24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45~ 49세	50~ 54세	55~ 59세	60세 이상
0	13,219	149	1,870	5,647	4,299	1,104	126	13	8	3	-
1	14,700	61	1,283	5,746	5,868	1,478	215	24	17	9	-
2	15,792	20	746	5,252	7,505	1,914	295	37	15	8	-
3	17,071	3	400	4,412	9,256	2,531	382	58	13	17	-
4	17,420	1	187	3,140	10,422	3,133	448	70	9	10	-
5	18,214	-	79	2,133	11,049	4,181	642	100	15	11	4
6	18,821	-	34	1,252	11,062	5,492	794	147	23	12	5
7	19,218	-	17	742	10,228	6,956	1,021	197	30	19	8
8	20,394	-	9	444	9,148	9,059	1,362	292	52	22	8
9	21,445	-	3	246	7,335	11,328	1,992	417	84	25	15
10	22,150	-	-	136	5,392	13,151	2,682	609	125	38	17
11	24,846	-	-	65	3,826	15,301	4,389	988	200	60	17
12	28,036	-	-	45	2,533	16,131	7,157	1,668	375	92	34

資料: 통계청, 1996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附表 4-2-14〉 就業母의 年齡別 兒童數(慶尙南道)

(단위: 명)

아동 연령	전체	15~ 19세	20~ 24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45~ 49세	50~ 54세	55~ 59세	60세 이상
0	22,010	-	2,922	11,374	6,142	1,375	167	17	9	4	-
1	24,238	-	1,974	11,487	8,516	1,935	274	27	19	7	-
2	25,722	-	1,127	10,683	10,873	2,586	400	27	14	11	-
3	26,485	-	570	8,681	13,465	3,209	493	47	12	9	-
4	25,816	-	241	6,039	15,030	3,877	534	69	18	8	2
5	25,983	-	104	3,994	15,892	5,071	805	87	12	15	3
6	25,592	-	42	2,209	15,737	6,486	970	115	19	12	3
7	25,101	-	16	1,280	14,078	8,304	1,221	160	33	6	4
8	26,218	-	16	661	12,547	10,994	1,668	272	40	14	6
9	27,070	-	5	391	9,921	13,828	2,416	394	82	24	9
10	27,639	-	-	206	7,153	16,215	3,390	528	110	23	13
11	31,108	-	-	115	5,139	19,127	5,522	949	191	49	17
12	34,162	-	-	56	3,135	19,731	9,169	1,616	360	72	22

資料: 통계청, 1996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附表 4-2-15〉 就業母의 年齡別 兒童數(濟州道)

(단위: 명)

아동 연령	전체	15~ 19세	20~ 24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45~ 49세	50~ 54세	55~ 59세	60세 이상
0	3,561	-	401	1,519	1,177	392	57	6	8	-	-
1	3,878	-	314	1,491	1,467	516	78	7	4	2	-
2	3,971	-	177	1,276	1,726	666	112	10	4	-	-
3	4,094	-	101	1,026	1,998	818	132	12	6	1	-
4	3,936	-	40	730	2,041	921	178	19	4	2	-
5	3,778	-	20	478	1,944	1,097	199	32	5	2	-
6	3,664	-	8	297	1,790	1,264	258	40	8	-	-
7	3,741	-	5	200	1,635	1,532	292	59	14	3	1
8	4,059	-	1	110	1,447	1,983	416	76	23	1	3
9	4,258	-	3	77	1,206	2,233	559	133	38	6	2
10	4,512	-	-	39	999	2,511	743	171	41	6	3
11	5,131	-	-	34	798	2,855	1,080	269	77	11	7
12	5,726	-	-	126	563	2,906	1,598	474	138	26	5

資料: 통계청, 1996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附表 4-2-16〉 就業母의 年齡別 兒童數(全國)

(단위: 명)

아동 연령	전체	15~ 19세	20~ 24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45~ 49세	50~ 54세	55~ 59세	60세 이상
0	253,769	1,000	31,516	121,177	77,142	20,120	2,393	209	177	35	-
1	275,994	466	21,378	119,639	102,683	27,712	3,503	308	214	91	-
2	288,849	132	12,478	107,474	126,906	36,045	5,086	437	174	118	-
3	301,570	41	6,655	87,361	153,830	46,187	6,551	619	174	152	-
4	296,095	9	2,953	61,160	167,441	55,577	7,786	839	169	145	17
5	294,484	-	1,237	39,732	170,100	71,608	10,226	1,191	196	156	38
6	294,173	-	510	23,959	163,892	906,49	13,003	1,685	258	157	61
7	297,518	-	263	14,684	149,124	114,107	16,402	2,334	385	149	70
8	309,645	-	150	8,657	129,075	144,758	22,679	3,436	607	190	94
9	325,923	-	68	5,099	104,761	176,689	32,787	5,161	952	268	137
10	339,491	-	-	2,746	78,565	203,238	45,748	7,271	1,443	327	155
11	374,536	-	-	1,464	56,511	229,103	72,152	12,160	2,431	496	218
12	418,199	-	-	802	37,787	237,656	115,290	21,040	4,484	864	276

資料: 통계청, 1996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附表 4-3〉 市·道別 年齡別 就業母數

(단위: 명)

지역	전체	15~ 19세	20~ 24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45~ 49세	50~ 54세	55~ 59세	60세 이상
서울	1,283,241	1,712	28,954	123,155	192,958	266,745	229,333	169,912	121,147	64,806	84,519
부산	500,425	969	8,407	33,541	69,175	101,579	97,044	70,656	49,051	29,499	40,504
대구	322,131	-	7,887	29,348	55,559	65,904	56,290	40,934	30,312	17,298	18,598
인천	290,053	-	6,641	28,880	57,424	63,072	45,405	30,956	22,962	12,328	22,385
광주	157,990	-	3,222	15,270	28,069	32,761	24,086	20,401	11,531	9,151	13,500
대전	145,015	-	2,335	13,147	23,852	31,785	26,970	18,639	12,359	6,884	9,044
경기	982,727	1,697	26,481	101,227	179,549	215,825	142,419	100,032	74,800	56,405	84,292
강원	210,201	-	2,848	14,159	27,637	38,764	30,063	21,324	23,987	18,055	33,364
충북	207,063	279	3,921	15,324	26,188	32,742	31,984	20,254	21,259	17,051	38,062
충남	310,125	-	4,018	15,987	33,489	46,763	40,390	36,258	35,197	30,436	67,586
전북	302,544	-	3,582	21,332	34,912	44,192	40,895	36,004	32,271	25,794	63,563
전남	385,707	386	3,872	19,623	34,135	48,561	42,573	42,551	47,452	44,751	101,802
경북	465,423	826	7,248	24,036	57,330	72,898	60,258	55,452	47,490	45,422	94,462
경남	529,683	-	10,819	46,369	80,105	89,913	78,075	59,560	50,208	40,557	74,077
제주	84,895	-	1,367	5,875	10,624	14,301	11,334	9,111	8,850	6,627	16,808
전국	6,177,221	6,525	125,801	507,194	905,119	1,163,254	956,598	737,983	587,454	425,943	775,892

資料: 통계청, 『1995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97.

\_\_\_\_\_, 1996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附表 4-5-2〉 市·道別 子女養育問題로 就業을 하지 못하고 있는  
 既婚女性중 保育施設 利用을 希望하는 婦人의 子女數

(단위: 명)

구분	미취학 아동수 (0~5세)	미취학 아동				총 초등학생수 (6~11세)	초등학생	
		영아 0세	1세	2세	유아 (3~5세)		저학년 (6~8세)	고학년 (9~11세)
계	1,003,211	200,346	219,833	218,055	364,978	337,682 (868,642)	189,183 (491,876)	148,499 (376,766)
서울	209,425	43,984	46,721	45,357	73,362	67,021 (172,376)	37,105 (96,472)	29,917 (75,904)
부산	74,962	14,746	16,333	16,336	27,547	27,572 (70,895)	14,982 (38,952)	12,590 (31,943)
대구	54,271	11,001	11,895	11,757	19,619	18,439 (47,433)	10,365 (26,948)	8,074 (20,485)
인천	63,380	12,214	13,699	13,832	23,635	20,359 (52,393)	11,746 (30,538)	8,614 (21,855)
광주	30,447	6,219	6,705	6,662	10,861	9,863 (25,366)	5,450 (14,171)	4,412 (11,195)
대전	30,415	6,239	6,656	6,569	10,951	10,194 (26,222)	5,702 (14,824)	4,492 (11,397)
경기	214,878	42,074	46,854	46,665	79,285	67,292 (173,203)	39,364 (102,346)	27,928 (70,857)
강원	27,892	5,563	6,035	6,009	10,285	10,702 (27,519)	5,821 (15,134)	4,882 (12,385)
충북	29,856	5,882	6,535	6,572	10,867	10,599 (27,257)	5,815 (15,118)	4,785 (12,139)
충남	32,265	6,243	6,989	7,010	12,023	12,443 (31,994)	6,748 (17,545)	5,695 (14,448)
전북	36,303	7,121	8,071	7,829	13,283	13,720 (35,273)	7,382 (19,192)	6,338 (16,081)
전남	38,594	7,542	8,353	8,370	14,329	1,4837 (38,140)	7,918 (20,588)	6,918 (17,552)
경북	53,140	10,373	11,511	11,502	19,754	19,083 (49,088)	10,702 (27,826)	8,380 (21,262)
경남	95,607	18,670	20,783	21,034	35,119	31,994 (82,312)	18,123 (47,119)	13,871 (35,193)
제주	11,776	2,474	2,693	2,551	4,057	3,566 (9,171)	1,962 (5,101)	1,604 (4,070)

註: ( )는 취업모의 적극적요구와 소극적요구를 합한 요구율을 적용한 보육대상아동수임.  
 資料: 통계청, 『1995년도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97.

\_\_\_\_\_, 1996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附表 4-11〉 既婚女性の 經濟活動參加率 展望

(단위: %)

연도	특성	전체	15~ 19세	20~ 24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45~ 49세	50~ 54세	55~ 59세	60세 이상
2000	여성전체	50.9	10.3	68.7	54.4	51.6	62.5	67.0	64.5	60.8	56.8	30.6
	기혼여성	50.8	34.1	37.9	37.3	49.0	61.7	66.9	64.4	60.8	56.9	30.6
2005	여성전체	53.7	8.8	71.8	58.9	53.7	64.6	69.2	66.2	62.4	59.0	32.7
	기혼여성	53.4	29.1	39.6	40.3	51.0	63.7	69.1	66.1	62.4	59.0	32.7
2010	여성전체	54.5	8.0	74.0	62.8	55.3	66.2	71.0	67.4	63.6	60.7	34.6
	기혼여성	52.2	26.5	40.8	43.0	52.5	65.3	70.9	67.3	63.6	60.7	34.6

資料: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연보』, 각년도.

김태홍·양승주, 『여성인구의 특성과 변화』, 1997.

〈附表 4-12-1〉 母의 年齡別 兒童數: 2000年

(단위: 명)

아동 연령	15~ 19세	20~ 24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45~ 49세	50~ 54세	55~ 59세	60세 이상
0	2,818	99,338	379,738	181,062	37,310	4,227	705	-	-	-
1	1,420	64,608	358,541	230,034	48,989	5,680	710	710	-	-
2	714	3,833	320,506	282,674	63,530	7,852	714	-	-	-
3	-	20,034	260,437	342,002	80,850	10,732	715	-	-	-
4	-	9,307	193,294	394,462	103,090	12,886	1,432	-	-	-
5	-	4,288	131,498	418,793	139,359	17,867	2,144	715	-	-
6	-	2,150	82,399	420,595	183,428	23,645	3,583	717	717	-
7	-	715	51,515	389,940	236,110	30,766	4,293	715	-	-
8	-	704	29,550	329,966	293,382	41,510	6,332	1,407	704	704
9	-	-	16,188	252,259	337,244	56,657	9,443	2,023	674	674
10	-	-	8,369	176,391	366,300	74,676	12,231	2,575	644	644
11	-	-	3,764	116,681	362,589	107,271	18,819	3,764	627	627

資料: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附表 4-12-2〉 母의 年齡別 兒童數: 2005年

(단위: 명)

아동 연령	15~ 19세	20~ 24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45~ 49세	50~ 54세	55~ 59세	60세 이상
0	2,639	93,008	355,542	169,526	34,961	3,958	660	-	-	-
1	1,332	60,606	336,330	215,784	45,954	5,328	666	666	-	-
2	674	35,741	302,790	267,049	60,018	7,418	674	-	-	-
3	-	19,125	248,626	326,493	77,183	10,246	683	-	-	-
4	-	8,988	186,678	380,961	99,562	12,445	1,383	-	-	-
5	-	4,196	128,663	409,763	136,355	17,481	2,098	699	-	-
6	-	2,117	81,160	414,269	180,669	23,289	3,529	706	706	-
7	-	710	51,123	386,973	234,314	30,532	4,260	710	-	-
8	-	711	29,903	333,920	296,896	42,007	6,408	1,424	712	712
9	-	-	17,103	266,520	356,310	59,860	9,977	2,138	713	713
10	-	-	9,247	194,899	404,735	82,512	13,515	2,845	711	711
11	-	-	4,278	132,630	412,150	121,934	21,392	4,278	713	713

資料: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附表 4-12-3〉 母의 年齡別 兒童數: 2010年

(단위: 명)

아동 연령	15~ 19세	20~ 24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45~ 49세	50~ 54세	55~ 59세	60세 이상
0	2,511	88,501	338,313	161,311	33,266	3,766	628	-	-	-
1	1,272	57,879	321,194	206,073	43,886	5,088	636	636	-	-
2	642	34,038	288,359	254,321	57,158	7,064	642	-	-	-
3	-	18,092	235,197	308,858	73,014	9,692	646	-	-	-
4	-	8,446	175,407	357,960	93,550	11,694	1,299	-	-	-
5	-	3,928	120,465	383,655	127,667	16,368	1,964	655	-	-
6	-	1,989	76,247	389,193	169,733	21,880	3,315	663	663	-
7	-	670	48,299	365,599	221,372	28,845	4,025	671	-	-
8	-	680	28,550	318,810	283,462	40,106	6,118	1,360	680	680
9	-	-	16,520	257,436	344,166	57,820	9,637	2,064	688	688
10	-	-	9,049	190,729	396,076	80,747	13,226	2,784	696	696
11	-	-	4,215	130,660	406,031	120,123	21,074	4,215	702	702

資料: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96.

〈附表 5-1〉 既婚女性중 子女養育問題로 就業을 하지 못하고 있는 比率

(단위: 명, %)

지역	취업여성수 (총여성수)	전연령	15~ 19세	20~ 24세	25~ 29세	30~ 34세	35~ 39세	40~ 44세	45~ 49세
전국	6,445	27.9	50.0	42.8	50.0	42.8	23.8	11.5	3.0

資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자료

〈附表 5-2〉 市·道別 子女養育問題로 就業을 하지 못하고 있는 既婚女性の 未就學 및 初等學生 子女數

(단위: 명)

지역	미취학 아동수 (0~5세)	영아			유아 (3~5세)	총 초등 학생수 (6~11세)	초등학교	
		0세	1세	2세			저학년 (6~8세)	고학년 (9~11세)
전국	1,702,142	292,049	303,637	300,765	805,691	1,121,958	620,272	501,686
서울	353,159	64,117	64,532	62,562	161,948	222,725	121,655	101,070
부산	127,397	21,496	22,559	22,532	60,810	91,654	49,120	42,534
대구	91,991	16,036	16,429	16,216	43,310	61,259	33,982	27,277
인천	107,979	17,805	18,921	19,078	52,175	67,611	38,510	29,101
광주	51,491	9,065	9,261	9,189	23,976	32,777	17,870	14,907
대전	51,524	9,095	9,193	9,061	24,175	33,870	18,694	15,176
경기	365,435	61,333	64,716	64,365	175,021	223,412	129,062	94,350
강원	47,437	8,109	8,336	8,288	22,704	35,576	19,084	16,492
충북	50,655	8,575	9,026	9,065	23,989	35,228	19,064	16,164
충남	54,964	9,100	9,654	9,669	26,541	41,364	22,125	19,239
전북	61,648	10,380	11,148	10,798	29,322	45,615	24,202	21,413
전남	65,707	10,994	11,537	11,545	31,631	49,334	25,962	23,372
경북	90,493	15,121	15,899	15,865	43,608	63,401	35,090	28,311
경남	162,460	27,216	28,706	29,013	77,525	106,280	59,419	46,861
제주	19,802	3,607	3,720	3,519	8,956	11,852	6,433	5,419

註: ( )는 취업모의 적극적요구와 소극적요구를 합한 요구율을 적용한 보육대상아동수임.  
資料: 통계청, 『1995 인구주택총조사보고서』, 1997.

\_\_\_\_\_, 1996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7년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자료

〈附表 7-1〉 市·道別 既婚就業女性の 教育程度

(단위: 천명, %)

지역	여성수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졸 이상
서울	1,334(100.0)	282(21.2)	318(23.9)	502(37.7)	231(17.3)
부산	503(100.0)	156(31.1)	134(26.6)	167(33.1)	47( 9.3)
대구	297(100.0)	81(27.3)	90(30.4)	98(33.1)	27( 9.2)
인천	287(100.0)	68(23.6)	76(26.5)	117(40.7)	26( 9.2)
광주	152(100.0)	45(29.5)	36(23.6)	51(33.4)	20(13.5)
대전	139(100.0)	41(29.7)	34(24.6)	47(33.9)	16(11.8)
경기	1,069(100.0)	284(26.6)	255(23.8)	407(38.1)	123(11.5)
강원	214(100.0)	110(51.6)	43(20.1)	49(22.9)	11( 5.3)
충북	210(100.0)	114(54.5)	39(18.6)	42(20.2)	14( 6.7)
충남	334(100.0)	213(63.8)	54(16.2)	56(16.8)	11( 3.2)
전북	300(100.0)	168(56.1)	50(16.5)	61(20.5)	20( 6.8)
전남	404(100.0)	283(70.1)	60(14.8)	52(12.8)	9( 2.3)
경북	482(100.0)	274(57.0)	94(19.6)	94(19.4)	19( 4.0)
경남	564(100.0)	229(40.5)	121(21.4)	162(28.7)	53( 9.4)
제주	93(100.0)	42(45.8)	17(18.7)	25(27.2)	8( 8.3)
전체	6,381(100.0)	2,392(37.5)	1,421(22.3)	1,931(30.3)	637(10.0)

資料: 통계청, 1996년도 경제활동인구 조사 자료



〈附表 7-2〉 市·道別 既婚就業女性の 従事上の 地位

(단위: 천명, %)

지역	여성수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종사자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서울	1,328(100.0)	86(6.5)	200(15.0)	254(19.1)	198(14.9)	415(31.3)	176(13.2)
부산	501(100.0)	24(4.8)	94(18.8)	95(18.9)	62(12.3)	171(34.1)	56(11.1)
대구	296(100.0)	12(4.0)	49(16.6)	57(19.4)	62(20.9)	75(25.2)	41(13.9)
인천	286(100.0)	10(3.5)	45(15.9)	51(17.7)	72(25.1)	66(23.0)	43(14.9)
광주	151(100.0)	7(4.5)	32(20.8)	39(25.7)	18(12.1)	42(27.8)	14( 9.1)
대전	138(100.0)	8(6.0)	27(19.9)	33(23.8)	17(12.0)	30(21.3)	23(16.9)
경기	1,066(100.0)	48(4.5)	144(13.5)	209(19.6)	202(18.9)	295(27.7)	168(15.8)
강원	214(100.0)	9(4.4)	46(21.7)	72(33.6)	28(13.0)	27(12.5)	32(14.8)
충북	209(100.0)	4(2.0)	45(21.5)	71(34.0)	39(18.8)	33(15.6)	17( 8.2)
충남	334(100.0)	8(2.3)	85(25.3)	146(43.8)	42(12.5)	25( 7.5)	28( 8.5)
전북	299(100.0)	7(2.5)	79(26.3)	94(31.6)	29( 9.8)	42(14.1)	47(15.7)
전남	404(100.0)	10(2.4)	125(31.0)	181(44.8)	16( 4.0)	43(10.5)	29( 7.2)
경북	481(100.0)	12(2.5)	107(22.3)	213(44.3)	53(11.0)	69(14.3)	27( 5.6)
경남	564(100.0)	21(3.6)	147(26.2)	147(26.1)	110(19.5)	92(16.4)	47( 8.3)
제주	93(100.0)	4(4.2)	25(26.7)	34(36.5)	7( 8.0)	17(17.9)	6( 6.8)
전국	6,364(100.0)	270(4.2)	1,251(19.7)	1,696(26.6)	954(15.0)	1,440(22.6)	753(11.8)

資料: 통계청, 1996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附表 7-3〉 市·道別 既婚就業女性の 職業別 分布

(단위: 천명, %)

지역	여성수	입법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직원	서비스 및 판매직	농업 및 어업 숙련 근로자	기능원, 기계조작원 및 조립원	단순 노무직 근로자
서울	1,328(100.0)	8(0.6)	150(11.3)	134(10.1)	553(41.7)	4(0.3)	240(18.1)	238(17.9)
부산	501(100.0)	2(0.4)	29(5.8)	25(5.0)	222(44.4)	13(2.6)	111(22.2)	99(19.7)
대구	296(100.0)	1(0.3)	17(5.7)	19(6.4)	119(40.4)	3(1.0)	73(24.7)	64(21.5)
인천	286(100.0)	1(0.2)	28(9.7)	21(7.2)	114(39.7)	3(0.9)	66(22.9)	55(19.4)
광주	151(100.0)	1(0.4)	15(9.8)	12(8.0)	70(46.0)	12(8.2)	17(11.0)	25(16.6)
대전	138(100.0)	-	12(8.9)	10(6.9)	69(49.7)	4(3.0)	19(13.9)	24(17.2)
경기	1,066(100.0)	4(0.4)	90(8.4)	92(8.6)	390(36.6)	59(5.5)	155(14.5)	276(25.9)
강원	214(100.0)	-	12(5.7)	9(4.0)	77(36.0)	56(26.1)	20(9.3)	40(18.6)
충북	209(100.0)	-	10(4.7)	8(3.8)	66(31.6)	65(31.0)	19(9.1)	41(19.7)
충남	334(100.0)	-	9(2.8)	10(3.1)	87(26.1)	162(48.4)	30(9.1)	35(10.5)
전북	299(100.0)	-	17(5.5)	13(4.2)	96(32.1)	105(35.1)	32(10.5)	37(12.5)
전남	404(100.0)	-	10(2.4)	7(1.8)	95(23.6)	223(55.2)	24(5.8)	45(11.2)
경북	481(100.0)	-	15(3.0)	13(2.6)	142(29.6)	213(44.2)	48(10.0)	50(10.4)
경남	564(100.0)	3(0.6)	38(6.8)	33(5.8)	215(38.1)	112(19.9)	63(11.2)	99(17.6)
제주	93(100.0)	-	5(5.1)	5(5.5)	29(31.1)	38(40.9)	2(2.2)	14(14.9)
전국	6,364(100.0)	22(0.3)	456(7.2)	409(6.4)	2,346(36.9)	1,071(16.8)	918(14.4)	1,143(18.0)

資料: 통계청, 1996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

〈附表 7-4〉 市·道別 既婚就業女性の 從事上の 地位別 36時間  
未滿 勤勞女性の 比率

(단위: %)

지역	고용주	자영자	무급가족 종사자	상용 근로자	임시 근로자	일용 근로자
서울	4.2	19.9	16.3	8.9	22.3	28.4
부산	1.7	17.6	12.1	8.6	29.3	30.8
대구	5.9	17.6	17.6	17.6	17.6	29.4
인천	-	12.1	13.1	8.7	26.7	38.2
광주	-	22.2	22.2	11.1	22.2	11.1
대전	-	14.3	14.3	14.3	14.3	42.9
경기	3.3	17.0	11.0	8.3	24.4	36.0
강원	-	30.0	30.0	5.0	10.0	20.0
충북	-	22.6	33.1	16.3	10.4	15.9
충남	-	34.5	45.0	5.4	-	13.1
전북	-	38.6	37.2	4.0	7.5	11.8
전남	-	41.6	44.7	3.3	4.2	6.1
경북	-	24.5	53.4	4.8	7.2	9.6
경남	-	32.6	32.6	11.6	11.6	11.6
제주	-	33.3	16.7	16.7	16.7	16.7
전국	2.5	23.1	22.8	8.1	18.2	25.2

資料: 통계청, 1996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